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다-17

주요 통신서비스별
표준협정제안서 연구
(A Study on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for Major Telecom Services)

2010. 12. 3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다-17

주요 통신서비스별
표준협정제안서 연구
(A Study on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for Major Telecom Services)

2010. 12. 31.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총괄책임자 : 이 한 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 통신서비스별 표준협정제안서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 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총괄책임자 : 이 한 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참여연구원 : 강 신 원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차 성 민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김 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신 우 용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이 소 라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 현 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요 약 문

1. 제목

주요 통신서비스별 표준협정제안서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o 연구의 목적 : 상호접속 제공조건, 특히 상호접속협정(interconnection agreement)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공개 의무의 합리적 준수라는 관점에서 현행 국내법·제도에 혹여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이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 제시

o 연구의 중요성

- 기본통신협정 및 FTA 등 국제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의무준수를 양허한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표준협정제안서) 공개 원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국제규범 합치성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재점검 필요
- 신규사업자 등이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 등 지배적 사업자와의 협정체결 필요 시 계약당사자 간 투명하고 명확하며 객관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접속협정의 기준, 요금 및 절차 등에 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 양식 필요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o 연구의 구성

- 제2장 :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원칙의 역사적 배경, 다자적

(multilateral)·양자적(bilateral) 맥락(context) 및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검토

- 제3장 : 기 체결된 다자협정과 FTA 관련조문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국내 관련제도 현황 검토를 통해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이행의 주체 및 방식, 공개의 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특히 동 공개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 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확정
- 제4장 : 초고속인터넷분야에 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정책현황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표준협정서 사례를 조사
- 제5장 : 앞서의 분석결과들을 기초로 초고속인터넷분야 관련사업자들의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을 위한 규제당국의 지침 격에 해당하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내용 구체화
- 제6장 : 국제협정,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이행의 주체 및 방식, 공개의 수준 및 내용과 관련된 현안 및 대응방향, 특히 상호접속협정관련 기업비밀 등 부분적 비공개 여부에 대한 유념사항을 검토

o 연구의 범위

- (i) 어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어떠한 역무가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의 대상인가?
- (ii)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할까?
- (iii) 공개 방식 및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
- (iv)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제정을 전제로, 동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4. 연구내용 및 결과

- (i) 어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어떠한 역무가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의 대상인가?

공개 주체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이를 주요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기본통신협정 발효 이후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3항을 통해 상호접속협정 등의 인가사업자(주요사업자)에게 공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협정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현황이 FTA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희박하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적시한 ‘KT의 시내전화’와 ‘SKT의 이동전화’를 공개 주체와 공개 역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서비스)도 공개의무 적용 역무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WTO 차원의 다자규범 상으로 인터넷망·서비스를 공개의무 부담 대상에 포함한다는 우리나라의 양허나 다자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자발적 조치의 형식이 아닌 이상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허방식을 네가티브 열거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도 사전적으로는 공개의무 부담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 국내제도에 의해 주요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한 국제법적에 의한 공개의무에서 자유롭다. 다만, 국제 인터넷접속시장에서 국내 ISP들의 보호 및 국내 인터넷접속사업자들 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정책적 차원에서 공개의무 적용 필요성이 존재한다.

- (ii)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할까?

둘째, 한미 FTA를 제외하면 동일역무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부재하고, 국내적으로도 시내·이동전화에 대해 상호접속협정 인가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호접속협정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와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조건부공개를 기초로 하는 한미 FTA 발효를 전제로 보더라도 그러한 상호접속협정 공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조건부공개 조건은 “공개주체가 주요사업자일 것과 동시에 상호접속표준협정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므로 주요사업자이더라도 표준협정서 부재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자발적 공개의무 부담의 경우에는, 경쟁상황에 따른 규제정책 및 협정의무 가변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공개 방식 및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국제협정이 구체화 방식을 각국 규제당국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부(규제기관)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식과 통신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 보의 해당부분들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령을 통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즉,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공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협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또는 기업비밀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국제협정 및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상호접속 범위 및 해석, 네트워크와 시설 요구 절차, 요금, 결제, 지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기관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면허요건,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적용법률 및 관할권, 그리고 분쟁, 갱신, 종료, 유지보수 등 기타 요건 등은 공개되어야 할 내용으로 분류된다.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업기밀 정보라는 입증책

입의 부담을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관련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기업기밀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를 경우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자유법상 기업 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 기준을 설명했다. 미국 판례를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부의 정보획득능력이 손상을 입을 것인지 여부와 정보 공개로 정보제공자가 경쟁상 손실을 입을 것인지 여부가 비공개 인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쟁상의 손실이 상호접속협정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제정을 전제로, 동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초고속인터넷 역무에 국한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제정시행이 합당하며, 동 표준협정서 공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도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당국이 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사업자들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첨부] 자료로 제시하였다.

5. 정책적 활용내용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의 국제규범 양립성을 뒷받침하는 분석결과 제시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 요소 제거
 - KT 시내전화와 SKT 이동전화 부문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공개의무 부과
- 초고속인터넷 역무에 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 제시
 - 연구결과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역무가 국제규범 적용 배제대상임을 확정
 -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관련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에 참고 가능한 가이드라인 내용과 조문 제시

- 상호접속 및 공정경쟁 기반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조사결과 제시
- 국제협정 의무이행의 불확실성 지양,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방지 등 공정경쟁 활성화에 참고 가능한 정책자료 구축

6. 기대효과

- 경제·사회적 기여도
 - WTO 및 FTA 등의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통신 사업자간 공정한 협정 체결을 유도함으로써 통신 도매 시장에서 유효경쟁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호접속협정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협정 체결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
- 연구결과의 실무적 활용
 - 해외 주요국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해외진출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
 - 기간통신망 이용관련 협정의 투명성과 계약조건의 동등성 확보에 기여
 -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SUMMARY

1. Title

A Study on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for Major Telecom Service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research is to analyze current domestic regulation and its institutional problems with regard to the specific obligations on interconnection requir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i.e., public availability of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hereinafter "RIO") or "Interconnection Agreement" (hereinafter "IA").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is research deals with: (i) Which carriers and services would be subject to such obligations?; (ii) Is it all right for relevant carriers to disclose either RIO or IA, as per international agreements? Or is it compulsory for them to make publicly available RIO and IA as well?; (iii) What would be the best way of disclosure in accommodating public availability of RIO or IA, and how do we control the level and contents of RIO or IA that is supposed to be disclosed?; and (iv) What is the desirable formality and contents of RIO guideline, on the condition of making RIO publicly available in some services segment?

4. Research Results

Research outputs are as follows: (i) KT's local telephony and SKT's mobile telephony are subject to the obligations; (ii) international agreements generally requires optional public availability of either RIO or IA, although disclosing IA is a must to be compatible with Korea-US FTA obligations. Therefore, it is rational to make IA's publicly available in KT's local telephony and SKT's

mobile telephony. Although it does not seem to be compulsory to observe such disclosure obligation in internet access services due to the lack of dominant suppliers, public availability of RIO, irrespective of international rules, could be considered as a safeguard against anti-competitive conducts in internet access services; (iii) Since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silent on those matters such as the manner, level and contents to be disclosed, we cannot but take account of domestic and foreign practices generally for decision-making. While the major supplier's homepage seems to play a window role for entrant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s, we need to take due care of protection of corporate confidentiality. For that sake,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public availability of the alleged informations of corporate confidentiality through gathering and evaluating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and (iv) If public availability of RIO is applicable to internet access services only, it could be advisable for regulatory agency to frame RIO guideline to help carriers prepare RIO. To this end, the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is presented at the end of this paper.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output of this research would be useful in: (i) Clearing uncertainty in securing legal compatibility of domestic legislation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public availability of RIO or IA such as article 44 of the Telecom Business Act Amendment; (ii) Enacting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and (iii) Referring to international norm and foreign cases on implemen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very public availability for domestic rule-making.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is supposed to make contributions to enhancing compatibility of Korea's interconnection regulation with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furthering fair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sector.

목 차

| | |
|---|----|
| 요 약 문 | i |
| 제1장 서론 | 1 |
| 제2장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국제규범 현황 | 3 |
| 제1절 주요국제기구의 국제규범 및 논의현황 | 3 |
| 1. WTO 참조문서 | 3 |
| 가. 기본통신협상과 참조문서 | 3 |
| 나. 참조문서의 상호접속 규제원칙 상설 | 8 |
| 다. 상호접속 규제원칙의 함의 및 평가 | 17 |
| 2. ITU 상호접속협정 가이드라인 | 20 |
| 가. 접속점 및 접속설비 | 21 |
| 나. 설비 주문 및 변경 | 22 |
| 다.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 22 |
| 라. 설비 공유 및 병설 | 22 |
| 마. 과금 | 23 |
| 바. 서비스 품질 및 애로사항 보고 | 24 |
| 사. 상호교환 및 정보보호 | 24 |
| 아. 동등접속 및 고객 이전 | 25 |
| 자. 부가 서비스 | 25 |
| 차. 기타 사항 | 25 |
| 3.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 보고서 | 30 |
| 가. 상호접속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 | 31 |
| 나. 비차별적 대우 | 31 |
| 다. 제공조건의 시의 적절성, 투명성, 합리성, 언변들링 및 원가지향적 | |

| | |
|---|----|
| 요율 | 32 |
| 라. 추가 접속 지점(Additional Points) | 33 |
| 마. 절차의 공개 | 34 |
| 바.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 34 |
| 4. EU의 상호접속지침 | 35 |
| 제2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상호접속제공지침 | 39 |
| 1. 한·미 FTA(2007.6.30. 협상타결) | 39 |
| 2. 한·칠레 FTA(2004.4.1. 발효) | 41 |
| 3.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 43 |
| 가. 상호접속의 보장 | 44 |
| 나. 투명성 | 45 |
| 다. 상호접속 제공조건 | 45 |
| 4. 한·인도 CEPA(2010.1.1. 발효) | 46 |
| 5. 한·EFTA FTA(2006.9.1. 발효) | 48 |
| 6. 한·ASEAN FTA(상품 2007.6.1, 서비스 2009.5.1., 투자 2009.9.1. 발효) | 49 |
| 제3절 소결 | 49 |

제3장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현안 분석

| | |
|---------------------------------|----|
| 제1절 국제협정 양허내용 및 국내 법제화 쟁점 | 53 |
| 1. 국제협정별 주요내용 | 53 |
| 2. 국내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 54 |
| 가. 통상협정 준수를 위한 국내 법제화 요소 | 54 |
| 나. 국내 법제화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 | 56 |
| 제2절 국제협정 조문의 실무적 의미 | 56 |
| 1. 현안 접근을 위한 참고적 관점 | 56 |
| 2. 협정조문의 주요 맥락과 실무적 의미 해석 | 58 |
| 제3절 공개의무의 국제적 이행현황 | 66 |

| | |
|---------------------------------------|-----------|
| 제4절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현황 및 고려사항 | 75 |
| 1. 상호접속 공개의무 적용사업자 및 공개의무 적용 역무 | 75 |
| 2.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공개의무 적용 여부 | 76 |
| 3. 공개의 주체, 방식 및 수준 | 80 |
| 4. 주요 쟁점별 규제정책 고려사항 | 81 |
| | |
| 제4장 인터넷 상호접속표준협정서 해외사례 | 83 |
| 제1절 우리나라 | 83 |
| 제2절 일본 사례 | 85 |
| 1. JPIX | 86 |
| 2. NTT East/West | 86 |
| 제3절 유럽 사례 | 88 |
| 1. 영국 | 88 |
| 2. 스페인 | 90 |
| 3. 포르투갈 | 90 |
| 4. 폴란드 | 91 |
| 5. 헝가리 | 93 |
| 6. 아일랜드 | 93 |
| 7. 마케도니아 | 94 |
| 제4절 중동 사례 | 96 |
| 1. 사우디 | 96 |
| 2. 오만 | 97 |
| 3. 바레인 | 98 |
| 제5절 기타 통신사업자 사례 | 102 |
| 1. Cable & Wireless | 102 |
| 2. Level | 103 |
| 3. Worldcom | 104 |

| | |
|--|------------|
| 제5장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 | 106 |
| 제1절 개관 | 106 |
| 제2절 국내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현황 | 107 |
| 1. 총칙 | 107 |
| 2. 접속망 구성 및 운영 | 109 |
| 3.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 111 |
| 4. 접속료 산정 | 112 |
| 5. 접속료 등의 정산 | 112 |
| 6. 책임 및 업무의 한계 | 114 |
| 제3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고려사안116 | |
| 1. 상호접속협정의 일반적 내용 | 116 |
| 2.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 작성의 근거 | 124 |
| 3. 가이드라인의 구성 방식 | 125 |
| 제4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 126 |
| 1. 전문(前文) | 126 |
| 2. 총칙 | 127 |
| 3. 인터넷망 접속 | 133 |
| | |
| 제6장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방안 | 145 |
| 제1절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 145 |
| 1. 다자규범 | 145 |
| 2. 양자·지역규범 | 149 |
| 3. 해외사업자 동향 | 157 |
| 제3절 국내의 제도적 현황 | 162 |
| 1. 국내 규정 및 유사사례 | 162 |
| 2. 정보공개와 기업비밀보호 | 165 |

| | |
|---------------------------------|-----|
| 제7장 결론 | 171 |
| 참고문헌 | 174 |
| [첨부]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 | 180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International Norm on Interconnection

Section 1. Rules and Agenda of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 WTO Reference Paper
2. ITU Guideline on Interconnection Agreement
3. APEC TEL Working Group Report
4. EU Interconnection Directive

Section 2. Provisions on Interconnection of Korea's FTA

1. Korea • US FTA(concluded, 2007.6.30.)
2. Korea • Chile FTA(entry into force, 2004.4.1.)
3. Korea • Singapore FTA(entry into force, 2006.3.2.)
4. Korea • India CEPA(entry into force, 2010.1.1.)
5. Korea • EFTA FTA(entry into force, 2006.9.1.)
6. Korea • ASEAN FTA(entry into force in goods, 2007.6.1; in services, 2009.5.1.; in investment, 2009.9.1.)

Section 3. Chapter Summary

Chapter 3. Transparency Issues of Interconnection Agreement or RIO

Section 1.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Domestic Legislation

1. Main Cont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2. Agenda for Domestic Legislation

Section 2. Practical Interpretations on Provis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1. Reference Points for Understanding Issues
2. Interpreting Context and Implication of Provis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ection 3. Global Implementation of Transparency Obligations

Section 4. Korea's Regulatory Status and Considerations

1. Target Carriers and Services for Transparency Obligations
2. Availability of Transparency Obligations to Internet Access
3. Discloser, Way and Level of Disclosure
4. 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Major Issues

Chapter 4. Case Survey of Internet Access RIO

Section 1. Korea

Section 2. Japan

Section 3. Europe

1. United Kingdom
2. Spain
3. Portugal
4. Poland
5. Hungary
6. Ireland
7. Macedonia

Section 4. Middle East

1. Saudi Arabia
2. Oman
3. Bahrain

Section 5. Cases of Some Carriers

1. Cable & Wireless

2. Level
3. Worldcom

Chapter 5. Guideline for RIO

Section 1. Overview

Section 2. Internet Access RIO in Korea

1. General Rules
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terconnected Network
3. Provision of Informations on Telecom Facilities
4. Calculation of Interconnection Rates
5. Payment of Interconnection Rates, etc.
6. Terms of Reference and Responsibility

Section 3. Considerations for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1. General Aspects of Interconnection Agreement
2. Basis of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3. Formality of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Section 4. Contents of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1. Preamble
2. General Rules
3. Internet Access
4. Provision of Informations on Telecom Facilities
5. Dispute Settlement, etc.

Chapter 6. Implementation of RIO Disclosure

Section 1. International Norm and Cases of Foreign Carriers

1. Multilateral Rules
2. Bilateral or Regional Rules

3. Trend of Foreign Carriers

Section 2. Status of Domestic Norms

1. Domestic Rules and Examples

2.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tection of Corporate Confidentiality

Chapter 7. Conclusion

<Reference>

[Appendix] Guideline for Internet Access RIO

표 목 차

| | |
|---|-----|
| <표 2-1>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주요내용 | 7 |
| <표 2-2> ITU 가이드라인 상의 상호접속협정 주요내용 | 26 |
| <표 2-3> APEC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호접속점(예시) | 31 |
| <표 2-4> 세분화된 네트워크의 요소 및 서비스 | 33 |
| <표 2-5> 공개되는 상호접속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34 |
| <표 2-6> 상호접속 협정 중 공개 정보 | 35 |
| <표 2-7> ITU 가이드라인, APEC 보고서, EU지침의 상호접속협정 공개요소 50 | |
| <표 2-8> 우리나라의 FTA에서 명시된 상호접속 제공조건 및 투명성 의무 | 51 |
| <표 3-1> 주요 FTA별 참조문서 플러스(+) 사항 | 54 |
| <표 3-2>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관련 주요 쟁점 | 56 |
| <표 3-3>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의 상호접속 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 | 68 |
| <표 3-4>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아프리카) | 69 |
| <표 3-5>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중동) | 70 |
| <표 3-6>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아시아·태평양) 71 | |
| <표 3-7>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CIS) | 72 |
| <표 3-8>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유럽 지역) | 73 |
| <표 3-9>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미주 지역) | 74 |
| <표 3-10>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역무 및 기간통신사업자 | 76 |
| <표 3-11> 2009년도 해외 인터넷망 연동현황 (2009년 7월 기준) | 79 |
| <표 3-12> 주요 쟁점별 규제 고려사항 | 82 |
| <표 4-1> KT의 인터넷 접속 표준협정서 | 84 |
| <표 4-2> 일본 초고속인터넷(프레즈히카리)의 상호접속 비용항목 | 87 |
| <표 4-3> Cable & Wireless의 인터넷 접속조건 | 102 |
| <표 4-4> Level의 인터넷 접속조건 | 103 |
| <표 4-5> Worldcom의 인터넷 접속조건 | 104 |
| <표 5-1>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되는 전형적 구성항목 | 117 |

| | |
|--|-----|
| <표 5-2> 관련 고시별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 | 128 |
| <표 5-3> 초고속인터넷 가입 현황 | 129 |
| <표 6-1> 상호접속 관련 ITU, APEC, EU 규범 비교 | 146 |
| <표 6-2> ITU, APEC, EU에서의 공개 주체, 방식 및 내용 | 148 |
| <표 6-3> 국제협정상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에 관한 규정 | 150 |
| <표 6-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 상호접속 관련 내용(I) | 152 |
| <표 6-5>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 상호접속 관련 내용(II) | 154 |
| <표 6-6> 기 체결된 FTA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관련 내용(I) | 156 |
| <표 6-7> 기 체결된 FTA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관련 내용(II) | 157 |
| <표 6-8> 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공개 현황 | 158 |
| <표 6-9> 외국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주요내용(I) | 160 |
| <표 6-10> 외국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주요내용(II) | 161 |
| <표 6-11> 상호접속협정 공개에 관한 국내 규정 변경 | 162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4-1> Telekomunikacja Polska와 ISP간의 인터넷 접속 | 91 |
| <그림 6-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공개 방식 | 163 |

제1장 서론

UR 후속협상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본통신협상은 국제적으로 통신서비스 상호 접속 관행에 관한 경쟁원칙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동 협상과정에서 마련된 참조문서(reference paper) 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경쟁사업자 간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일반 규제원칙이 포함되었다. 추후 주요 국제기구들은 그러한 일반 규제원칙이 갖는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그 의미의 해석을 위해 노력해 왔다. 개별국 차원에서는 국제협정 의무준수를 위해 양허내용을 국내화하는 법·제도의 제·개정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본통신협상 타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국내법·제도와 국제협정 의무 간 합치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FTA는 한편으로 통신시장의 개방 및 경쟁을 가속화하는 한편, 참조문서 등 기존 국제규범을 구체화 또는 보완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국내법·제도의 국제협정 합치성 문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전면개방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본격 경쟁의 과정에서 국내법·제도의 합치성 여부가 검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좀 더 구체화된 규제원칙을 담고 있는 FTA로 인해 국내법·제도 보완의 여지는 없는지 재차 확인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상호접속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고의 연구목적은 상호접속 제공조건, 특히 상호접속협정(interconnection agreement)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¹⁾ 공개의무의 합리적 준수라는 관점에서 현행 국내법·제도에 흑여 문제점 및 보완 필요사항이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는 분석과정에서 다자협정, 양자·지역협정(FTA), ITU, APEC 등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주요국·사업자 현황에 관한 정보와 국내 법·제도 현황을 견주어 가면서 국제규범과 국내 법·제도의 양립성에 대한 사실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 본 고에서는 샘플 또는 모델 상호접속협정을 의미하는 'RIO(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를 '표준협정제안서'가 아닌 '상호접속표준협정서'로 번역하여 사용함.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자협정과 우리나라 체결한 양자·지역 협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i) 어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어떠한 역무가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의 대상인가? (ii)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할까?, (iii) 공개 방식 및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 (iv)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제정을 전제로, 동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등이다.

본 고의 보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원칙의 역사적 배경, 다자적(multilateral)·양자적(bilateral) 맥락(context) 및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한다.

제3장은 기 체결된 다자협정과 FTA 관련조문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국내 관련 제도 현황 검토를 통해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이행의 주체 및 방식, 공개의 수준 및 내용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특히 동 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 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협정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선택적 공개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살펴봄으로써 참고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도 찾아본다.

제4장은 초고속인터넷분야에 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을 가늠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정책현황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표준협정서 사례를 조사한다.

제5장은 앞서의 분석결과들을 기초로 초고속인터넷분야 관련사업자들의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을 위한 규제당국의 지침 격에 해당하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국제협정, 해외사례 및 국내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이행의 주체 및 방식, 공개의 수준 및 내용과 관련된 현안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상호접속협정관련 기업비밀 등 부분적 비공개 여부에 대한 유념사항을 검토한다.

제2장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국제규범 현황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상호접속 제공조건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국제규범이 처음 제정된 계기는 UR 후속협상인 기본통신협상이다. 동 협상과정에서 마련된 참조문서(reference paper)가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 관한 국내규제 원칙을 담게 되었고, 그 안에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원칙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규제원칙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타결 이후 주요 국제기구 차원에서 규제원칙 준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원칙의 해석·준수와 관련하여 여전히 일정 정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 확산의 과정에서 시도되는 참조문서 규제원칙의 구체화 및 새로운 규제원칙 추가는 일반적 차원에서 시장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을 포함한 기존의 규제원칙에 내재한 그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상호접속 제공조건, 특히 상호접속협정(interconnection agreement)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의 공개에 관한 규제원칙의 법적 함의 및 이행의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그러한 규제원칙의 역사적 배경, 다자적(multilateral)·양자적(bilateral) 맥락(context) 및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주요국제기구의 국제규범 및 논의현황

1. WTO 참조문서

가. 기본통신협상과 참조문서

역사적으로 GATT/WTO 차원에서 시장접근(market access) 제한조치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제한조치 이외에 외국인 차별요소가 부재한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에 관한 실질적 논의가 진전된 사례는 극히 희박한 상태로서 아직까지는 회계서비스와 함께 기본통신서비스에 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낸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의 부재현상은 국내규제가 기본적으로 외국인 차별요소가 부재한 정성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규제가 각 회원국의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주권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이라 풀이된다.

GATT 체제 하에서 기본통신서비스는 사실상 개방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UR(우루과이라운드)을 통해 개방협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회원국들의 거부감으로 인해 성과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UR 기간 중인 1990년 10월 기본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온 미국은 여타 회원국들의 양허부족을 이유로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면제신청이라는 압박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최혜국대우와 대비되는 상호주의(reciprocity)를 통해 여타 회원국들의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UR을 종결하면서 금융 및 해운분야와 더불어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장협상 또는 후속협상이 합의되었고, 이를 소위 ‘기본통신협상’이라고 지칭한다.

기본통신협상은 UR 종결 후인 1994년 5월 개시되어 1997년 2월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협상참가국들은 Request/Offer 방식을 통해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를 포함한 시장접근 제한조치와 내국민대우 제한조치관련 핵심쟁점들과 함께 국내규제에 관한 국제규범 등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자유화를 위한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당초 예정되었던 협상종료 시점인 1996년 4월 전반적인 양허국 숫자와 양허수준(Critical Mass) 미달을 이유로 미국이 일방적인 협상연기를 선언함에 따라 협상타결이 1년가량 늦추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고, 이듬해 인 1998년 2월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²⁾ 제4의정서(4th

2)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은 이하 약자인 GATS로 지칭함.

Protocol) 발효를 통해 협상결과가 GATS에 편입되었다. 협상 초기에는 20개 회원국과 EU가 참여하였으나, 협상타결 시점에는 37개 회원국과 EU(15개국) 등 총 52개국이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33개 회원국과 EU 등 총 48개국이 기본통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최종양허표를 제출하여 발효시킨 상태이며, 30개 회원국이 옵저버(observer)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였다.³⁾

기본통신협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대표적 성과는 다른 아닌 국내규제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통신협상은 GATT/WTO 다자통상체제 최초로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이 갖추어야 할 일련의 규제원칙 목록인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탄생시켰다. 1995년 11월 미국은 기본통신협상 결과로서 도출될 각국의 시장접근(market access) 양허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pro-competitive regulatory framework)’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 규제제도의 투명성, 공정경쟁보장장치,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립·운영 등 네 가지가 약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효한 시장접근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수차례의 비공식회의를 거쳐 1996년 4월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국내규제에 관한 원칙을 담은 국제적 모범관행 규약인 참조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협상 초반에는 허가, 기술표준, 상호접속 등 일련의 규제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한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특히, EU와 한국은 규제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GATS 체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새로이 양허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제도에 관한 참조문서는 각국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 동시에 각국의 규제제도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도 신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주로 상호접속 의무부과 대상사업자의 범위, 허가절차, 국제정산료 공개 등이 문제되었으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국제정산료를 공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다수국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3) 1998년 이후 WTO에 신규 가입한 회원국들의 거의 예외 없이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표를 제출하였으므로 현재는 최소한 WTO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GATS 제4차 의정서를 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문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목적은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침식하지 않도록 외국사업자들에게 규제적 보장장치(regulatory safeguards)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목적은 회원국별 규제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원칙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국가들, 특히 개도국들에서의 규제원칙이란 이미 국내에서 시행중인 관습규범을 법제화하는 정도로서 상당한 정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동 참조문서는 그 자체가 기본통신협정 참여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 회원국이 양허표의 '추가적 양허(additional commitments)'란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 참조문서는 공정경쟁보장장치(competitive safeguards), 상호접속(interconnection),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s), 허가기준 공개(public availability of licensing criteria), 규제기관 독립성(regulatory independence), 희소자원 분배 및 이용(allocation and use of scarce resources) 등에 관한 규제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주로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s)⁴⁾와 통신규제기관(telecom regulatory body)에 대한 의무사항들이다. 참조문서는 규제원칙 목록으로서 회원국별로 세부 규제원칙에 대한 선택적 양허가 가능하였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참여 회원국들이 참조문서 전체를 양허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담하였다.

참조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와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s)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수설비는 소수의 공급자가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공중통신망(PTTN)이나 공중통신서비스(PTTS)를 말한다. 그리고 주요사업자란 필수설비를 가졌거나 또는 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경쟁조건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비록 필수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해 경쟁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이면 주요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기본통신서비스 공급자 중에서 공정 경쟁에 관한

4) 일반적으로 또는 FTA 차원에서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dominant supplier)"로 지칭하기도 한다.

의무를 부담하는 공급자가 결정되게 된다.

공정경쟁보장장치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자가 반경쟁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교차보조를 하지 말 것, 경쟁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를 하지 말 것, 필수설비에 대한 기술적 정보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2-1>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주요내용

| 규제원칙 | 주요내용 |
|-------------|--|
| 공정경쟁보장장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보조 및 상업적 정보의 남용 금지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공급자에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 |
| 상호접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비차별적 상호접속 허용 상호접속 절차의 공개 상호접속 약정체결의 투명성 확보 상호접속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 |
| 보편적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서비스에 관한 입법권한은 전적으로 회원국이 갖으나, 제도 운영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중립적으로 이행할 것을 규정 |
| 허가기준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허가조건 및 허가기준은 허가가 필요한 경우 언제나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해야 함 |
| 독립 규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공급자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 결정이 가능해야 함 |
| 회소자원의 분배·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파수, 번호, 관료구축권 등 회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이 공정하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행해질 것을 규정 |

상호접속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양허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자와 상호접속하려는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접속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접속은 무차별적인 조건과 원가 지향적(cost-oriented)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도 가능한 한 분리해서 판매(unbundling)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추가 설비도 구축하여 접속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주요사업자는 상호접속 협의절차, 상호접속 협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상호접속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와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회원국이든지 기본통신서비스 공급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무차별적, 합리적, 경쟁 중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의무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허가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그 내용은 서비스 협정이나 통신부속서 상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주파수, 번호체계 등 회소자원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GATS나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에 없는 사항으로서 참조문서에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서비스 공급자와의 독립적 관계를 강조하는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이다. 이하에서는 참조문서 규제원칙 가운데 상호접속관련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나. 참조문서의 상호접속 규제원칙 상설

1) 참조문서 단락 2.1

국문> 2.1 본 절은 양허가 이루어진 서비스에 한하여, 특정 사업자의 이용자들이 여타사업자의 이용자와 통신하거나 여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접속을 허용해 주기 위하여,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링크에 대해 적용한다.

영문> 2.1 *This section applies to linking with suppliers providing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in order to allow the users of one supplier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another supplier and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supplier,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참조문서의 단락 2.1은 상호접속 의무의 범위를 정의한다. 사전적으로 상기 상

호접속 의무는 가능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원칙 2.1이 보여주듯이 “양허가 이루어진 서비스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통해 그러한 상호접속 의무가 실제로는 회원국이 양허표에 시장개방 양허사항을 기재한 기본통신서비스에 한정된다. 협상 당시 EU는 상호접속이 2개 사업자 간 물리적(physical) 링크와 논리적(logical) 링크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⁵⁾ 하지만 협상과정에서 회원국들 간 이루어진 최종 확인사항은 규제원칙 2.1상의 ‘링크(linking)’은 특별히 물리적 링크와 논리적 링크 여부와 관계없이 위성링크, 임대회선, 폐쇄이용자그룹(CUG), 설비기반서비스 및 재판매서비스, 기 도입되지 않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의 상호접속이라는 것이다.

참조문서의 단락 2.1은 GATS 통신부속서가 이미 규정한 의무의 구체화된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통신부속서의 단락 5는 “각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그 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⁶⁾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참조문서의 단락 2.1과 통신부속서의 단락 5 간의 결정적 차이점은 전자에서 언급되는 사업자(suppliers)가 기본통신서비스 공급자임에 반해 후자에서 언급되는 서비스공급자(service suppliers)는 기본통신서비스 공급자이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공급자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의 접근 및 이용의 관점은 참조문서의 단락 2.1 이하에서 유사하게 언급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참조문서 단락 2.2

5) 여기에서 전자는 물리적 관점에서 통신망의 연결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데이터베이스 및 통신망 기능 활용과 관련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결을 의미한다.

6)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any service supplier of any other Member is accorded access to and use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and services on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supply of a service included in its schedule.”

국문> 2.2 보장되어야 할 상호접속

주요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망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영문> 2.2 *Interconnection to be ensured*

Interconnection with a major supplier will be ensured at any technically feasible point in the network. Such interconnection is provided.

단락 2.2는 주요사업자들이 상호접속을 제공함에 있어 충족시키도록 회원국들이 반드시 보장하여야 할 기준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부분에 해당된다. 이는 의무준수가 절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상호접속은 [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Interconnection ~ will be ensured.)”고 표현되어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접속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접속 의무는 미국 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96) 상에서 LEC(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들에게 부과된 상호접속 의무와 동일하다.⁷⁾ 그러한 전제 하에서 주요사업자는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무를 부담한다.

국문> (a)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에 따라 자신의 유사 서비스, 비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유사서비스 또는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않은 요금과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영문> (a) *under non-discriminatory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rates and of a quality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provided for its own like services or for like services of non-affiliated service suppliers or for its subsidiaries or other affiliates.*

7) 미국 통신법 § 101(a), § 251(c)(2)(B) 참고.

상기 단락 2.2(a)는 GATS의 주요 의무규정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 의무의 상호접속 버전에 해당된다. 그에 따르면 주요사업자는 여타 통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공급자를 대우함에 있어 (i) 자신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를 대우하는 것과 같이 행동해야할 뿐만 아니라, (ii) 제3의 비계열 통신서비스를 대우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동등하게, 차별 없이 행동해야만 한다. 즉 (i)이 내국민대우 의무를 원용한 부분이고, (ii)가 최혜국대우 의무를 원용한 부분으로서 주요사업자가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자신이 소유 또는 이해당사자 관계인 사업자와 비교해 여타 사업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단락 2.2(a)는 주요사업자로 하여금 접속지점, 접속정보, 과금협정, 유지보수 및 시험, 접속사양, 접속보장 등 상호접속의 가능한 모든 관련사안의 처리 측면에서 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문> (b)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가능한 조건들(기술표준과 기술사양 포함) 및 원가지향적인 요금에 따라, 그리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망 구성요소 혹은 설비들을 위해 지불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언번들링 하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영문> (b) *in a timely fashion, on terms, conditions (inclu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cost-oriented rates that are transparent, reasonable, having regard to economic feasibility, and sufficiently unbundled so that the supplier need not pay for network components or facilities that it does not require for the service to be provided.*

단락 2.2(b)는 미국 통신법과 EU 상호접속지침과 맥을 같이하는 매우 강력한 요건을 규정한다.⁸⁾ 그에 따르면 우선 상호접속은 시간의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상호접속 제공의 조건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상호접속 기술표준과 기술사양도 투명해야 한다. 상호접속료는 원가 지향적이고⁹⁾, 투명하며, 합

8) 미국 통신법 § 251, EU 상호접속지침(Interconnection Directive) 제4조 단락2, 6조(a), 7조 단락2 및 단락 4 참고.

리적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하는 “합리성”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된다. 그리고 상호접속 요소는 언변들되어야 한다.

당초 뉴질랜드와 호주는 상호접속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선에서 상호접속 의무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러한 문구로는 의무회피의 여지가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의무회피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문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하였다. 그 결과 협상과정에서 “기술적 가능성(technical feasibility)”을 삭제하고 “경제적 가능성(economic feasibility)”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협상과정에서 단락 2.2(b)에 내재한 의무사항들의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의적절하다(timely)”, “원가 지향적(cost-oriented)”, “충분히 언변들되다(sufficiently unbundled)”, “합리적(reasonable)”, “경제적 가능성(economic feasibility)” 등 용어가 갖는 의미는 분쟁해결절차에서 결정되도록 유보된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단락 2.2(b)와 그 안에 기재된 용어들이 미국 통신법과 EU 상호접속지침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WTO 분쟁해결절차는 그러한 용어들의 의미 해석을 위해 대체로 미국 및 EU 차원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상호접속분쟁의 판례를 참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미국과 EU가 취하는 입장이 용어 해석의 방향을 주로 결정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문> (c)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소요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부과를 조건으로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이외의 지점들에서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영문> (c) upon request, at points in addition to the network termination points offered to the majority of users, subject to charges that reflect the cost of construction of necessary additional facilities.

9) 협상과정에서 “원가에 근거한(cost-based)”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회원국들이 실제 비용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기함에 따라 “원가 지향적”이라는 문구를 채택하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 분명해진 사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에서만 언변들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상호접속 거부의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술적 가능성은 상호접속 의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주요 상호접속 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공급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한 주요 상호접속 지점이 아닌 통신망의 다른 지점에서도 상호접속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참조문서 단락 2.3

다음으로 참조문서는 상호접속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신규 진입자가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단락 2.3(상호접속협상 절차의 공개)이다.

국문> 2.3 상호접속협상 절차의 공개

주요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되어야 한다.

영문> 2.3 Public availability of the procedures for interconnection negotiations

The procedures applicable for interconnection to a major supplier will be made publicly available.

이 단락은 상호접속 획득의 절차가 공개적으로 입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이해당사자가 그들의 권리·의무를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 단락은 절차의 공개적 입수뿐만 아니라 주요사업자가 상호접속협상을 종결해야 하는 시한도 명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캐나다, 미국, EU 등이 상호접속을 위한 합리적 시한의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삭제되었다. 그 대신 주요사업자가 무한정

상호접속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단락 2.2(a)와 상호접속분쟁 해결관련 단락 2.5에 “시의적절(timely)” 또는 시한을 언급하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었다.

4) 참조문서 단락 2.4

국문> 2.4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주요사업자는 그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

영문> 2.4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It is ensured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단락 2.4는 상호접속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가일층 제고하는 규정으로서 주요사업자가 상이한 신규 진입 사업자들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차별적인 상호접속협정(interconnection agreement)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규정은 상호접속 조건 및 요율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단락 2.2(a) 및 (b)의 요건을 한층 구체화하고 있다. 1995년 7월 참조문서 초안에서 미국은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공개 요율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참조문서 협상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한 실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요건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상호접속 조건 및 요율 등 표준협정서 공개로서 당초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상호접속협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문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통신협상에서는 주요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을 공개하도록 요건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5) 참조문서 단락 2.5

국문> 2.5 상호접속 : 분쟁해결

주요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요구하는 서비스공급자는 합리적인 시한 내에(단, 그러한 시한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는 제외) 적절한 상호접속 조건 및 요금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a) 언제든지, 또는 (b) 공개적으로 알려진 합리적인 시간 후에 이하 단락 5¹⁰⁾에서 언급된 독립규제기관에 문제해결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영문> 2.5 Interconnection : dispute settlement

A service supplier requesting interconnection with a major supplier will have recourse, either: (a) at any time or (b) afte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which has been made publicly known to an independent domestic body, which may be a regulatory body as referred to in paragraph 5 below,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appropriate terms, conditions and rates for interconnec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the extent that these have not been established previously.

GATS 제6조(국내규제)는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모든 서비스공급자들에게 행정결정에 의존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참조문서 단락 2.5는 통신 서비스분야의 상호접속관련 GATS 제6조의 구체화 조문이라고 보아도 좋다.

GATS 제6조 제1항은 이를 “각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동 절차가 실제상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10) 참고로 독립규제기관을 규정한 단락 5는 다음과 같다 : The regulatory body is separate from, and not accountable to, any supplier of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he decisions of and the procedures used by regulators shall be impartial with respect to all market participant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락 2.5는 민간 사업자의 상호접속 결정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아님에 유념하여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상호접속 제공을 위한 국내 법집행 절차 및 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러한 필요성을 넘어서는 부분을 풀기가 쉽지 않았다. 즉, 어느 기관이 분쟁해결을 담당할지, 분쟁해결의 범위가 무엇인지, 분쟁해결 완료를 위한 시한이 얼마인지, 분쟁해결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이 주요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문안인 단락 2.5는 상당한 절충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우선 분쟁해결 담당기관은 "독립적인 국내기관(independent domestic body)"이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규제기관(regulator)일 필요 없이 "어떠한 기관(any body)"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점은 특히 뉴질랜드와 같이 통신규제기관이 달리 존재하지 않아 상호접속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를 고려한 결과이다. 분쟁을 시작할 수 있는 시한의 설정은 각 회원국의 결정에 맡기도록 절충되었다. 즉,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서비스공급자는 언제든지 국내기관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합리적 시한이 이미 설정되어 공표된 경우에는 그러한 시한이 경과한 후에 문제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내기관은 상호접속의 조건 및 요율과 관련한 "분쟁해결(resolving dispute)" 책임을 부담한다. 당초 해당 문안은 그러한 국내기관이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을 부과할 수 있다.(can impose appropriate terms, conditions and rates)"라고 표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분쟁해결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해당 국내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해 유연성을 가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쟁해결은 이미 사적 당사자 간 설정된 조건 및 요율을 참고하거나 또는 사적 당사자들이 해당 국내기관에 제시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에서는 민간 사업자간 상호접속협상에 대한 시한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없었으나, 국내기관에 대해서는 상호접속 분쟁을 "합리적 시간 내에(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물론 여기에서 합리적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ecom New Zealand와 신규 사업자인 Clear 간 상호접속 분쟁 사례에서 소요된 4년은 합리적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다. 상호접속 규제원칙의 함의 및 평가

참조문서 상의 상호접속 규제원칙 단락들은 시장개방이 양허된 기본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신규사업자의 망, 설비 및 서비스가 주요사업자의 그것과 원활히 상호 접속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한 규제적 보장장치(regulatory safeguards)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산업인 동시에 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새로이 자신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려 하에서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적 보장장치 없이는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양한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불공정경쟁 상황을 연출하거나 또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시장개방 하의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상호접속협정 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상업적 문제의 방치는 공정경쟁의 걸림돌 또는 시장보호를 위한 가장된 무역장벽으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나 국제적으로 공정하고도 경쟁지향적인 상호접속은 통신경쟁 활성화를 위한 핵심쟁점으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참조문서의 역사적 가치는 그러한 복잡한 사안을 국제적으로는 처음으로 문서화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순한 문서화에 그치지 않고,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법적 구속력이 수반되는 국제적 규범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범위의 제한이란 거의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회원국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참조문서의 상호접속 규제원칙을 크게 상호접속에 대한 기술적 보장, 상업적 보장, 절차적 보장, 제도적 보장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규제 정책적 관점에서의 함의를 간략히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기술적 보장

기술적 보장은 상호접속의 지점 또는 품질과 직결된다. 전자는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상호접속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기존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상호접속서비스 품질을 모든 신규사업자에게도 차별 없이 그대로 연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상호접속 지점에 대한 선택권과 관련하여, 상호접속 지점이나 숫자가 제한되는 경우 신규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은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호접속의 여하히 허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유념해야 할 점은 트렁크(trunk)적 상호접속과 회선(line)적 상호접속 간의 차별성이다. 국사상면 또는 설비 공동사용(co-location)으로 지칭되는 전자의 경우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설비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망을 보유한 주요사업자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어느 이용자의 자격과 유사하게 신규사업자의 망을 주요사업자의 망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상업적 보장

상호접속 요율은 상호접속 규제현안 가운데 가장 복잡한 문제이고, 기존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좌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대체로 상호접속료는 신규진입자가 부담해야 할 총 원가 가운데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¹¹⁾ 합리적인 상호접속료 산정은 신규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접속료에 관한 참조문서의 규제원칙은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호접속료가 “원가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은 기존사업자가 독점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접속료를 부풀리지 않게 한다는 취지를

11) Analysys, Negotiating Interconnect Agreements Analysis, June 1998.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원가지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원가 지향적 상호접속료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은 참조문서가 각 회원국 규제 기관에 원가 지향적 상호접속료 산정모형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음을 의미한다.

사업적 보장과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추가적 사실은 상호접속이 언변들되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언변들링은 상호접속료 산정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자가 상호접속의 과정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기존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절차적 보장

참조문서는 회원국들이 상호접속 규제에 반영해야 할 일련의 절차적 보장장치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신규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지체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기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신규사업자에게 상호접속관련 정보 제공과 상호접속에 관한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호접속을 지연할 유인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장장치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록 WTO 분쟁해결절차로 회부되지는 않았으나, 1999년 미국과 독일 간 발생했던 상호접속 분쟁은 상호접속이 통신사업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의 통신사업자들은 미국무역대표부(이하, USTR)에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com)이 상호접속관련 WTO협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러한 불만은 구체적으로 상호접속 조건은 물론이고 상호접속 시한 및 상호접속 지점에 직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상호접속협정이 독일의 설비보유사업자들과 기타 경쟁사업자들 간 상호접속의 조건 관점에서 차별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¹²⁾

참조문서는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과 함께 상호접속협상 절차의 공개도 규정한다. 전자는 특정 신규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조건 및 요율에 관한 기존 정보에의

12) David Molony, "Us poised to take German interconnect row to WTO" Communications Week International, March 15, 1999.

접근을 통해 시장에 먼저 진입한 사업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비차별성(non-discrimination) 담보요건이다.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기준은 상호접속 조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후자는 상호접속 조건의 공정성이 최대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된다.

4) 제도적 보장

상호접속협정에 관한 규제는 국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상호접속협정을 순수한 의미의 사적 당사자 간 협약으로 보아 상업적 협상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자유로이 상호접속의 조건을 결정하되, 그에 관한 분쟁은 상업 또는 경쟁 법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 시장방입형 접근방식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부 국가는 규제기관이 처음부터 상호접속협정의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깊이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적극적 시장개입형 접근방식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시장방입과 시장개입을 혼합하는 중도적 접근방식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개입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가운데 시장개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조건부 개입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개입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후규제방식이다. 기본적으로는 상호접속협정을 사적 당사자 간 계약으로 보아 상업적 협상을 따르게 하되, 협상불발의 경우 합의 도출에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호주는 전자에 속한다. 사적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후적으로 규제기관이 상호접속협정을 승인하는 영국은 후자에 해당된다.

2. ITU 상호접속협정 가이드라인

ITU 차원에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은 ITU- InfoDev(2000),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Handbook”이다. 논리적 관점에서 상호접속 당사자 간 사적 계약내용을 담은 상호접속협정의 단일 형식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동 문건은 상호접속표준협정서에 대한 ITU 차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그에 따르면, 상이한 상호접속 계약, 예컨대, 2개의 시내전화망 접속,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또는 국제전화 접속, 유선과 무선의 접속, 무선 간 접속, 시내 ISP와 ISP 백본 접속 등은 상이한 목적을 갖게 되는 바, 그러한 목적은 주로 ① 착신(termination)서비스 또는 전송(transit)서비스의 제공, ② 언번들 설비제공 등이 포함된다.¹³⁾ 이하에서는 ITU 가이드라인 상의 상호접속협정 주요내용을 상술하고자 한다.

가. 접속점 및 접속설비

접속점(POI: Point of Interconnection)의 위치는 보통 부속서류에 기입하되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 대체로 교환방식(exchange type)과 주소(street address)를 포함하며, 특정한 접속점 설비 위치¹⁴⁾, 접속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기술¹⁵⁾, 수용능력(capacity) 및 트래픽 필요조건이 명기된다. 그리고 어느 사업자가 어떤 설비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접속점 및 접속된 설비의 도면을 포함해야 한다.

접속계약에는 기술사양(specification), 예를 들면 발신번호표시(CLI; calling line identification) 스펙, 여타 지능망 관련 특성 스펙¹⁶⁾, 기본 및 ISDN 전화 컨트롤 인터페이스 스펙, 시내전화번호의 이동성(LNP; local number portability), 질의·응답망 스펙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신호 접속과 관련해서도 신호망 체계 또는 표준¹⁷⁾, 신호 POI 위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지점코드(Point Code), 기술적 인터페이스 명세서¹⁸⁾, 신호접속 아키텍처 도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3) ITU가 권고하는 상호접속협정 내용은 본문 25면 <표 2-9>를 참고. ITU,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Handbook, 2000, p. 91-98

14) 예: 디지털 배분 프레임(distribution frame), 맨홀 접속함(manhole splicebox).

15) 예: 단일 모드 광섬유와 상호 접속하는 OC-3 광통신 터미널.

16) 예: 착신전환(call forwarding), 발신자 ID 등.

17) 예: CCS7.

18) 예: E-1 또는 DS-1 전송설비에 사용되는 신호링크.

나. 설비 주문 및 변경

망의 교환 및 여유용량 예측 등에 관한 상호 통보(mutual notification)를 위해 각각의 접속점에 대한 트래픽 예측, 시내전화번호 및 번호이동성 필요조건, 디지털 전화번호(digit phone number)로의 전환 및 라우팅 조정 등 주기적인 망 계획 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설비주문(ordering) 절차와 관련해서는 언번들링 망 요소를 위시한 상호접속 설비요청 및 준비에 대한 계약쌍방의 권한과 의무, 영업 및 비밀보안(confidentiality) 의무 요건 및 정보보호 절차를 명시함과 동시에, 설비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자 정보 도용 등 반경쟁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접속서비스 그룹, 이메일 주소 등 접속창구, 주문 포맷 및 절차¹⁹⁾ 등의 명시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특정 주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 사업자 전환 고객을 위한 상호협조 절차, 접속이용자 구내 장비 설치 및 변경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문 확인 및 주문 거절 절차, 적시 통보, 부가 요금 통보, 주문 완료 통지 및 요구사항 보고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트래픽 측정 책임 및 절차에 대해 양 당사자의 책임기술, 측정 및 보고 절차(과금 절차에 대해서도 명기), 트래픽 라우팅 규칙 등이 접속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설비 공유 및 병설

설비공유(infrastructure sharing) 절차 및 비용 관점에서는 전주(pole), 도관(conduit), 탑(tower), 설비포설권(right of way) 등의 이용 가능성, 설비공유와 관

19) 표준주문 방식은 서류문서 또는 전자문서 포맷으로 이용.

련하여 이용 가능한 용량 결정을 위한 절차, 설비이용 요청 사업자 간 설비배분을 위한 절차²⁰⁾, 공유설비의 가격 및 원가 계산방법, 부대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²¹⁾의 준비 및 가격설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자의 재산²²⁾에 대한 사용권, 손해에 대한 보험 및 배상(indemnification)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구내 교환 장비의 전송 등을 위한 설비병설(collocation)의 유용성, 배치 가능한 주소의 기입, 이용 가능한 공간 활용을 위한 절차, 공간 확장에 대한 예고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배치된 공간을 위한 가격 및 또는 원가계산 방법, 기타 부수적 서비스²³⁾의 준비 및 가격 설정도 필요하다. 설비의 보안 및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여타 임대 및 면허조건 조정 협정 등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마. 과금

과금(billing)과 관련해서는 과금 조정 및 책임에 대한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들은 접속서비스²⁴⁾ 및 설비²⁵⁾ 각각에 대해 과금할 수 있고, 과금 대행²⁶⁾을 할 수도 있는 등 몇 가지 과금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접속 정산을 위한 과금 매체²⁷⁾, 과금 포맷 및 소프트웨어 명세서, 접속 과금 출력물의 생성을 위한 가이드라인²⁸⁾ 등 과금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며, 시내전화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세부사항²⁹⁾, 배송 매체³⁰⁾ 및 스케줄 등 정산자료의 보관과 고객서비스기록(CSR; Customer Service Record)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도 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20) 예: first come, first service.

21) 전력, 보안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등.

22) 예: 빌딩 소유자, 통행권 소유자, 설비소재지 시정부와 여타 공적·사적 재산소유자 등

23) 예: 일반 전력 및 비상시 백업 전력, 조명, 난방 및 냉방, 보안 및 알람 시스템, 유지 및 관리보수(janitorial services) 등.

24) 예: 착신.

25) 예: 언번들 시내망 및 기타 망 요소.

26) 시내전화사업자는 장거리 또는 국제전화 교환, ISP 등을 위한 과금 대행 가능.

27) 디스크, 테이프, 서류문서 또는 전자문서(EDI) 전송.

28) 과금 데이터 포맷 및 데이터 요소, 표준화된 코드, 과금 스케줄 등.

29) 예: DSLAM을 포함한 개인식별번호 등 사용된 접속요소 기록, 회선 및 여타 장비.

30) 예: 테이프, 서류문서 등.

과금과 관련된 지불조건(terms and conditions)은 과금 금액 및 관련 요금, 지불 계약 조건, 납기 후 지불시 벌과금(penalty), 서비스 부실 시 보상 등을 포함하고, 과금 문의 및 조정의 세부사항, 백업 기록을 지원할 책임, 과금 분쟁의 고지, 초기 분쟁해결절차 및 최종 분쟁해결절차 등 과금 분쟁 및 화해(reconciliation)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바. 서비스 품질 및 애로사항 보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은 부록에 명기한다. 여기에는 접속회선 준비 평균 시간, 접속 컷-오버(cut-over) 비율, 경쟁사 및 자사(계열사) 간 공급 성과 비교, 접속된 회선에서 측정하는 교환 및 전송 품질³¹⁾ 등을 담아야 한다. 네트워크 테스트 및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간섭(interruption) 및 네트워크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네트워크 테스트를 할 권리를 규정한다.

애로사항 보고(trouble reports)에 관해서는 보고 절차, 통보 기간, 응답 시간 표준, 접속 사업자에게 접속서비스 제공 문제 보고 하기 이전에 자사망에 대한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접속서비스 제공 애로가 발생할 경우, 애로사항 조사보고를 위한 비용 등 발생 비용에 대한 부담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시스템 보호 및 안전성 측정에 대해서도 방해 및 중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의 수행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사. 상호교환 및 정보보호

사업자 간 데이터 상호교환(interchange)의 방법 및 포맷, 데이터 인터페이스/소프트웨어/형식(form) 등을 계약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어떤 데이터가 상호교환될 것인지를 데이터 타입 및 시스템 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신규 설비 및 서비스 주문, 네트워크 변화 전망, 과금, 호 라우팅 및 시내전화번호 이동성에 필요한 번호 할당 및 관련 데이터 준비, 전화번호부 및 데이터베이스에 가입자 명

31) 예: 혼잡시간 차단 확률, 전송 지연 및 로스(loss) 등.

부 기입, 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자 파일을 위한 암호 보호 등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분리된 접속서비스그룹 설립, 관련 종업원에 대한 정보 보안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해서는 기밀성 확보 절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 등을 계약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

아. 동등접속 및 고객 이전

사업자 사전선택(CPS: Carrier Pre-Selection), 통화별 사업자선택(call-by-call selection) 등에 대한 동등접속(equal access) 절차 규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 사전선택 세부 절차는 고객인증(authorization) 요구³²⁾, 비인증 고객의 이전(slamming)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 및 측정, 비인증 고객 이전 시 패널티 부과, 고객 이전 보고 방법³³⁾, 주문 확정을 위한 절차³⁴⁾, 고객 이전 이행 스케줄, 고객 이전 이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분쟁 고객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 부가 서비스

교환원서비스(operator assistance) 및 여타 부가서비스에 대한 사항도 접속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교환원서비스의 경우, 전화번호, 통역, 통화트래픽 처리절차, 과금절차 등을 명기해야 한다. 여타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부에 가입자 명부 기입, 과금 및 정보 삽입, 수리 및 유지 서비스 등을 규정해야 한다.

차. 기타 사항

32) 규정된 형식의 서명, 투명한 선택 요구 등.

33) 접속창구 및 제공 데이터 등 관련내용.

34) 포맷, 데이터 제공 매체 등.

기타 사항으로 자연재해 발생의 경우, 접속계약 의무이행의 면제사유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계약은 관련법 준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하고, 계약의 유효성과 관련된 계약의 갱신, 수정, 종결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규제조치 및 패널티, 채무, 채무배상(indemnification) 등도 규정해야 한다.

한편, 법적 해석에 대한 기준 및 계약의 시행³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협상에 임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 규제자, 중재자 또는 법원에 위임, 중재의 선택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의 지속기간, 권리와 절차의 갱신을 규정해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검토 및 재협상 절차, 규제제도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표 2-2> ITU 가이드라인 상의 상호접속협정 주요내용

| Contents | Detail and Comments |
|---|---|
| Interpretation | |
| Recit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ereas” clauses add historical and legal context to assist • understanding by future readers of agreements |
| Definition of Key Term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rminology varies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countries and operators • It is important to ensure compatibility of terminology to the local environment when adapting interconnection agreements from other countries • Definitions in other documents may be referenced, e.g. definitions in laws or regulations, regulatory guidelines, ITU definitions |
| Scope of Interconnection | |
| Description of Scope and Purpose of Inter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erent types of interconnection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e.g. two local networks, local to long distance/international, fixed-to-mobile, mobile-to-mobile, local ISP to ISP backbone) • The purpose of some interconnection agreements is to provide termination services or transit services; others involve provision of unbundled facilities, etc. • Interconnection architecture (annotated diagrams) |

35) 예: 전 계약 조항, 시행불능 조항의 효과, 권리 및 배상 등.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cription of network facilities to be interconnected (e.g. OC-3 fibre optic terminals with interconnecting single-mode optical fibres) • Specify capacity and/or traffic volume requirements • Indicate which party is to provide which facilities (include diagram of POIs and interconnected fac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 specs ✓ Other advanced digital feature specs, e.g. call forwarding, caller name ID, etc. • Basic and ISDN call control interface specs • Local Number Portability (LNP) query-response network specs |
| Signaling Inter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fy type of signaling networks/standards (e.g. CCS7) • Signaling POIs locations to be specified (i.e. Signal Transfer Points or STPs) • Point Codes to be specified • Technical interface specifications (e.g. signaling links to be dedicated E-1 or DS-1 transmission facilities; operating at 56kbps) • Diagram of signaling interconnection architecture |
| Network and Facility Changes | |
| Planning and Forecas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quirement for mutual notification of network changes and capacity forecast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ffic forecasts for each POI ✓ local number and portability requirements ✓ area code saturation and changes to increased digit phone numbers • default and redundant routing arrangements • Periodic network planning reports may be specified |
| Facility Ordering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fy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with respect to ordering and provisioning of interconnection facilities (including unbundled network elements -- see below). •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ensure same • Ensure no anti-competitive use of order information (e.g. no contacts with end users; competitive service divisions of operator receiving orders) • Specify points of contact (e.g. Interconnection Service Groups; Email addresses, etc.) • Specify order format and procedures (e.g. standard order forms may be utilized in paper or electronic (EDI) format) • Procedures to expedite specific order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rdination process for migration of customers between operators (e.g. coordination of cut-overs to prevent or minimize service interruptions to end users) ✓ Procedures for ordering operator to arrange for all equipment installations and changes at end-user premises • Order confirmation and order rejection procedures, timely notification, notification of additional charges, etc. • Order comple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
| Traffic Measurement and Routing | |
| Traffic Measurement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scribe party responsible; measurement and reporting procedures (see billing procedures below): • Rules for routing of different types of traffic, if any (e.g. Bill and Keep local traffic that is to be terminated reciprocally without charge may be carried on "Bill and Keep" trunks; traffic to which termination charges apply may be carried on other trunks, e.g. transit trunks, national traffic trunks, etc.) |
| Infrastructure Sharing and Collocation | |
| Sharing of Infrastructure, Procedures and Cos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ailability of poles, conduits, towers, rights of way, etc. • Procedures, if any, for determining available capacity; procedures for allocating capacity among requesting operators (e.g. first come/first served) • Prices and/or costing method • Provision and pricing of supplementary services (electrical power, security systems, maintenance and repairs, etc.) • Sub-licences on property of third parties (e.g. right of way owners, municipal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property owners, where infrastructure is located), insurance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 |
| Colloc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ailability of actual or virtual collocation (e.g. for transmission facilities on exchange premises); list of addresses where collocation is available; procedures for determining available space; reservation of expansion space • Prices and/or costing method for collocated space • Provision and pricing of supplementary services (e.g. electrical power and emergency backup power, lighting,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ecurity and alarm systems, maintenance and janitorial services, etc.) • Procedures for ensuring access to and security of collocated facilities (notification; supervised repair and provisioning work and/or separated premises, etc.)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gotiation of other lease and/or licence arrangements, including issues of sub-licences on property of third parties (e.g. building owners, right of way owners, municipal and other public property owners), insurance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
| Billing | |
| Scope of Billing Arrangements and Responsibil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y include different arrangement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ors billing each other for interconnection services (e.g. termination) and facilities (e.g. unbundled loops and other network elements) ✓ Performance of billing functions by some operators for others (e.g. local operators billing end-users for long distance or international operators, ISPs, etc.) |
| Other Ancillary 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bscriber listings in telephone directories • Information and billing inserts •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 Other services provided by one or other operators to increase mutual operating efficiencies |
| Termination | |
| Grounds for Termination and Restric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rmination may only be permitted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e.g. regulatory approval for termination of interconnection by incumbent operator) ✓ Grounds for termination by incumbent may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ory or court orders ✓ Bankruptcy, insolvency, receivership, etc. ✓ Cessation of business • Fewer, if any, termination restrictions in competitive markets, and by non-dominant operators |
| Termination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vanced notice requirements • Payment of non-recoverable interconnection costs incurred by disconnected operator • Computation and payment schedule for disconnection costs • Dealings with end-users, communications restrictions, etc. • Disconnection cutover procedures |
| Other Provisions | |
| Force Majeu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st of conditions for which non-performance of interconnection agreement obligations will be excused |
| Assign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ghts of assignment and restrictions on same (e.g. consent or regulatory approval requirements) |

| | |
|----------------------|--|
| Applicable Law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reement to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elevant jurisdiction |
| Regulatory Approv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ecify regulatory approvals required for effectiveness and/or renewal, amendment, termination, etc. of agreement |
| Breach of Agre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medies and penalties • Liabilities,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
| Legal Interpret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ndard provision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 (e.g. entire agreement clause, effect of unenforceable terms, cumulative rights and remedies, etc.) |
| Dispute Resolu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dures for resolution of disputes under agreement that are not specifically dealt with elsewhere. For example: • Good faith negotiations, time schedule for same, escalation through management levels • Referral to regulator, arbitrator or court (e.g. of different types of issues) • Selection of, and procedures for, arbitration |
| Ter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uration of term • Renewal rights and procedures |
| Amend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 and re-negotiation procedures • Impact of regulatory changes |

3.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 보고서³⁶⁾

APEC 정보통신 실무그룹은 ‘WTO 참조문서 이행 최적관행(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APEC 회원경제체들이 참조문서를 각국 국내 규범으로 수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항별 APEC 차원의 해석을 제시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상호접속 원칙 및 상호접속협정 공개수준에 대한 APEC 차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접속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주요사업자는 상호접속협상 시 타 사업자에

36) 안재홍·이은경, 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17(9), 2005.5., APEC,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2009/TEL39/LSG/WKSP!/014, 2009.4, 22-38.

대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들 만에 의해 협상이 진행될 경우 공익에 부합되는 상호접속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및 소비자 이익 제고를 위해 상호접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 상호접속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

주요사업자는 타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상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공중통신전송네트워크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표 2-3> APEC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호접속점(예시)

- 지역교환기와 탠덤교환기의 중계회선 상호접속점(상호접속의 가장 보편적 지점)
- 국제관문교환기의 국내 혹은 국제 서킷 상호접속점
- 시내교환기의 중계회선 및 시내망 부분(예: main or digital distribution frame)
- 교환기의 교차접속 지점(cross-connect points of any exchange)
- 사업자간에 상호 접속할 것을 합의한 지점(meet points)
- 신호 전달점(signaling transfer points)
- 세분화된 망제공(unbundling) 요소에 대한 접속점
- 케이블 육양국(landing stations)

나. 비차별적 대우

주요사업자는 상호접속을 제공함에 있어 주요사업자 또는 관련 사업자와 비관련 사업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특히 상호접속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표준 및 명세서(specification), 효율, 품질 등에 있어 비차별적 대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주요사업자는 망간 상호 연동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규진입자에 대하여 기술표준 혹은 명세서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사업자는 계열사 및 자회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효율을 제공해야 하며,

유사한 성격의 상호접속 협정은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계열사 및 자회사에 제공되는 동일한 질의 상호접속을 각각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 제공조건의 시의 적절성, 투명성, 합리성, 언번들링 및 원가지향적 요율

주요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지연은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경쟁을 저해시킴으로 상호접속에서 시의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호접속의 제공이 상호접속협정의 협의 및 이행 과정을 포함하여 엄격한 시간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상호접속 요율의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상호접속 계정은 다른 계정 및 요율과 분리되어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가산정방식과 관련하여 다수 국가들(호주, 캐나다, 홍콩, 중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원가산정방식은 장기증분원가 방식(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이다. LRIC는 상호접속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설비 및 서비스의 미래예측분석(주로 장기 추정치를 이용) 비용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상호접속 요율을 인하시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기타 장기평균증분원가(LRAIC), 총서비스장기증분원가(TSLRIC), 총요소장기증분원가(TELRIC) 등의 원가산정방식도 있다.

규제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호접속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회계기록에 기반을 두어 요율을 산정하는 Historical Accounting Costs(HAC)방식이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 및 운영여건에 비해 비효율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과거 시점에서의 비용을 근거로 현재의 비용을 산정하는 이 방식은 원가를 산정하는데 다른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던지 규제자는 사업자에 의해 제시되는 상호접속 요율이 원가 중심일 것을 보장해야 한다. 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제3자인 컨설턴트 혹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언번들링(unbundling)³⁷⁾과 관련하여 참조문서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필요하지 않은 망요소 혹은 설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제공조건이 충분히 언번들링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호접속 제공조건을 언번들링하는 정책의 목표는 경쟁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경제적,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며, 많은 주요사업자들은 규제가 없을 경우 경쟁업체에게 언번들링된 네트워크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회원국들(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은 강제적 언번들링 정책을 자국의 상호접속 관련 규범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전송 혹은 교환 설비와 관련 특정 기능, 특징, 서비스 별로 세분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특정 회원국은 가입자 회선에 한해서만 비용 중심의 조건으로 강제적 언번들링을 요구하고 있다.

<표 2-4> 세분화된 네트워크의 요소 및 서비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접근회선(가입자망 및 관련 기능) • 시내 교환 기능 • 중계교환기능 • 교환기간 전송(예: 시내 및 중계교환기 사이) • 신호 링크 및 신호전송점(STPs)에의 접근 • 통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접근(예: 회선 정보, 무료 통화 및 번호이동 DB) • 전화국 코드(NNXs) • 가입자 목록(전화번호부 및 전화번호 DB) • 교환기 서비스 • 번호부 지원 기능 • 운영자 지원 시스템(OSS) 기능 |
|---|

라. 추가 접속 지점(Additional Points)

대부분의 경우 주요사업자들은 표준적인 상호접속 지점(POI)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호접속협정 혹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는 이러한 표준적 POI가 지정되어 있

37) 이하 언번들링을 망세분화 또는 세분화로 표현하기도 함.

다. 그러나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표준적 POI 이외 다른 지점에서의 상호접속을 원할 경우 주요사용자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이때 요청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지점에서의 상호접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 절차의 공개

상호접속절차는 모든 당사자가 권리·의무를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는 투명성을 위하여 다른 서비스 사업자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표 2-5> 공개되는 상호접속 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상호접속 희망 사업자의 협의 개시 요령
- 협의 요청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 요청에 응해야 하는 시점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추가정보 혹은 요구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최장 협의 기간
-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의뢰 가능한 규제자
- 규제자에게 의뢰하는 방법
- 규제자의 대응 시점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을 완료해야 하는 시점
- 상호접속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상고 혹은 다른 사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는 투명성과 비차별적 대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부 회원국에서는 협정사본의 형태이든 혹은 표준협정서의 형태이든 아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상호접속협정 사본의 형태로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는 협정이 확정되자마자 공

개되어야 한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경우, 필요정보는 상호접속협정의 관련내용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하며, 신규 상호접속협정의 관련내용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보완되어야 한다.

<표 2-6> 상호접속 협정 중 공개 정보

- 가격책정 일정
- 요청 및 제공 과정
- 세분화된 망요소
- 전화번호 안내, 수선 및 회선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등 지원기능
- 작업절차, 서비스 요청 및 제공, 유지, 사용자의 이용량 자료 제공, 서비스/작동 준비 상황 테스트, 서비스 계산서 등 서비스 기능
- 서비스의 특징, 기능 등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사전 통지 및 특정 서비스 및 고객 특징

4. EU의 상호접속지침³⁸⁾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한 공통 규제프레임워크에 관한 2002년 3월 7일자 유럽 의회 및 유럽 회의 2002/21/EC 지침(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은 공동체에서 음성, 팩스, 데이터 또는 이미지 전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정 및 이동 전기통신 네트워크,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 지상파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네트워크, 위성 네트워크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를 위하여 규제프레임워크이다. 동 지침은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접근과 상호접속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97/33/EC 지침은 현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련의 의무 즉, 투명성, 비차별, 회계 분리, 접근 및 비용 지향을 포함한 가격 통제를 규정하였다. 여기서는 가능한 의무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하지만 이에 덧붙여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들은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

38) EU,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Access Directive), 2002.

련의 최대한 의무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국제적 약속 또는 공동체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재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를 위한 조건적 접근 시스템의 경우에서처럼, 모든 시장 행위자(all market players)에게 접근과 상호 접속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가격을 포함하여 접근 및 상호 접속을 위한 계약 조건의 투명은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분쟁을 회피하고, 서비스가 차별적 조건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시장 행위자에게 신뢰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개방과 투명은 상호 운용을 보장하는데 특히 중요하고, 국가 규제기관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당해 정보의 본질과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방법, 예를 들면 출판의 유형(문서 및 전자적)과 비용부담 여부를 특별히 정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접근과 네트워크 요소 및 관련 설비의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인 요청에 부합하도록 하는 의무가 운용자에게 부과된 경우, 그러한 요구는 기술적 타당성 또는 네트워크 완전성 유지의 필요성³⁹⁾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하여서만 거절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된 접근 의무를 받은 운용자는 자신의 관할 능력 밖에 있는 접근 유형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경쟁을 단기간에 증진하는 국가 규제기관에 의한 강제된 접근의 부과는 장기간에 있어서 경쟁을 더 보장할 대체적 설비에 투자하기 위한 경쟁자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

회원국에 의한 정보의 공고는 시장 행위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가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고, 관련된 세부 사항 정보를 어디에서 찾는지를 알도록 하여야 하며, 공보에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이해 관계자가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을 도울 것이다.

동 지침 제1조에서는 지침의 목표 및 정의를 다루고 있다. 동 지침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경쟁,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 및 소비자혜택을 가져오는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공급자 사이의 관계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는 것이다. 동 지침은 그들의 서비스 또는 관련 설비에의 상호접속 및 접근을 구하는 운용자 및 사업자를 위하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지침은 국가 규제기관을 위

39) technical feasibility or the need to maintain network integrity.

하여 접근과 상호 접속에 관하여 목적을 규정하고, 국가 규제기관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가 검토되고 바라는 목적이 달성된 적절한 경우에 폐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제정을 언급하고 있다.

제2조는 정의를 다루고 있으며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상호접속’은 한 사업자의 사용자가 동일한 또는 다른 사업자의 사용자와 통신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공공 통신 네트워크의 물리적 및 논리적 연결을 의미한다. 여기서 서비스는 관련 당사자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되며, 상호 접속은 공적 네트워크 운용자 사이에서 실행되는 접근의 특정한 유형이다.

제3조는 접근과 상호접속을 위한 일반적 구조를 다루고 있다. 회원국은 사업자가 동일한 회원국 또는 다른 회원국에서 공동체 법에 따라, 접근과 상호 접속을 위하여 기술적 및 상업적 조정에 관한계약을 당사자 사이에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네트워크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접근 또는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그 회원국에서 운용을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⁴⁰⁾

제5조는 접근과 상호 접속에 관한 국가 규제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루고 있다. 2002/21/EC 지침(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의 제8조에 규정된 목적을 추구하여 활동하며, 국가 규제기관은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효율성, 지속가능한 경쟁을 촉진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그들의 책임을 행사하며, 적절한 접근과 상호 접속 및 서비스의 상호 운용을 권장하고 이를 적절한 곳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제8조에 의거하여 현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 취해지는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국가 규제기관은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a) 종단 간 연결(end-to-end connectivity)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네트워크에 상호 접속할 의무를 정당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최종 사용자에게의 접근을 통제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

40) The undertaking requesting access or interconnection does not need to be authorised to operate in the Member State where access or interconnection is required, if it is not providing services and does not operate a network in that Member State(ChapterII, Article 3.1.)

(b) 최종사용자가 회원국에 의하여 특정된 디지털 라디오 및 TV 방송에의 접근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 부록I의 2장에 언급된 설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을 제공하는 운용자에 대한 의무 등이다.

제12조에 따라 접근을 제공하는 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 국가규제기관은 공동체 법에 의거하여, 네트워크의 정상 작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익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술적 또는 기능적 조건을 설정하며, 특정한 기술적 표준 또는 특정들의 실행을 언급한 조건은 2002/21/EC 지침(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의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와 조건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례적이며 그리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2002/21/EC 지침(규제프레임워크 지침)의 제6조 및 제7조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는 투명성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규제기관은 상호접속 및/ 또는 접근과 관련하여 운용자에게 회계 정보, 기술 상세규격, 네트워크 특성, 공급과 사용의 조건 및 가격과 같은 공공의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운용자가 비차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 규제기관은 운용자로 하여금 사업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설비를 위하여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히 개별적이며, 세분화된 구성요소관련 제공의 사양을 보여주며, 가격 또는 참고 제공가격을 공고할 수 있다.

국가 규제기관은 특히 이 지침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 제공가격의 가변성 여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한 정확한 정보, 요구되는 세분화 수준 및 공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⁴¹⁾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용자가 금속연선(twisted metallic pair) 가입자 회선에의 개별적 접근과 관련한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가 규제기관은 부록II가 규정한 요소를 최소한 포함하는 참고 제공가격 출판을 보장해야 한다.

제15조는 정보의 공고와 접근을 다루고 있다.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부과된 특정 의무가 공지되고 그러한 특정 제품/서비스 및 지리적 시장

41)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may specify the precise information to be made available, the level of detail required and the manner of publication(Article 9, 3.).

이 정의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최신 정보가 만일 그러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고, 특히 영업 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상호접속제공지침

1. 한·미 FTA(2007.6.30. 협상타결)⁴²⁾

한-미 FTA에서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은 부속서 제14장에 담고 있다. 부속서 제 14.3조는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한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동일한 영역내에서 간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② 그리고 ①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제14.8조는 상호접속에 대한 일반조건을 담고 있는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 단점 이외 추가 지점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①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42) 한미 FTA를 통하여 한미가 상호접속의 비차별적 제공의무를 합의하였으나, 상호접속요율에 있어 별정통신사업자보다 기간통신사업자를 우대하는 우리측 제도는 현행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음(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5. p. 190)

- ②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 ③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 ④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요소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 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비용을 반영하는 효율을 조건으로.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그것과 상호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을 통하거나 다음의 선택사항 가운데 하나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① 지배적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 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또는
- ②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

한편 제14.8조에서는 여타의 FTA와 상이하게 반드시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즉 당사국의 지배적 사업자에 한하여 해당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당사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부속서 제14.20조는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기서 상호접속공개

조건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동 조에서는 제21.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 ① 그 근거를 포함하여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자국 통신규제 기관에 제출된 요율표가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공개되도록 할 것,
- ② 이해관계인이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와 합리적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받을 것,
- ③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규범제정에 있어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모든 의견이 공개될 것,
- ④ 통신규제기관에 제출된 의견에서 제기된 모든 중대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규범제정 과정에서 응답할 것,
- ⑤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등이다. 상기의 '다음'에 해당되는 조치는, i)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ii)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iii)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iv)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 등이다.

2. 한·칠레 FTA(2004.4.1. 발효)⁴³⁾

한-칠레 FTA 협정의 양 당사국은 WTO협정의 일부인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양자협정으로 서, 제1.2조는 동 협정의 목적을 다루고 있다.

이는 양 당사국간 상호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장려, 양 당사국 영역내의 무역장벽 철폐, 양 당사국 영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촉진,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 창달, 양 당사국 영역간 투자기회 증진, 각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시행, 당사국 간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마련, 그리고 향후 심화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틀 구축 등이다.

부속서 제12장은 전기통신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 장에서 상호접속제공 조건의 내용 및 공개기준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3)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에 따라, 개인임차회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다음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① 공중전기통신망과 접속하는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의 구입이나 임대, 그리고 접속,

② 고객이나 사용자에 대한 전화접속 및 이들로부터의 전화접속을 제공하는 용도로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개인임차나 자가망과 그 당사국의 영역내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는 공중전기통신 망과의 상호접속 또는 그러한 인들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

③ 교환, 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④ 그들이 선택한 운영 프로토콜의 사용

또한 각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설정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보장하고,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인이 사내전용 통신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해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해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외에는 공중전기통신 망이나 서비스의 접속과 사용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서 다음은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망이나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공중에 이용가능 하도록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의 확보, 또는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등이다.

물론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조건들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다음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①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나 공동사용에 대한 규제,

②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상호접속을 위해, 접속 프로토콜을 포함한 특정 기술 접속방식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③ 개인임차나 개인소유 회선과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인이 임차하거나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

④ 채택되거나 유지될 경우 절차가 투명하고 그에 따라 접수된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신고 절차.

제12.7조에서는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즉,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한·싱가포르 FTA(2006.3.2. 발효)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과 관련하여, 상호접속 제공조건관련 내용은 제11장에 담겨져 있다. 제11.1조는 상호접속과 관련되는 비차별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여건 하에서 동종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나 서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11.3조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칠레 FTA에서와 유사하게,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 하에서 자국 영역 내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전용임대회선을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①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구입 또는 리스 및 부착,

②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당사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

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리스 또는 소유회선과의 상호접속,

③ 교환·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④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

⑤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인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 게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종류의 서비스 공급.

또한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더불어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도록 한다.

①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및 서비스를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보장,

②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한편, 당사국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상호 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요건,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 승인과 그러한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에의 부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통보, 등록 및 면허 등이다.

가. 상호접속의 보장

제11.4조는 지배적사업자의 행위와 관련한 상호접속 원칙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설비 기반사업자와 그 밖의 설비기반사업자 또는 서비스기반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①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및 요금,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품질,

②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하지 아니한 망 구성요소 혹은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 요금 및 조건(기술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③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나. 투명성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의 담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배적사업자와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은 공개해야 한다. 즉 각 당사국은 자국 ①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②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 상호접속 제공조건

제11.11조는 투명성과 함께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조에서는 양국은 아래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① 통신 규제기관이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것,

②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

③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러한 공개대상에는 (i)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 (ii)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 (iii)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iv)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면허 요건, 그리고 (v)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 수정,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이 포함된다.

4. 한·인도 CEPA(2010.1.1. 발효)

한-인도 CEPA에서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은 부속서 제7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부속서 제7.7조가 상호접속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든 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①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비차별적인 조건 및 효율⁴⁴⁾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②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는 기간, 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 조건 및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시의 적절하게⁴⁵⁾ 제공된다.

44) 양 당사국은 상호접속 효율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간의 상업적으로 협상된다는 점을 양해한다.

③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비용을 반영하는 요율, 기술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 통신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특히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공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바,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중 하나를 공개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협정체결의 과정, 즉 상호접속협상절차도 공개하도록 하는 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투명성, 즉 상호접속협정 공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우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음으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7.13조에서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공개조건을 담고 있는 바, 각 당사국이 보장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표되거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달리 공개되도록 할 것,

② 이해관계인에게 자국 통신규제기관이 제안하는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를 할 것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⁴⁵⁾,

③ 다음을 포함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자국의 조치가 공개될 것 등이다.

③에서 언급되는 ‘다음’에는 i)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ii)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iii)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45) 양 당사국은 시의 적절이라는 것이 개별 상호접속협상의 복잡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한다. 그러나 상호접속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46) 이 의무는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도록 적용된다.

에 부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건, iv) 통보·허가·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요건, 그리고 v)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수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5. 한·EFTA FTA(2006.9.1. 발효)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및 스위스 등 회원국들로 구성된 소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도 FTA를 체결한 바 있다. 한-EFTA에서 상호접속내용은 부속서 X에 담고 있으며, 제6조에서 통신서비스의 상호접속을 다루고 있다. 제6조는 당사국 간 상호접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GATS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든 다음과 같이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고 해석된다.

①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사업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② 시의 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구성 요소 또는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조건(기술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된 망 중단점에 추가되는 지점들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과를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하고,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한편, 사업자들이 규정된 시간 내에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의 협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사업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한·ASEAN FTA(상품 2007.6.1, 서비스 2009.5.1., 투자 2009.9.1. 발효)

우리나라와 ASEAN 국가들 간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에 걸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FTA가 체결된 바 있다. 양 당사자 간 체결된 FTA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관련 부속서로 합의된 사항을 비롯하여 상호접속 제공조건 및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부재한다.

제3절 소결

본장에서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상호접속 제공조건을 중심으로 상호접속에 관한 국제규범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참조문서의 해석 및 이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상호접속협정 공개요소에 관한 국제기구의 입장 또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ITU가 권고하는 공개요소는 APEC과 EU의 입장보다는 포괄적이다. 예컨대, 트래픽 측정 의무 및 라우팅 규칙, 동등접속 및 고객이전, 사업자 지원 및 기타 부수적 서비스, 종료 절차 등에 관해 APEC이나 EU는 명시적으로 이를 공개대상 요소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ITU, APEC 및 EU 간 공개대상요소에 대한 입장이 일견 상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상이성의 배경은 각 국제기구별로 기재한 공개대상요소가 참고적·예시적 목록이라는 사실에서 연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에 포함시켜 공개해야 할 주요 항목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획일화된 공개요소 프레임워크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전형적·공통적 공개대상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각국 규제현황과 사업자 현황에 따라 사안별로 일정 정도의 유연성 항목을 보완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7> ITU 가이드라인, APEC 보고서, EU지침의 상호접속협정 공개요소

| 구분 | ITU | APEC | EU |
|-------------------------------|-----|------|----|
| 상호접속 범위 | 0 | 0 | 0 |
| 네트워크와 시설 요구 절차 | 0 | 0 | 0 |
| 트래픽 측정 의무 및 라우팅 규칙 | 0 | - | - |
| 인프라 분배 절차와 비용, 설비병설 | 0 | - | 0 |
| 요금징수 범위/책임 및 절차 | 0 | 0 | 0 |
| 서비스품질/유지 및 분쟁보고 | 0 | 0 | 0 |
| 사업자/고객정보의 접속 및 데이터 교환 | 0 | 0 | - |
| 동등접속 및 고객이전 | 0 | - | - |
| 사업자 지원 및 기타 부수적 서비스 | 0 | - | - |
| 종료 절차 | 0 | - | - |
| 분쟁, 개정, 법적 해석, 적용법률, 등 기타 조항들 | 0 | 0 | 0 |

우리나라와 기체결한 FTA 상의 상호접속에 관한 규정은 참조문서의 형식 및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비록 구체화 시도가 있긴 하였으나, 여전히 FTA의 관련규정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조문이지 해석 및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만, FTA에서 나타난 특징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상호접속 제공조건의 경우 한-EFTA FTA와 한-ASEAN FTA 이외에는 GATS 통신부속서(Annex on Telecommunications)의 관련조문들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이는 상호접속 요금 및 여타 서비스 사용 조건, 상호접속관련 세부사항, 상호접속 표준, 통신망 연동의 조건, 허가·등록·면허요건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GATS 통신부속서와 동일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한-칠레 FTA는 상호접속협정의 공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표 2-8> 우리나라의 FTA에서 명시된 상호접속 제공조건 및 투명성 의무

| FTA 상대국 조건 및 의무 | 칠레 | 싱가폴 | EFTA | ASEAN | 인도 | 미국 |
|--------------------------------------|----|-----|------|-------|----|----|
|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 0 | 0 | - | - | 0 | 0 |
|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 0 | 0 | - | - | 0 | 0 |
|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기관 정보 | 0 | 0 | - | - | 0 | - |
|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 및 면허요건 | 0 | 0 | - | - | 0 | 0 |
|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 0 | 0 | - | - | 0 | 0 |
|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선택적 공개 | - | 0 | 0 | - | 0 | 0 |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보유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표준협정서 공개의무 | - | - | - | - | - | 0 |

한-EFTA FTA와 한-ASEAN FTA 간에도 상이성도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을 다루지 않고는 있으나, 한-EFTA FTA의 부속서 X는 제2조(규정당국 보장)와 제6조(비차별, 투명, 합리적, 원가 지향적으로 상호접속)에 입각하여 상호접속 제공조건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해, 전자는 상호접속 협정이나 표준협정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제시하고 있다. 반면 후자는 명시적으로 상호접속 제공조건이나 상호접속협정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 않다.

한-미 FTA의 특이사항도 찾아볼 수 있다. 참조문서로부터 FTA 조문에 이르기까지 상호접속협정의 공개문제는 상호접속협정 자체가 갖는 사적당사자간 정보 공개의 민감성 때문에 상호접속협정 자체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한-미 FTA는 선택적 공개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상호접속협정 자체를 요구한다. 이에서 더 나아가 지배적사업자가 상호접속 표준협정서를 이미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협정 공개에 더하여 상호접속표준협정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추가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⁴⁷⁾

4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제3장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현안 분석

전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본통신협정 및 FTA 양허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지배적 사업자 또는 협정에서 언급되는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의무가 발생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문건 공개의 직접적인 주체가 주요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외적·통상법적 이행의무 부담 주체는 정부라는 사실이다. 즉 정부가 주요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위한 규제자(regulator) 또는 보증인(ensurer)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주요 FTA가 발효 또는 타결됨에 따라 시장개방의 확대 및 본격적인 외국사업자의 진입에 직면한 상황에서 본다면, 통신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상호접속과 관련한 내·외국사업자 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공개 방향을 신중히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문제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 단순·일반화된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조문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해석 지침이 미흡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 정책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제규범 준수에 무게를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단순·일반화된 조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의 부족으로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본 장에서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기 체결된 다자협정과 FTA 관련조문에 대한 해석과 국내 관련제도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공개 이행의 주체 및 방식, 공개의 수준 및 내용 등과 함께 특히 동 공개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 통신사업자 및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획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협정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의 선택적 공개와 관련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도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도 찾아본다.

제1절 국제협정 양허내용 및 국내 법제화 쟁점

1. 국제협정별 주요내용⁴⁸⁾

기본통신협정 참조문서 단락 2.4는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⁴⁹⁾을 규정하면서 “(각 회원국은) 주요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IA : Interconnection Agreements)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IO :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⁵⁰⁾고 언급한다.⁵¹⁾ 현재 발효 중인 한·싱 FTA, 한·EFTA FTA, 한·인도 CEPA 등 주요 FTA에서도 동일 문구가 채택되어 왔다.

물론 FTA별로는 참조문서 플러스(+)에 해당되는 특이성도 발견된다. 한·EU FTA의 통신규제 Section 제7.31.5조는 “(각 당사국은) 주요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IA)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IO)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추가적으로 각주를 통해 “각 당사국은 자신의 관련법에 따라 동 의무를 이행한다.”⁵²⁾고 언급함으로써 국내법에 대한 일정 정도의 유연성을 부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이상,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 국내법에 일정 부분 위임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의 부담을 일부 덜어준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조건부 공개, 상호접속협정 제출 등 새로운 부담을 추가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통신 Chapter 제14.8.6조는 우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주요사업자와 자국 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⁵³⁾고 규정함으로써 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선택적 공개를

48) 이하 각 협정 조문에 대한 국문해석은 외교통상부에 공식 열람 영문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공식 열람 국문해석본이 갖는 문제점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49) 국제협정과 관련하여 ‘투명성(transparency)’은 종종 공개(주의)로 해석되기도 한다.

50)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 It is ensured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51) 이하 필요한 경우 상호접속협정과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각각 간략히 IA 및 RIO로 표기.

52) Major suppliers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their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their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s. (footnote : Each Party will implement this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legislation.)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제14.8.3조를 통해 “주요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보유하는 경우, 주요사업자가 소재한 영역의 당사국은 그러한 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⁵⁴⁾고 적시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에 더하여 가능한 경우에는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도 동시에 공개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상호접속협정 제출의무를 규정한 제14.8.5조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주요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⁵⁵⁾고 밝히고 있다.

<표 3-1> 주요 FTA별 참조문서 플러스(+) 사항

| 협정 | 참조문서 플러스(+) 사항 |
|------------|--|
| 한미 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 및 RIO 모두 공개 지향. • 단, RIO는 이미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 • 주요사업자 상호접속협정의 규제기관 제출의무 |
| 한·EU 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국 규제방식에 대한 (부분적) 자율성 명문화 |
| 한·싱 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 한·EFTA 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 한·인도 CEP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2. 국내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

가. 통상협정 준수를 위한 국내 법제화 요소

53) Each Party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terconnection agreements in effect between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and other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its territory.

54) If a major supplier has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the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major supplier is located shall require such offer to be made publicly available.

55) Each Party shall require a major supplier in its territory to file all interconnection agreements to which it is party with its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body.

우선 상호접속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요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공개 의무화 현황에 대해서는 WTO 기본통신협정 및 기 발효 FTA에 따라 상호접속협정 공개 의무화에 대한 기 법제화를 통해 통상협정 준수 의무 이행의 법적 기반은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을 위한 상호접속협정 내용 공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무적 차원의 과제는 남아 있다.

다음으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동시 공개를 의무화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한미 FTA 취지 및 국내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판단 하되,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를 기조로 하는 한미 FTA를 제외하면 국제협정 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므로 정부 및 통신사업자의 종합적 관점에서 실리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동시에 의무화하는 경우, 앞서와 같이 상호접속표준협정서 내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과제가 남는다.

상호접속협정의 규제기관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도 한미 FTA의 의무사항인 만큼 발효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의무화가 필요하나, 한미 FTA 이외의 국제협정 의무 준수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2010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를 기 법제화한 마당에⁵⁶⁾ 정부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 체결에 대해 순수하게 민간 통신사업자 간 상업적 행위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규제철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한미 FTA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상호접속협정의 규제기관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러한 제출을 단순히 상호접속협정 공개의 절차적 요식행위가 아닌 상호접속협정 내용의 적정성 검증 및 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6)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② [중략]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중략]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중략].

나. 국내 법제화를 위한 주요 쟁점사항

상호접속협정 및 표준협정서 공개와 관련한 국내 법제화 쟁점사항은 크게 공개의무를 적용하게 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정, 공개의무 적용 대상 역무의 범위 확정, 공개를 행하는 주체, 공개 방식 및 공개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3-2>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관련 주요 쟁점

| 쟁점 | | 내용 |
|-------------|-------|--|
| 공개의무 적용 사업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 및 RIO 공개의무를 적용받는 주요사업자가 누구인가? |
| 공개의무 적용 역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 및 RIO 공개의무를 적용받는 주요사업자가 어떤 역무에 대한 IA 및 RIO를 공개해야 하나? |
| 공개 | 공개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 및 RIO를 규제기관이 공개해야 하나, 아니면 해당 주요사업자가 해야 하나? • IA의 규제기관 제출을 의무화할 것인가? |
| | 공개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관보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나, 아니면 요구조건부 열람도 가능한가? • IA 및 RIO를 동시에 공개할 것인가, IA만 공개할 것인가? |
| 공개 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 및 특히 RIO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

제2절 국제협정 조문의 실무적 의미

1. 현안 접근을 위한 참고적 관점

쟁점사항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무를 둘러싼 몇 가지 맥락(context)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참조문서 상의 규제원칙 이행방식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보장의무를 포함한 참조문서는 공정경쟁환경 조성의 과정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둔 일반화된 단일 국제규범이다. 그러한 단일 국제규범 도출은 각 회원국의 시장구조, 규제철학 및 역사 등 각 회원국별 특수성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협상참여국들의 공감대가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참조문서 규제원칙 준수를 위한 단일 규제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 정부가 취하는 참조문서 규제원칙 이행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인정한다고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⁵⁷⁾ 다시 말해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 국내 규제정책의 자율성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규제정책에 대해 과도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은 추후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므로 경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전통적 맥락(흐름)에 대한 대내외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통신협정 타결 이후 우리나라는 동 협정 의무 준수를 위해 통신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고도화하여 왔으며, 그러한 통신규제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합치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여 왔다. 상호접속관련 WTO, APEC, OECD, ITU 등 국제포럼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규제체도의 국제규범 합치성관련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제도 자체가 결정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포럼 논의가 "호의(good will)"에 기초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국제포럼의 논의 분위기만으로 현행 규제체도가 완결되어 있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규제체계가 갖는 특수성이 국제규범과 실제로 양립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에 따라 발생하게 될 통상마찰에 대해 분쟁해결절차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일정 정도 현행 규제체도의 잠재적 문제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7) Laura B. Sherman, "Wildly Enthusiastic About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 51, 1999, p. 73.

세 번째로, 불필요한 행정적·통상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상협정 의무에 대한 동시 충족을 전제로 하는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보장의무와 관련하여 비록 상당수의 FTA가 기본통신협정 참조문서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유럽연합과 체결·발효 예정인 한미 FTA 및 한·EU FTA가 참조문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 및 양자 통상협정 의무를 동시 충족할 수 있는 규제제도 수립에 대한 긍정적 관점 바람직하다.

이는 FTA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적(reciprocal) 적용에 기초하나, 교역상대국별 차별화된 규제제도의 수립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양허사항이 WTO 다자협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는 한 규제제도를 협정상대국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전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과 같은 시장접근 제한조치는 협정상대국별로 차등을 두기에 용이한 반면, 국내규제제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차별적·정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현실적 차별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향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2. 협정조문의 주요 맥락과 실무적 의미 해석

가. 상호접속 규제원칙 적용대상 서비스의 사전적 범위

상호접속 규제원칙 적용대상 서비스의 사전적(a priori)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허된 기본통신서비스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동 규제원칙은 모든 기본통신서비스⁵⁸⁾에 대해 준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된(양허) 분야에 한해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⁵⁹⁾ 이와 관련, 한미 FTA는

58) 엄밀히 말해, 기본통신서비스 가운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통신망을 보유 또는 임차하여 제공하는 공중통신망 및 공중통신서비스만을 의미하며, 폐쇄이용자그룹(CUG)에 한정된 사설통신서비스는 제외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별정통신서비스가 속함.

59) 참조문서 2.1 This section applies to linking with suppliers providing public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야만 적시하는 네가티브 열거방식(negative 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기본통신협정 및 여타 FTA는 개방대상에 포함하는 분야만 적시하는 포지티브 열거방식(positive listing)에 의한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우에는 DMB, IPTV 등 융합서비스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을 뿐,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및 별정통신서비스를 개방대상으로 간주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또는 인터넷접속서비스(IAS : Internet Access Services)도 기본통신서비스(공중통신망·서비스)로 분류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WTO 기본통신협정 및 여타 FTA와 달리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서비스 분류기준이 부재한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VoIP)를 명시적으로 개방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따라서 여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시장개방관련 우리나라가 보여준 특이성 가운데 하나가 초고속인터넷을 국제협정에 따른 규제원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크게 보아 설비보유에 기초하든 재판매방식에 기초하든 관계없이, 그리고 서비스의 지리적 범위가 시내이든 시외이든 국제이든 관계없이, “음성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유선서비스, 무선서비스(terrestrial+satellite), 인터넷접속서비스(초고속인터넷)⁶⁰”가 국제협정으로부터 의무이행을 요구받는 상호접속 규제원칙 적용의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 상호접속 규제원칙 적용대상 사업자의 사전적 범위

UR 당시 제정된 GATS 통신부속서의 주된 취지 중 하나가 기본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인 반면, 상호접속에 관한 참조문서 규제원칙 및 그에 기초한 FTA 규제원칙의 주된 취지는 기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in order to allow the users of one supplier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another supplier and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supplier,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60)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소매서비스(retail services) 관점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인터넷망 연결(internet connectivity)을 가능하게 하여주는 서비스를, 도매서비스(wholesale services) 관점에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거나(trade) 상호접속해(interconnect)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로 대규모의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를 “Tier 1” 또는 “Backbone” 사업자라 지칭하기도 한다.

본통신사업자 간 통신망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보장이다.⁶¹⁾ 다만, 기본통신사업자 가운데 물리적 또는 경제적 관점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으로 월등한 기존사업자(incumbent)⁶²⁾의 반경쟁적 행위를 우려하여 신규사업자(entrant)의 시장진입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주요 비대칭 규제내용을 담은 것이 참조문서이다.

따라서 기존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가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또는 피보호 당사자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여타 분야의 서비스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접속 규제원칙에서 자유롭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아직 국제적 기본통신서비스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⁶³⁾ 인터넷접속서비스(초고속인터넷)의 경우 WTO, OECD 등 국제포럼에서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인터넷접속사업자의 반경쟁행위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기본통신사업자와의 관계 하에서 문제될 수 있는 반경쟁행위에 대한 논의는 극히 미흡하다.

정리하자면, 상호접속 규제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사업자의 통신망에 대한 상호접속 수요자도 역시 기본통신사업(기간통신서비스+별정통신서비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경우에는 여타 기본통신사업자와의 상업적(사업적)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에 국한하여 불공정경쟁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참조문서 및 FTA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상호접속 의무를 부담하는 주요사업자”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부가통신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된다고 하여 참조문서 및 FTA의 조문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61) 참조문서 2.1 This section applies to linking with suppliers providing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or services in order to allow the users of one supplier to communicate with users of another supplier and to access services provided by another supplier, where specific commitments are undertaken.

62) 참조문서 및 FTA 상의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로 이해하여도 무방함.

63) 동 분류문제에 대한 입장은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대립되어 왔다. 이는 주로 양자 간 규제 철학과 역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는 기본통신서비스로 분류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참조문서 적용에는 반대한다.

다.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무를 포함한 상호접속 제공의무의 직접적 주체는 주요사업자이며, 정부는 상호접속 제공을 위한 공식 보증자라는 점이 각종 국제협정의 요지이다. 여기에서 주요사업자는 “(a) 필수설비의 통제 또는 (b)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중통신서비스 관련시장에의 참여조건(요금 및 공급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공중통신서비스사업자”⁶⁴⁾로 정의된다.

즉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은 통신 트래픽(traffic)을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의 독점소유로부터 비롯되는 기술적 우월성에 기초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산업분야와 유사하게 기존 시장에서 획득해 놓은 기득권 활용에 따른 경제적 우월성에 기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필수설비가 무엇인지의 문제는 상호접속과 관련되는 서비스 유형과 무관하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기득권 활용에 따른 경제적 우월성은 필수설비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기본통신서비스분야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라. 필수설비: 물리적 시장지배력

필수설비는 “(a) 하나 또는 제한된 수의 제공자에 의해 배타적으로 혹은 지배적으로 제공되며, (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 설비를 의미한다.”고 정의된다.⁶⁵⁾ 여기에서 (a)는 참조문서 초안 상의 필수설비 정의로서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부분이며⁶⁶⁾, (b)는

64) Major supplier means “a supplier of a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at has the ability to materially affect the terms of participation (having regard to price and supply) in the relevant market for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s a result of control over essential facilities or use of its position in the market.”

65) Essential facilities means facilities of a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or service that: (a) are exclusively or predominantly provided by a single or limited number of suppliers, and (b) cannot feasibly be economically or technically substituted in order to provide a service.

EU 및 캐나다의 수정제안이 반영된 부분이다.

필수설비의 정의는 당초 미국 및 EU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는 바, 필수설비로 판단되기 위한 두 가지 기준은 (i) 공급자가 그러한 설비소유로 인해 독점(monopolistic) 또는 독점에 준하는(quasi-monopolistic) 지위를 가져야 하며, (ii) 그러한 설비가 적절히 대체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문서 상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필수설비의 내용 및 범위를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나, 실무적·실용적 차원에서는 규제제도에 의해 "언번들링 의무화(mandatory unbundling)"로 지정된 통신설비라고 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여기에서 규제기관의 고민은 언번들링 의무화의 대상이 (i)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자칫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ii) 의무화가 과도하게 포괄적인 경우 기존사업자(incumbent)의 이윤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자에게 이전하거나 신규 분야의 설비투자를 저해함으로써 인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반면, (iii) 의무화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경우에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침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규제기관의 공통적 입장은 언번들링 의무화의 대상 설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관점에서 "고정(유선) 전화사업자의 시내망(local loop)"을 필수설비로 간주한다는 절충안을 따른다.⁶⁷⁾ 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시내 전화사업자(ILECs)로 한정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⁶⁸⁾, 언번들링 대상 설비인 시내망 설비의 세부범위에 대해서 여타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

66) 미국은 독점력의 원천을 공중통신망과의 상호접속에 직결된 애로설비(bottleneck facilities)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 관점에서 주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미국이 기본 통신협상에서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power is particularly relevant with respect to control over bottleneck facilities for interconnection to 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networks." WTO,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Draft Offer on Basic Telecommunications, S/NGBT/W/12/Add.3, July 31, 1995.

67) César Mattos, Unbundling Policy in Telecommunications: A Survey, August 2006, SEAE/MF Documento de Trabalho nº 34.

68) "Accor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all local interconnection agreements of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 ~ must be publicly filed with the states.", APEC TEL,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Final Draft, Drafting Committee, 5 April 2005, p. 30.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⁹⁾

참고로 APEC이 제시한 언변들링의 예시적 범위에는 협의의 물리적 시내망(network access lines such as local loops and related functions) 자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시내 또는 중계 교환기능(local or tandem switching functions), 교환기간 전송(inter-exchange transmission between local and tandem switches), 신호링크 및 신호전송점(STP)에의 접근, 통화관련 데이터베이스(회선정보, 무료통화 및 번호이동DB 등) 접근, 전화국 코드(NNX), 가입자 목록(전화번호부 등), 교환서비스(operator services), 전화번호 지원기능, 운영지원시스템(OSS)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⁷⁰⁾

한편 초고속인터넷망을 필수설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초고속인터넷망 언변들링을 의무화한 유일한 사례는 홍콩으로서 실제로 2000년~2003년간 언변들링 의무화를 시행했으나, 초고속인터넷망 투자 저하라는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2004년부터 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⁷¹⁾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협정 상의 공중망으로 규정한 초고속인터넷망이 애로설비(필수설비)라고 단정할 수 있는 탄탄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마. 경제적 관점의 시장지배력

참조문서는 경제적 관점의 시장지배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 이상의 자의성 및 불합리성이 게재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둔다고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념해야 할 점은 시장점유율이 경제적 시장지배력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69) Willie Grieve and Stanford L. Levin, "Local Telecommunications Competition: What Is It and Will We Get It?", The 15th Annual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recasting Conference, San Francisco, June 25, 1997.

70) APEC TEL,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Final Draft, Drafting Committee, 5 April 2005, pp. 24-25.

71) Crandall, R., "Broadband Communications", Handbook of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Vol. 2, Technology Evolution and the Internet, eds., Majumdar, S., Vogelsan, I. and Cave, M., North Holland, Elsevier, 2005., p. 184.

예컨대, 미국의 경우 AT&T가 장거리전화시장에서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고 결론내린 입장⁷²⁾과도 무관하지 않다. FCC는 당시 시장점유율만이 시장지배력의 척도가 아니라 시장의 공급탄력성, AT&T 고객의 수요탄력성, AT&T의 비용구조, 규모 및 채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⁷³⁾

EU는 2002년 3월 'New Regulatory Framework Directive'를 통해 회원국별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시장지배력(SMP) 보유사업자를 선정하고, 동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등 사전규제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동 새로운 규제지침에서는 SMP 판단에 있어서 경쟁법(competition law) 상의 판단기준을 원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SMP보유사업자는 시장점유율로 추정(시장점유율 40% 이상인 경우 SMP 보유추정, 25% 미만인 경우 SMP 미보유 추정)하되, 시장규모, 필수설비 보유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⁷⁴⁾

바.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기본원칙

참조문서를 포함한 국제협정의 규제원칙은 공히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원활화를 위해 공개(public availability)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을 뿐, 공개의 주체나

72) Motion of AT&T Corp. to be Declared Non-Dominant for Int'l Serv., Order, 11 F.C.C.R. 17,963, 3 Comm. Reg. (P & F) 111 (1996); Motion of AT&T Corp. to be Reclassified as a Non-Dominant Carrier, Order, 11 F.C.C.R. 3271, 1 Comm. Reg. (P & F) 63, 1995.

73) "To assess whether AT&T possessed market power, the FCC applied well accepted principles of antitrust analysis, namely: (1) AT&T's market share (and trends in market share); (2) the supply elasticity of the market; (3) the demand elasticity of AT&T's customers; and (4) AT&T's cost structure, size and resources. ~ Although some argued that a nearly 60 percent market share was sufficient for a finding of market dominance, the FCC disagreed, explaining that market share alone was an inadequate indicator of market power." Mark Jamison, Sanford Berg, and Liangliang Jiang, "Analyzing Telecommunications Market Competition: A Comparison of Cases", Public Utilit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Florida, 4 November 2009, pp. 17-18.

74) EU, Commission guidelines on market analysis and 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under the Community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2002/C 165/0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

방식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는 공개 및 그에 따른 시장경쟁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이상, 공개의 주체나 방식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경험적으로도 이는 국별 선택에 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선택적(optional) 공개에 의하며, 이는 기본통신협상이라는 다자협상의 역사적 배경에서 연유한 일종의 다자간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기본통신협상 과정에서 파악된 미국의 입장은 표준협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체결된 상호접속협정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⁷⁵⁾, 다른 일부 회원국들은 기본적인 상호접속의 조건 및 요율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과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상호접속협정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⁷⁶⁾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상호접속협정과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공개”해도 좋다는 문구 채택에 이른 것이다. 단,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최신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의 관련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⁷⁷⁾

사.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 주체, 방식 및 범위

상호접속협정 공개의 주체는 대체로 정부의 규제기관이나, 영국(BT), 일본(NTT) 사례에서와 같이 통신사업자가 직접 공개주체로 나서는 경우도 존재한다.⁷⁸⁾ 그리고 정부가 공개주체인 경우(예 : 미국, 페루, 홍콩 등)에는 대체로 상호

75) 47 C.F.R. § 43.51 (1996), Cable & Wireless v. FCC, Memorandum Opinion, Order and Certificate, 12 F.C.C.R. 21,692, para. 32, 10 Comm. Reg. (P & F) 1137 (1997).

76) EU Interconnection Directive 제XX조는 기밀영업정보(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에 대한 예외를 규정. 그리고 GATS 제III조의1(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도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될 경우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혹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의 제공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77) APEC TEL,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Final Draft, Drafting Committee, 5 April 2005, p. 30.

78)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ing/ShowReportFrame.aspx#>

접속협정 제출 및 승인 요건을 부과한다.⁷⁹⁾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의 주체는 대체로 통신사업자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터키, 그리스 등과 같이 정부가 공개주체로 나서는 경우도 존재한다.⁸⁰⁾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의 공개방식은 대체로 온라인 웹사이트 공개가 일반적이거나, 반드시 온라인 공개가 요구된다기보다는 여하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시 공개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상호접속협정의 공개범위의 관건은 협정 일체인지 일부인지의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제협정이 의도하는 바는 협정 일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에 대한 예외적 사례도 존재하는 바, 예컨대, 홍콩, 대만의 경우에는 협정 일체가 아닌 협정 일부만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홍콩의 통신법은 공개 이전에 상호접속협정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기관이 상호접속협정의 공개가 공익에 합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고 규정한다.⁸¹⁾

제3절 공개의무의 국제적 이행현황

참조문서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의무는 글자그대로 의무 이행국 차원에서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선택적으로(optionally) 공개함으로써 의무 준수가 충족되는 규율이다. 공개할지 또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의 문제는 크게 국제협정 양허여부, 각국의 규제철학(시장방임 또는 시장개입 등), 규제

79) APEC TEL,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Final Draft, Drafting Committee, 5 April 2005, pp. 30-31.

80) <http://www.itu.int/ITU-D/icteye/Reporting/ShowReportFrame.aspx#>

81) "In accordance with section 36A (5A), parties to an interconnection shall ensure a copy of the agreement is filed with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within 14 days of it being made.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is empowered under section 36A(5C) to publish all or any part of an interconnection agreement if he considers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after considering the representations made by the parties on such publication.", APEC TEL,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munications Reference Paper", Final Draft, Drafting Committee, 5 April 2005, p. 31.

역사, 규제제도 발전수준, 경제발전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개현황을 살펴본다면, 국별로 상이한 다양한 고려사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일정한 정책적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무에 대한 이행현황을 제시한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당초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지역별로 ITU 회원국들의 각종 규제제도 현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바, 그 가운데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여부에 관한 정보도 선별적으로 추출될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ITU 회원국들 가운데 WTO 회원국이 아니거나 회원국이더라도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이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이 여하히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무를 이행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ITU 회원국들의 현황보다는 그 가운데 기본통신협정 가입국들의 현황으로 관심을 줄여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한 조정의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극히 일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기본통신협상 당시에는 협상에 참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가입국의 형태를 갖던 홍콩은 중국으로 편입 됨으로써 ITU 조사 자료도 부재하고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에서도 제외된 상태이다. 대만의 경우에는 독립관세지역(separate customs territory)의 자격으로 기본통신협정에 가입된 상태이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ITU 회원자격이 없어 역시 ITU 조사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다. 그리고 EU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입국이 늘어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결과, 2010년 7월 현재 기본통신협정 양허표를 제출하고 국내 비준을 통해 협정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서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자는 총 90개국에 달한다. 참고로 EU의 경우에는 그 자체를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으로 다루기보다는 EU의 개별회원국 하나 하나를 가입국으로 다루었다. 이 가운데에는 기본통신협상에 직접 참여한 회원국

들도 포함되나, 협상타결 이후 자발적으로 또는 직접 WTO 가입협상을 통해 또는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 불가피하게 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국가들도 적지 않다.

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비록 참조문서가 상호접속 협정/표준협정서 공개 여부에 대해 WTO 기본통신협정 회원국들에게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시에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이다. 2010년 7월 현재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이러한 국가가 35.6%에 달한다. 물론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표준협정서만을 공개하는 국가의 비율이 40%로서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상호접속 협정과 표준협정서를 모두 공개하는 국가 비율과 현격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상호접속 협정만 공개하는 국가들의 수자는 절대적으로 작아 조사대상 가운데 5.6% 정도에 불과하다.

<표 3-3> 기본통신협정 가입국의 상호접속 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

| 구분 | 협정 공개 | 표준협정서 공개 | 동시 공개 | 비공개 | 판단 불가 | 합계 |
|-------------|----------|-------------|----------|------|----------|-----|
| 아프리카 | 1 | 1 | 2 | 3 | | 7 |
| 중동 | | 5 | | | | 5 |
| 아시아· 태평양 | 2 | 5 | 6 | 5 | | 18 |
| CIS | 1 | 1 | 1 | | | 3 |
| 유럽 | | 20 | 13 | | 1 | 34 |
| 미주 | 1 | 4 | 10 | 7 | 1 | 23 |
| 전지역 | 5 | 36 | 32 | 15 | 2 | 90 |
| 비율(%) | 5.6 | 40.0 | 35.6 | 16.7 | 2.2 | 100 |

출처: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2010

이는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인 상호접속협정 공개가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뒷받침한다. 그리고 여하한 이유에서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는 상황이라

면 상업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최대한 배제된 모델협정 또는 샘플협정에 해당하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동시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규제기관 또는 통신사업자의 추가적 부담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기본통신협정 회원국들이 상호접속의 계약체결 내용 공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양자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상호접속협정보다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하는 전 세계 지역별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을 제시하는 바, 유럽지역에서 주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선택공개의 빈번한 점을 제외하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또는 지역에 따른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선택공개의 특별한 규칙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3-4>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아프리카)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ngola(1) | Yes | Yes |
| Benin(2) | ... | ... |
| Botswana | No | Yes |
| Burkina Faso(1) | No | Yes |
| Burundi(2) | No | ... |
| Cameroon(2) | ... | ... |
| Cape Verde(1) | Yes | Yes |
| Central African Rep.(1) | ... | ... |
| Chad(2) | Yes | Yes |
| Congo(2) | ... | ... |
| Congo (Dem. Rep.) | No | Yes |
| Côte d'Ivoire*** | No | ... |
| Equatorial Guinea(1) | No | ... |
| Eritrea(2) | ... | ... |
| Ethiopia | ... | ... |
| Gabon(1) | ... | ... |
| Gambia | Yes | Yes |
| Ghana*** | No | Yes |
| Guinea(1) | Yes | Yes |

| | | |
|-----------------------|-----|-----|
| Guinea-Bissau(2) | ... | ... |
| Kenya*** | No | ... |
| Lesotho | No | No |
| Liberia | ... | ... |
| Madagascar | Yes | ... |
| Malawi | No | Yes |
| Mali(2) | Yes | Yes |
| Mauritius*** | ... | ... |
| Mozambique(2) | Yes | Yes |
| Namibia(1) | No | No |
| Niger(2) | ... | ... |
| Nigeria | Yes | Yes |
| Rwanda(1) | Yes | Yes |
| S. Tomé & Príncipe(1) | Yes | No |
| Senegal*** | Yes | Yes |
| Seychelles | No | No |
| Sierra Leone | No | No |
| South Africa(2)*** | Yes | No |
| Swaziland(2) | No | ... |
| Tanzania(2) | No | No |
| Togo | No | Yes |
| Uganda*** | Yes | Yes |
| Zambia | No | No |
| Zimbabwe | No | No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표 3-5>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중등)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lgeria(2) | No | Yes |
| Bahrain | No | Yes |
| Comoros(1) | ... | No |
| Djibouti(2) | ... | ... |
| Egypt(1)*** | No | Yes |
| Iraq(2) | ... | ... |
| Jordan*** | No | Yes |
| Kuwait(2) | ... | ... |

| | | |
|----------------------|-----|-----|
| Lebanon | Yes | Yes |
| Libya(1) | ... | ... |
| Mauritania | No | Yes |
| Morocco*** | No | Yes |
| Oman(1)*** | No | Yes |
| Qatar | No | No |
| Saudi Arabia(1) | Yes | Yes |
| Somalia(2) | ... | ... |
| Sudan | No | Yes |
| Syria(2) | ... | ... |
| Tunisia*** | No | Yes |
| United Arab Emirates | ... | Yes |
| Yemen(2) | No | ...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표 3-6>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아시아·태평양)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fghanistan(2) | Yes | Yes |
| Australia*** | No | No |
| Bangladesh(2)*** | No | No |
| Bhutan(2) | No | Yes |
| Brunei Darussalam(2)*** | No | Yes |
| Cambodia | No | No |
| China*** | No | Yes |
| D.P.R. Korea(2) | ... | ... |
| Fiji(2) | ... | ... |
| India*** | No | Yes |
| Indonesia(2)*** | No | Yes |
| Iran (I.R.)(2) | Yes | Yes |
| Japan*** | Yes | Yes |
| Kiribati(2) | ... | ... |
| Korea (Rep.)(2)*** | Yes | No |
| Lao P.D.R.(2) | ... | ... |
| Malaysia*** | Yes | Yes |
| Maldives(2) | No | No |
| Marshall Islands(2) | ... | ... |

| | | |
|------------------------|-----|-----|
| Micronesia(2) | ... | ... |
| Mongolia(1)*** | Yes | Yes |
| Myanmar | ... | ... |
| Nauru(2) | ... | ... |
| Nepal | ... | Yes |
| New Zealand*** | No | No |
| Pakistan*** | Yes | Yes |
| Papua New Guinea(2)*** | Yes | ... |
| Philippines(2)*** | No | ... |
| Samoa | No | Yes |
| Singapore*** | Yes | Yes |
| Solomon Islands(2) | ... | ... |
| Sri Lanka*** | No | No |
| Thailand*** | Yes | Yes |
| Tonga(1) | No | No |
| Tuvalu(2) | ... | ... |
| Vanuatu(1) | Yes | Yes |
| Viet Nam(2)*** | No | Yes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표 3-7>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CIS)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rmenia(2) | No | Yes |
| Azerbaijan(2) | No | No |
| Belarus(2) | No | No |
| Georgia*** | Yes | Yes |
| Kazakhstan | Yes | No |
| Kyrgyzstan(2)*** | Yes | No |
| Moldova*** | No | Yes |
| Russia(2) | ... | ... |
| Tajikistan(2) | ... | ... |
| Turkmenistan(2) | ... | ... |
| Ukraine | No | Yes |
| Uzbekistan(2) | ... | ...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표 3-8>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유럽 지역)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lbania(2)*** | No | Yes |
| Andorra | No | No |
| Austria*** | No | Yes |
| Belgium*** | No | Yes |
| Bosnia and Herzegovina | Yes | Yes |
| Bulgaria*** | No | Yes |
| Croatia*** | Yes | Yes |
| Cyprus*** | No | Yes |
| Czech Republic*** | No | Yes |
| Denmark(2)*** | Yes | Yes |
| Estonia(1)*** | No | Yes |
| Finland*** | No | Yes |
| France*** | No | Yes |
| Germany*** | Yes | Yes |
| Greece(2)*** | No | Yes |
| Hungary*** | No | Yes |
| Iceland*** | Yes | Yes |
| Ireland*** | No | Yes |
| Israel(2)*** | ... | ... |
| Italy(1)*** | No | Yes |
| Latvia*** | No | Yes |
| Liechtenstein | Yes | Yes |
| Lithuania*** | Yes | Yes |
| Luxembourg*** | No | Yes |
| Malta*** | No | Yes |
| Monaco(2) | No | ... |
| Montenegro(2) | No | Yes |
| Netherlands(2)*** | Yes | Yes |
| Norway*** | Yes | Yes |
| Poland*** | Yes | Yes |
| Portugal*** | No | Yes |
| Romania*** | Yes | Yes |
| San Marino(2) | ... | ... |
| Serbia | Yes | Yes |
| Slovak Republic*** | Yes | Yes |
| Slovenia(1)*** | Yes | Yes |
| Spain*** | No | Yes |

| | | |
|-------------------|-----|-----|
| Sweden(2)*** | No | Yes |
| Switzerland*** | Yes | Yes |
| TFYR Macedonia(2) | No | Yes |
| Turkey*** | No | Yes |
| United Kingdom*** | Yes | Yes |
| Vatican(2) | ... | No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표 3-9> ITU 회원국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현황(미주 지역)

| 국가 | 상호접속협정 | 상호접속표준협정서 |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Antigua & Barbuda*** | No | No |
| Argentina*** | Yes | Yes |
| Bahamas(2) | No | Yes |
| Barbados(2)*** | Yes | Yes |
| Belize(1)*** | No | Yes |
| Bolivia(2)*** | No | ... |
| Brazil*** | Yes | Yes |
| Canada*** | Yes | ... |
| Chile*** | No | No |
| Colombia(1)*** | Yes | Yes |
| Costa Rica | ... | ... |
| Cuba | No | No |
| Dominica*** | Yes | Yes |
| Dominican Rep.*** | Yes | Yes |
| Ecuador*** | Yes | Yes |
| El Salvador*** | ... | Yes |
| Grenada*** | Yes | Yes |
| Guatemala(2)*** | No | ... |
| Guyana(2) | No | No |
| Haiti(1) | No | ... |
| Honduras(2)*** | No | ... |
| Jamaica(1)*** | No | Yes |
| Mexico(1)*** | No | No |
| Nicaragua | Yes | No |
| Panama(1) | No | No |
| Paraguay(2) | No | No |
| Peru*** | Yes | Yes |
| St. Lucia(2) | No | Yes |

| | | |
|-----------------------------------|-----|-----|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Yes | Yes |
| Suriname*** | No | Yes |
| Trinidad & Tobago(1)*** | Yes | Yes |
| United States*** | ... | ... |
| Uruguay | Yes | No |
| Venezuela(1)*** | No | No |

주: (1) 2008년 data, (2) 2008년 이전 data, (3) *** : 기본통신협정 가입국
출처 : ITU Worl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Database

제4절 우리나라의 규제제도 현황 및 고려사항

1. 상호접속 공개의무 적용사업자 및 공개의무 적용 의무

WTO 참조문서상의 주요사업자(major supplier)란 필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경쟁조건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설비란 소수의 공급자가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공중통신망이나 공중통신서비스를 의미한다. 따라서 필수설비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주요사업자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주요사업자가 물리적 시장지배력과 경제적 시장지배력을 동시에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주요사업자로 간주된다.

국내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 3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①필수설비 보유자 및 ②일정 사업규모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⁸²⁾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설

82)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의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의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⁸³⁾를 ‘KT 시내전화’와 ‘SKT 이동전화’로 고시하고 있다. 해당 고시는 SKT 이동전화에 2G 뿐만 아니라 3G로 포함시키고 있다.

<표 3-10>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

| 역 무 명 | 전년도 매출액기준 | 사 업 자 명 |
|-------------------------|-------------|----------|
| 전화역무(시내전화) | 19,600억원 이상 | (주)케이티 |
| 주과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 90,600억원 이상 | SK텔레콤(주)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상호접속)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⁸⁴⁾의 규정에 의거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를 고시⁸⁵⁾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내법 상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주요사업자와 서비스의 범위에는 KT의 시내전화와 SKT의 이동전화(2G, 3G)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공개의무 적용 여부

WTO 협정 및 한미FTA를 제외한 여타의 국제협정에서는 인터넷접속서비스(초고속인터넷)가 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나, 인터

기간통신사업자.

8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1호.

84) 이상의 조문은 현행 규정이며,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조문이 변경됨

85) 동 고시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역무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넷접속서비스도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한미FTA에서는 네가티브 열거방식을 채택하면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개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서비스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미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상호접속협정은 공개의무 서비스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FTA 발효를 전제로 본다면, 인터넷접속망을 필수설비로 간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요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인터넷접속서비스 상호접속협정의 공개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터넷접속망을 필수설비로 간주하는 사례는 홍콩(일시적 지정 후 지정해제)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경제적 시장지배력의 관점에서만 주요사업자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상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상호접속협정의 대상에 인터넷접속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의 작성에 있어서 방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⁸⁶⁾, 이에 따르는 경우에도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인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⁸⁷⁾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협정 및 국내법 현황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서비스)에 관한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86)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87)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시행 2009.12.30, 방통위 고시 제 42호)에서 2008년 8월 발표한 고시에 따라 (주)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및 SK텔레콤(주)의 이동전화(2G)에 대하여 이용약관 인가대상 역무로 지정하던 것을, (주)KT의 시내전화 및 SK텔레콤(주)의 이동전화(2G, 3G(IMT-2000)포함)를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하고, (주)KT의 초고속인터넷은 이용약관 인가대상에서 제외(신고로 전환)함.

우선 국내 인터넷접속시장에서 불공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접속협정 체결이 효과적이다. 국내 인터넷접속시장은 KT, SK브로드밴드 및 LG데이콤의 과점 체제로서, 다른 ISP와의 국내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peering 거부, 접속용량 증설 지연, 접속회선과 중계접속서비스의 끼워팔기와 번들링, 중계접속 제공시 full routing 제한 및 거부,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부족, 공동행위 등의 불공정행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⁸⁸⁾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문제된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⁸⁹⁾ 순수한 국내적 관점에서나 국제협정 의무준수 관점에서 전향적 사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규정으로도 국내 인터넷접속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어서 두 제도 간의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지만, 금지행위는 사후 규제인데 비해서 표준협정서 작성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두 제도간 구별의 실익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협정 의무준수 관점에서는 특히 한·미FTA 및 한·EU FTA 발효 이후 미국 및 EU의 통신사업자 진입에 따라 통상마찰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고속인터넷분야에 대한 면밀한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경제적 관점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는 주요사업자의 지정·비지정 여부에도 유념해야 한다. 주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에 관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관행에 따라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를 고려할 수도 있겠으나, 경쟁상황에 따른 규제정책 및 통상협정 의무의 가변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 상호접속협정보다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관점은 국제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국내 인터넷접속 사업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다. 글로벌 차원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북미 또는 유럽계 인터넷 백본 사업자(IBP; Internet Backbone Provider)와의 상호접속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상호접속은 통상 “중계접속협정” 방식으로서, 비용을 지불

88) KISDI 통신정책연구실,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09. 12., 655~656면.

89) 김희수,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KISDI 이슈리포트, 2003. 8., 26~28면.

하는 측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접속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인터넷접속 시장에서 IBP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⁹⁰⁾ 상호 간 인터넷접속협정 공개를 통해 국내 사업자들이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표 3-11> 2009년도 해외 인터넷망 연동현황 (2009년 7월 기준)⁹¹⁾

| 구분 | 지역 | 외국ISP명 | 대여폭 |
|----------|-------------|--------------------------------------|----------|
| 1 | 미국 | AT&T, NTT Verio, Abovenet, Verizon 등 | 118.39 G |
| 2 | 일본 | KDDI, Japan Telecom, IJ, NTT 등 | 29.31G |
| 3 | 중국 | CT, CNC 등 | 38.99 G |
| 4 | 홍콩 | PCCW, Reach, Flag, PACNET 등 | 19.32 G |
| 5 | 대만 | CHT | 2.28 G |
| 6 | 싱가폴 | SingTel, ANC | 3.96 G |
| 7 | 유럽(영국) | LINX | 1.15 G |
| 8 | 동남아 (기타) | CAT, 텔스트라, Telecom Malaysia | 1.55 G |
| 해외 망 총용량 | | | 214.95G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결론적으로 말해 비록 법적 의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제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국내 ISP 보호 및 국내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인터넷접속표준협정서 내지 인터넷접속협정의 작성·공개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접속표준협정서 또는 인터넷접

90) 예를 들면, 국제 인터넷 백본 시장에서 IBP들이 암묵적인 담합을 통해 독점 가격을 설정하거나, 상호접속의 QoS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접속용량 확대 요구에 대한 의도적인 지연 등이 이에 해당됨.

91) 데이콤, 드림라인, SK네트웍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 KT, 삼성네트웍스, 세종텔레콤 등 주요 인터넷접속사업자 9개 기관과 글로벌 국내사업자 대상으로 조사.

속협정 체결에 있어서 기준 또는 모범이 되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신규제 당국에서 작성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공개의 주체, 방식 및 수준

약관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이 명확하게 정한 바 없으므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기초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신고 및 승인이 수반되는 상호접속협정의 경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무난하다. 다만, 영업비밀 해당사항은 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추가적으로 해당사항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영업비밀 해당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공개 주체가 되는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의 경우, 국제적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의무의 보증인 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안내 또는 링크를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사업자간 협정 체결 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제안할 수도 있으므로 규제기관이 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상호접속 표준협정가이드라인(지침) 또는 샘플(모델)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만 하다.⁹²⁾

그러나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각 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사업자들은 규제기관의 상호접속 표준협정서지침을 참고로 하여 실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계약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정서를 제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것은 규제기관이 아닌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92)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표준약관들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함.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 주요 쟁점별 규제정책 고려사항

첫째, 공개의무 적용 사업자 및 역무와 관련하여 국제협정상 주요사업자의 정의와 국내 규제현황을 고려할 때, KT 시내전화(망)과 SKT 이동전화(망)이 상호 접속 의무제공 및 상호접속협정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국제적으로 아직 필수설비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는 관점과 국내법상 상호접속 의무 대상 역무나 이용약관 인가 대상 역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물리적, 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주요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의 공개의무를 적용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국제협정 준수라 할 수 있다. 다만, 한·미 FTA, 한·EU FTA에 따른 잠재적 문제화 가능성, 국제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 국내 IBP와 ISP 간 불공정 행위 예방차원에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공개의무 이행 주체 및 방식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으나, 외국의 경우 사업자가 공개하는 경우와 규제기관이 공개하는 경우가 공존한다. 공개방식은 국제협정의 취지상 적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대체로 온라인 웹사이트 공개가 일반적이거나, 이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 없이 필요한 내용이 적시 공개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방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호접속협정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해 관련내용의 적정성이 검증된다고 전제할 때, 관련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무난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도 관련사업자가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하되, 방송통신위원회가 표준약관에 상응하는 샘플(모델)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인 상호접속표준협정서지침을 웹사이트에 동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그리고 동일 해당역무에 대해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할 국제법적 필요성이 부재한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는 시내·이동전화에 대해 상호접속협정 인가 규제가 유지되어온 사실에 기초하여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호접속협정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미 FTA 발효 시 이를 동시에 공개해야 함에 유념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는 경쟁상황에 따른 규제정책 및 통상협정 의무의 가변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상호접속협정보다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12> 주요 쟁점별 규제 고려사항

| 주요 쟁점 | | 규제 고려사항 |
|-----------------|----------|--|
| 공개 의무 적용 사업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KT) : 필수설비 적용, 물리적·경제적 시장지배력 - 이동전화(SKT) : 필수설비 적용, 물리적·경제적 시장지배력 - 초고속인터넷 : 필수설비 적용 배제, 시장지배력 부재 |
| 공개 의무 적용 역부 | | |
| 공개 | 공개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 : 표준협정서가이드라인 공개, 상호접속협정 제출 의무화 - 사업자 :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 |
| | 공개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RIO 모두 온라인 웹사이트 공개 바람직하나, IA의 경우 적시 공개를 전제로 요구조건부 공개도 가능 -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는 상호접속협정,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
| 공개 내용 및 수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공개 시, 영업비밀 해당 부분 잠정 제외 고려 - 이해관계자의 해당정보 공개 추가요청 시, 사업자 의견수렴 및 공익성심사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 공개여부 결정 |

공개의 내용 및 수준과 관련해서는 상호접속표준협정의 경우 온라인상에 확실히 적으로 모든 협정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극히 민감한 영업비밀 해당사항은 잠정 제외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해당사자로부터 영업비밀 해당사항을 포함한 관련정보의 추가공개 요청 시에는 사업자의 의견수렴과 합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영업비밀 해당사항에 관한 정보공개를 가급적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정보비공개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제4장 인터넷 상호접속표준협정서 해외사례

제3장의 분석결과는 국제협정상의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의 대상이 기간통신사업자·역무 가운데 KT의 시내전화(망)과 SKT의 이동전화(망)임을 보여주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이 필수설비에 해당된다는 합의도 없거니와 국내법상으로 현재 물리적·경제적 시장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주요사업자 요건에 해당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부재하다는 근거 하에서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 최근까지도 주요사업자가 존재했던 사실과 더불어 국제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 국내 IBP와 ISP 간 불공정행위 예방 차원에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초고속인터넷분야에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의무가 시행을 전제로, 그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의 지침이랄 수 있는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 파악을 위해 외국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상호접속에 대한 정책현황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표준협정서 사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제1절 우리나라

현재 인터넷 접속 표준협정서와 관련하여 정부 등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표준협정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시장에서는 제도화 이후 2005년도에 KT가 제시한 협정서에 기반을 두고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 협정서의 조문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총칙,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정보제공 항목·절차·방법, 접속료 산정 및 관련비용, 접속료 정산방식, 이의 제기 및 조정, 신의성실·유지보수 등 관련사업자 간 상호접속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업무의 한계, 협정의 시행·효력·개정 등에 관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KT의 인터넷 접속 표준협정서

| | | | |
|-----------------------|--|---|---|
| 제1장 | 총칙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목적 적용범위 정의 기본원칙 통신망의 범위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 정보유용 금지 |
| 제2장 | 접속망 구성 및 운영 |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접속제공교환 접속제공교환기의 설치, 개조 등 접속방식 및 용량 접속 또는 변경절차 접속 관련설비의 개조 등 신청 접속호의 처리 접속경로의 설정 인터넷 접속조건 운영 인터넷 접속조건 재평가 접속망의 비상대책 기술기준 통신품질조사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
| 제3장 제1절 제2절 | 전기통신 설비의 정보제공 정보제공의 항목 정보제공의 절차 및 방법 |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인터넷 관련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 정보제공 요청 정보제공 시기 정보의 제공방법 정보제공 제한 제공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
| 제4장 | 접속료의 산정 |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접속료 산정 등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부대서비스비용 |
| 제5장 제1절 | 접속료 등 정산 통칙 |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적용범위 비용의 분류 정산주기 접속회선비용의 정산 접속통신료의 정산 정산부서 접속료 산정 및 정산협의회 구성 |

| | | | |
|-----|-------------|--|---|
| | | 제39조 | 수시비용의 청구 및 지불 |
| 제2절 | 청구 및 지불 | 제40조 제41조 제42조 | 정기비용의 청구 및 지불 청구 및 지불방법 연체이자의 지불 |
| 제3절 | 연체이자 | 제43조 제44조 | 연체이자의 계산 연체이자율 |
| 제4절 | 이의제기 및 조정 |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제한 이의제기시 조정 정산자료 보관 |
| 제6장 | 책임 및 업무의 한계 |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 신의성실의 의무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손해배상 접속제한 등 불가항력 시설내 출입 유권해석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부칙 |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시행일 협정의 유효기간 계위구분 협정의 개정 협정서 보관 경과조치 |

제2절 일본 사례

일본에서는 아직 인터넷접속서비스(초고속인터넷)에 대하여 최대한 사전규제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상호접속도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협의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서비스 분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접속서비스의 기본성격이 전통적인 기본통신서비스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 여하튼 일본의 규제당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후규제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규칙에 따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1. JPIX

일본의 대표적인 ISP와 인터넷 관련기업 16개사의 출자로 1997년 7월 10일에 설립된 JPIX는 ISP와 콘텐츠 제공자간의 상호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IX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4개월 후인 1997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후 회원사 상호간 peering 협상과 사업자간 계약에 의해 1998년 1월 초부터 회원사간 트래픽 교환이 시작되었고, 1998년 4월에는 SINET와의 접속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적계약에 해당되는 해당사업자간 계약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파악할 수 없었다.

2. NTT East/West

NTT East/West(이하, "NTT 동서"로 지칭)도 초고속인터넷에 해당되는 IP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통용되는 동 서서비스의 명칭은 "프레즈히카리(FLET'S 光)"라고 한다. 프레즈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자격요건은 신청자가 제1종 또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하며, 최종이용자에게 글로벌 IP 어드레스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IP 통신망 경우 접속의 경우에는 RADIUS에 의한 이용자 인증이 가능하여야 한다.⁹³⁾

NTT 동서의 IP 통신망과 상호접속 할 때 필요한 계약(상호접속협정)의 내용에는 상호접속 형태, 상호접속점 위치, 비밀보호 의무와 같은 상호접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체결된 계약내용은 충무성에 신고해야 한다.

상호접속 비용항목에는 중계국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기능제공 등 상호접속관련 사용요금, NTT 빌딩 내에 설치하는 DSU(ONU)에 관한 비용(설비병설 비용), 전용회선 이용료, 광신호국 전송로 이용요금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현간 IP통신의 경우에는 구간회선 설치수수료, 용량에 따른 구간전송기능 요금, 구간회선 관리비, IP 어드레스 등 데이터설정 공사비가 추가된다.

93) 통신서비스 형식이 아닌 타 사업자의 사내 네트워크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상호접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표 4-2> 일본 초고속인터넷(프레즈히카리)의 상호접속 비용항목

| 비용항목 | 내용 | 현재 IP통신 | 현간 IP통신 |
|----------------------|---|---------|---------|
| IP 통신망 현간 구간회선설치 수수료 | IP 통신망 현간 구간전송기능을 이용 시, 절차에 관련된 요금 | - | 0 |
| IP 통신망 현간 구간전송기능 | 구간(인터페이스 속도: 중규모 용량 및 대규모 용량)에 따른 요금 | - | 0 |
| IP 통신망 현간 구간회선관리기능 | IP 통신망 현간 구간전송기능의 관리 등에 관련된 요금 | - | 0 |
| IP 통신망 데이터설정공사비 | 중계국 라우터에 대한 IP 어드레스 등 설정에 관련된 요금 | 0 | 0 |
| 망 개조료 | 상호접속에 관련된 사용요금(중계국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패키지 및 집약용 접속장치 등에 관련된 비용) | 0 | 0 |
| 설비병설 비용 | 타사업자 라우터 등을 설치할 경우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설비사용료, 보수비 등 | 0 | 0 |
| 접속회선비용 | 전용회선 이용할 경우 품목에 따른 요금 | 0 | 0 |
| 광신호 국내전송로 관련 비용 | 중계국 라우터와 타사업자 설비와의 접속으로 광신호국 내 전송로(국내 광케이블)를 이용할 경우에 관련된 비용 | 0 | 0 |

제3절 유럽 사례

1. 영국

영국 BT는 영국 BT와 CP(Communications Provider) 사이에 체결된 광대역인 터넷(초고속인터넷) 접속을 위한 표준협정서를 공표하고 있는 바, 주요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다.⁹⁴⁾

표준협정서(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BT의 PLC 마스터 서비스 협정서)

1. 해석
2. 시작(*Commencement*)
3. 서비스의 제공
4. 종료
5. 요금
6. BT 장비
7. 서비스를 위한 장비에 연결
8. 접속 및 접속 사이트 규제
9. 서비스의 사용
10. MSA(마스터 서비스 계약서, *Master Service Agreement*) 수정
11. 분쟁
12. 부채(*LIABILITIES*)
13. 배상
14. 데이터 보호
15. 기밀성(*Confidentiality*)
16. IP 권한
17. 불가항력(*Force Majeure*)

94)

http://www.btwholesale.com/pages/static/Pricing_and_Contracts/Reference_Offers/Wholesale_Broadband_Connect.html

18.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출시
19. 검토
20. 결정
21. 3자(Third Parties)
22. 갱신(Novations)
23. 합의(Entire Agreement)
24. 고지
25. 계약 분리(Severability)
26. 독립계약자 및 대행기관(Independent Contractors ad Agency)
27. 포기 및 구제(Waiver and Remedies)
28. 법률 및 관할권(Law and Jurisdiction)

부속서 1: 정의

부속서 2: 주문 및 서비스 제공

부속서 3: 운영 및 유지보수

부속서 4: 청구 및 지불

1. 정의
2. 요금
3. Invoices
4. 지불
5. 분쟁

부속서 5: BT(British Telecommunications)의 세부정보

1. Company details;
2. Address for notice pursuant to clause 24 of the MS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3. Address for legal notice pursuant to clause 24.3 of the MSA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부속서 6: CP(Communications Provider)의 세부정보

1. Company details;

2. Address for notice pursuant to clause 24 of the MS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3. Address for legal notice pursuant to clause 24.3 of the MSA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2. 스페인⁹⁵⁾

스페인 규제기관인 CMT(Comisión del Mercado de las Telecomunicaciones)는 2009년 1월 23일 광대역인터넷 접속을 위한 NGN에 대해 규제조치를 승인하였다. 동 규제조치는 EU에서는 최초의 사례로서, 기간통신사업자인 Telefonica가 제공하는 30Mbps까지의 광대역 도매접속서비스가 해당된다.⁹⁶⁾

CMT는 Telefonica의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승인한 바 있으며, Telefonica는 이미 지난 2009년 2월에 광대역접속의 도매제공에 대하여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고 있다.

3. 포르투갈⁹⁷⁾

포르투갈의 경우 2010년 2월 포르투갈 규제기관인 ICP(Instituto das Comunicações de Portugal)의 결정에 따라, 신규 인터넷 상호접속표준협정서(New Reference Internet Access Offer)가 게시될 예정이다.

동 ICP의 결정은 특히 포르투갈텔레콤(ANACOM)과 ISP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양자 간 원만하게 합의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ICP가 합의 도출을 위해 개입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95) http://www.telegeography.com/cu/article.php?article_id=31155

96)

http://www.cmt.es/en/documentacion_de_referencia/mercados_comunicaciones_electronicas/ane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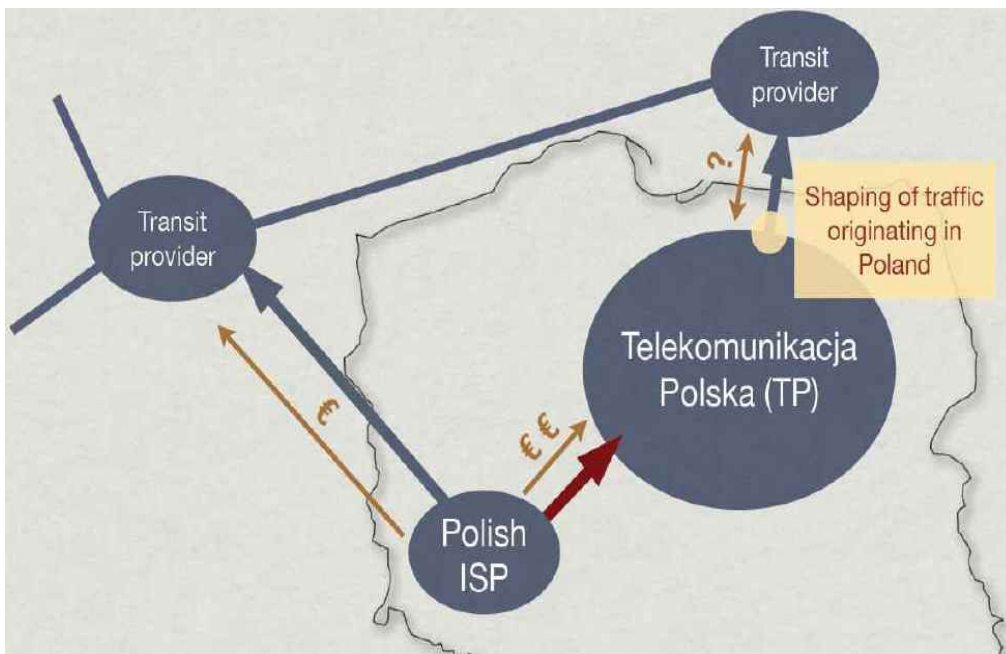
090123_NP_Mercados_4y5_y_tabla_def_en.pdf

97) <http://www.anacom.pt/render.jsp?contentId=13420>

4. 폴란드

폴란드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대다수가 기존사업자인 Telekomunikacja Polska(이하, 'TP'라고 지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어 ISP가 TP의 네트워크에 가입된 최종이용자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TP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터넷 상호접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터넷 상호접속 방식과 관련하여 TP는 교환되는 트래픽 양에 관계없이 중계접속(transit)만을 허용한 채 자사나 자사가 지정한 특정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접속을 거부하거나 품질을 저하시켜왔다. 게다가 데이터 트래픽의 교환을 위해 TP와 직접적으로 상호접속을 하더라도 해외ISP에 비해 폴란드 ISP들은 훨씬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림 4-1> Telekomunikacja Polska와 ISP간의 인터넷 접속



따라서 폴란드 통신규제기관인 UKE(UKE(Urząd Komunikacji Elektronicznej))

는 TP 가입자에 대한 단대단 연결성(end-to-end connectivity)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먼저 TP가 자사 가입자와 다른 사업자간의 데이터 트래픽 전송에 있어서 품질이나 다른 파라미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차별(non-discrimination) 의무와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트래픽의 라우팅에 사용되는 장비의 환경설정에 관한 기술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의무 부과를 계획하였다.

2006년 4월 28일 이와 같은 계획을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European Commission)'라 지칭)에 통보하였지만, EC는 투명성 의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측면에서 트래픽 정보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업기밀에 해당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할 경우 비차별 의무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EC는 투명성 의무를 재검토하여 비차별 의무의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TP가 라우터의 환경설정과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 10일 UKE는 TP에 대해서 중계접속과 관련하여 투명성 의무를 배제한 채 비차별 의무를 부과하였다.

2007년 6월 29일 UKE는 ISP간에는 동등요금 접속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TP의 경우 동등요금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주고받는 데이터 트래픽의 양에 관계 없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중계접속만을 제공하고 있어 동등요금 접속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계획을 EC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해외사업자를 통한 트래픽 전송가능성으로 인한 경쟁압력과 더불어 이전에 부과된 의무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식별된 경쟁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제안된 규제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2008년 1월 2일에는 ISP가 대가정산 없이 동등 접속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가 EC에 통보되었으나, 2007년과 동일한 근거로 EC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2009년 11월 27일 UKE는 대다수 국가에서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요인을 강조하며, 인터넷 상호접속서비스와 관련하여 동료접속과 중계접속을 별도의 시장으로 확정하고 각각의 시장에서 TP가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조

치로서 접속, 비차별, 투명성, 회계분리, 원가회계 및 대가규제, 표준협정서의 준비 및 제출 의무의 부과계획을 EC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동료접속과 중계접속이 별도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TP가 지배적사업자인지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인터넷 상호접속 시장이 사전규제가 부과될만한 시장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결국에는 2010년 3월 3일 규제조치 계획을 철회하도록 결정하였다.

5. 헝가리⁹⁸⁾

헝가리의 Magyar Telekom은 2003년 전기통신법 173조 C항에 입각하여 인터넷접속을 위한 표준협정서(Reference Offer for Local Bit Stream Access)를 공개하고 있다. 동 협정서는 Magyar Telekom과 ISP간의 합의된 것으로서 규제기관인 NCAD(N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s Board)의 승인을 요한다.

6. 아일랜드⁹⁹⁾

Ericom은 아일랜드 광대역 도매시장에서 SMP(Significant Market Power)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Ericom은 다양한 규제 하에 놓여있다.¹⁰⁰⁾ 아일랜드 Eircom이 제시한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의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다.

<Eircom Ltd와 ISP간의 표준협정서>

1. 정의
2. 서비스의 제공조건(Conditions)
3. 장비

98)

http://www.telekom.hu/services/wholesale/national_fixed_line_solutions/broadband/local_loop_unbundling

99) www.eircomwholesale.ie/Reference-Offers/Documents/BARO-Min-term/

100) 2010.3. http://www.odtr.ie/_fileupload/publications/ComReg1025.pdf

4. 청구금액, 결제 및 지불
5. 개시 및 기간(*Commencement and Duration*)
6. 종료
7. 책임과 제한
8. 재검토(*Review*)
9. 분쟁해결
10. 분리(*Severability*)
11. 주의 사항(*Notice*)
12. 완전한 계약(*Entire Agreement*)
13. 면제(*Waiver*)
14. 기밀유지(*Confidentiality*)
15. 지적재산권
16. *Force Majeure*
17. 양도(*Assignment*)
18. 관계당사자(*Relationship of Parties*)
19. 신용평가 및 신용위험 관리
20. 변화(*Variation*)
21. 준거법(*Governing Law*)

7. 마케도니아¹⁰¹⁾

마케도니아의 Makedonski Telekom은 규제기관인 AEC(Agen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가 승인한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를 2009년 7월 7일 공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계약 조건>

1. 입찰 제목

101) http://www.telekom.mk/domestic_en/?z=1216

2.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모델
 3. 요청에 의한 도매 인터넷
 4. 도매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5. 부가 서비스
 6. 수수료, 청구 및 지불
 7. 은행보증
 8. 인보이스
 9. 연락처 정보
 10. 품질서비스
 11. 장애서비스
 12. 기술적 매개변수 변경 사항
 13. 접속 및 인터넷에 대한 합의
 14. 접속 및 인터넷에 대한 일반 계약 해지
 15. 인터넷에 관한 일반 협정의 개정
 16. 일반 계약의 변경에 대한 보상
 17. 처벌조항
- 부속서 1: 정의
- 부속서 2-1: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2단계
- 부속서 2-2: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3단계
- 부속서 2-3: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4단계
- 부속서 3: 요청/제출
- 부속서 4: 도매 인터넷(ADSL) 서비스 사용신청
- 부속서 5: 인터넷 접속할 링크에 대한 요구사항
- 부속서 6: 연락처
- 부속서 7: 인터넷 transfer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부속서 8: 애플리케이션과 장애의 제거 / 신고
- 부속서 9: 도매 인터넷(ADSL) 서비스 팩

제4절 중동 사례

1. 사우디¹⁰²⁾

사우디텔레콤(STC: SAUDI TELECOM COMPANY)은 규제기관인 CITC (Communications & Information Technology Commission) 결정에 따라 상호접속 표준협정서(RODA: Reference Offer for Data Access)를 제공하고 있다. 동 결정은 사우디 관련법 규정¹⁰³⁾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준협정서는 사우디텔레콤이 여타 사업자의 데이터전송 접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표준협정서이다. 동 표준협정서의 주요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프레임 워크
2. 정의 및 해석
3. 데이터 접속 서비스
4. 데이터 접속 서비스 *Charging*
5. 기술적인 측면
6. 운영측면
7. 서비스 품질 측정
8. 새로운 서비스
9. 데이터 접속 서비스 관리
10. 결제 및 지불
11. 은행 보증
12. 직원의 안정과 네트워크 보호
13. 기밀유지 및 공시
14. 분쟁 해결
15. 위반, 중지 및 종료

102) www.stc.com.sa/cws/content/ar//stc/files/Reference-Offer.../arodapd.pdf

103) Article 38 of the Bylaw and Decision No. 1/1423 of CITC.

- 16. 지적 재산권
- 17. 검토
- 18. Force Majeure
- 19. 책임의 제한
- 20. 권리와 의무
- 21. 공지
- 22. Waiver
- 23. Severability
- 24. 개정
- 25. 준거법(Governing Law)
- 부속서 A. 정의 및 용어
- 부속서 B. 결제 프로세스 및 절차
- 부속서 C. 기술정보
- 부속서 D. 데이터 접속 서비스 관리
- 부속서 E. 예측
- 부속서 F. 가격표
- 부속서 G. 서비스 스케줄
- 부속서 H.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부속서 I. 서비스 품질 측정

2. 오만

주요사업자인 Omantel의 접속서비스는 오만통신규제법(Royal Decree No 30/2002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ct of the Sultanate of Oman)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접속서비스의 이용은 오만통신규제법에 따라 Class 1과 Class2의 라이선스를 소유한 사업자만 가능하다.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모든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Omantel의 광대역 상호접속표준협정서(2010.07.07)¹⁰⁴의 주요 구성항목에는

일반사항, 접속서비스 정의, 접속 설명, 연결구성요소, 라우팅 구성요소, 서비스상품 구성요소, 청구 구성요소 등이 포함된다.

3. 바레인

바레인은 통신법 시행령 48조에 입각하여 BATELCO와 사업자간(Providers of Publicly Available Communication Networks) 적용되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BATELCO는 바레인 통신법에 따라 동 표준협정서를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다. 그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2. 정의

3. 서비스 약관

4. 최종 사용자 액세스

Useable Pairs

설치 또는 최종 사용자 접속 Transfer

ADSL 네트워크 사용

5. 서비스 자격(Qualification)

6. 장비

장비와 관련하여 <http://www.alcateldsl.com/pdf/datasheet330.pdf> 참조

7. 연결

8. 예보(Forecasting)

9. DSL 양도(Transfer)

DSL 전송 프로세스(DSL Transfer Process)

요금(charges)

책임

104)

http://www.omantel.net.om/wpresources/files/RIO/Annex%20C10_Access%20Services.pdf

약속(Undertakings)

보장(Indemnity)

10. 결제기간

11. 유지보수

부속서 1. DSL 전송 프로세스

1. 새로운 또는 기존 서비스를 위한 DSL 전송 요청
2. DSL 변경 요청
3. 배치(Batches)
4. 요청의 완성(Completion of Request)
5. 요청 완료 고지(Notification of Completion of Request)
6. DSL 전송 Reversal

부속서 2. DSL 전송 목록

| Access Speed for Business Customers | Included Usage (Upload and download) | Increment for usage above threshold |
|---------------------------------------|--------------------------------------|-------------------------------------|
| 265kbps downstream / 64kbps upstream | 2.5 GB | 1 MB |
| 265kbps downstream / 64kbps upstream | 5 GB | 1 MB |
| 512kbps downstream / 128kbps upstream | 10 GB | 1 MB |
| 1 Mbps downstream / 256kbps upstream | 15 GB | 1 MB |
| 2Mbps downstream / 512kbps upstream | 20 GB | 1 MB |
| 265kbps downstream / 64kbps upstream | N/A | N/A |
| 512kbps downstream / 128kbps upstream | N/A | N/A |
| 1 Mbps downstream / 256kbps upstream | N/A | N/A |
| 2Mbps downstream / 512kbps upstream | N/A | N/A |

- Includes 5 email accounts with 20MB storage for each account.
- Includes Single port Ethernet ADSL modem

| Access Speed for Residential Customers | Included Usage (Upload and download) | Increment for usage above threshold |
|--|--------------------------------------|-------------------------------------|
| 265kbps downstream / 64kbps upstream | 5 GB | 1 MB |
| 512kbps downstream / 128kbps upstream | 8 GB | 1 MB |
| 1 Mbps downstream / 256kbps upstream | 15 GB | 1 MB |
| 2Mbps downstream / 512kbps upstream | 20 GB | 1 MB |

- Does not include an ADSL modem.
- Includes one email account with 10Mb storage limit.
- Recommended modems and suppliers are:
 1. INMA: GreatSpeed USB
 2. A. Rashid Est: Aztech USB
 3. Intercol: SpeedTouch USB

부속서 3. 요금

| Item | Chargeable Activity | Effective Date | Charge (BD) | Charge Basis |
|-------|--|----------------|-----------------------------|--|
| DSL.1 | Fee to establish Wholesale DSL Service relationship | 1 July 2008 | 5,216 | Once off |
| DSL.2 | Agreement Processing Fee | 1 July 2008 | 1,903 | Once off |
| DSL.3 | Fee for processing DSL Transfer Request and completion | 12 July 2006 | 8 | Per event (additional charge if installation required) |
| DSL.4 | Charges for rejects, reversals, and withdrawals associated with DSL Transfer, Invalid Transfer | 12 July 2006 | 5 | Per event |
| DSL.5 | Fee for a change of speed associated with DSL Transfer if applicable | 12 July 2006 | 5 | Per event |
| DSL.6 | External Removal or Change Number | 12 July 2006 | Equivalent to retail charge | Per event |

| Item | Chargeable Activity | Effective Date | Charge (BD) | Charge Basis |
|--------|--|------------------|---|---|
| | | 16 December 2009 | 23.840 1Mbps: (15 GB) 28.800 2Mbps: (20 GB) 34.480 4Mbps: (130 GB) 130.660 6Mbps: (160 GB) 158.980 8Mbps: (200 GB) 195.780 10Mbps: (250 GB) 241.060 16Mbps: (350 GB) 334.46 | |
| DSL 7 | Monthly End User port charges | 24 May 2009 | Business: (Flat rate) 256kbps: 14.230 512kbps: 29.270 1Mbps: 41.100 2Mbps: 74.770 | Per port/per month |
| DSL 8 | Usage tariffs | 24 May 2009 | 0.848 | Per Increment above threshold |
| DSL 9 | Fee for a call out for a technician at Access Seeker request | 12 July 2006 | Time and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Schedule 3 Annex 1 | Per event |
| DSL 10 | Fee for suspension of ADSL Service at Access Seeker request | 12 July 2006 | 5 | Per act of suspension and per act of reactivation |

*Unlimited at 1 Mbps/s if threshold exceeded under Fair Usage Policy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 | | | | |
|-------|-------------------------------|------------------|--|--------------------|
| DSL.7 | Monthly End User port charges | 24 May 2009 | Residential: (Threshold) 256kbps: (2 GB) 7 512kbps: (8 GB) 14.084 | Per port/per month |
| | | 7 June 2010 | 640kbps (2 GB) 7.280 | |
| | | 24 May 2009 | 640kbps (5 GB) 11.634 | |
| | | 7 June 2010 | 1Mbps: (5 GB) 11.910 | |
| | | 24 May 2009 | 1Mbps: (15 GB) 20.405 | |
| | | | 2Mbps: (20 GB) 25.410 | |
| | | | 4Mbps: (25 GB) 31.180 | |
| | | 16 December 2009 | 8Mbps (40 GB) 46.960 | |
| | | | 10Mbps (50 GB) 56.971 | |
| | | | 16Mbps (80 GB) 86.97 | |
| DSL 7 | Monthly End User port charges | 1 October 2009 | Business: (Threshold)* 256kbps:(2.5 GB) 9.230 256kbps:(5 GB) 19.240 512kbps: (10 GB) | Per port/per month |

제5절 기타 통신사업자 사례

1. Cable & Wireless

<표 4-3> Cable & Wireless의 인터넷 접속조건

| | 구분 | 내용 |
|-----|-------|---|
| C&W | 일반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상호 무정산: port, 서비스, 기타 비용 o 24시간 peering 담당자 대기 및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

| | | |
|--|-----------------|---|
| | 기반 필요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망 보유 ○ OC-48(2.5G) 전용회선 운용 ○ 전국 9개 이상 지역에 노드 운영 ○ 각 Hub는 다 IBP 2개 이상의 Hub와 연결 ○ 최소 DS-3급으로 4개 이상의 NAP과 연결 |
| | 트래픽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ering 최소 속도 단위는 155M ○ peering 최소 트래픽 량은 45M ○ 트래픽 교환비율은 2:1을 초과할 수 없음 ○ 트래픽 측정은 peering이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하되 In/ Out 중 높은 것으로 결정함 |
| | 루팅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트와 정책을 IRR(Internet Routing Registry)에 등록 ○ BGP4, CIDR을 적용하되 default route는 설정하지 않음 ○ 상호 AS 번호 외에는 수용할 수 없으며, 제3 가입자의 라우트는 공지하지 않음 |

주: C&W는 Cable & Wireless임

2. Level

<표 4-4> Level의 인터넷 접속조건

| | 구분 | 내용 |
|-------|-----------------|---|
| Level | 일반 원칙 | ○ 24시간 peering 담당자 대기 및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
| | 기반 필요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팅/혼잡 문제에 대비하여 강화경로(escalation path) 제공 ○ 최소 OC-48(2.5G) 규모의 백본 유지 ○ 최소 20개의 국제 망과 접속되어 있어야 함 ○ Level 3와는 최소 OC-12(622M)의 용량으로 상호접속 |
| | 트래픽 요구 사항 | ○ 총 트래픽 교환 비율은 2:1을 초과할 수 없음 |
| | 루팅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우트, 라우팅 도메인 및 라우팅 정책을 IRR(Internet Routing Registry)에 등록 ○ 자신의 직접 고객 라우트만 공지(제3의 라우트 전송이 금지되며 위반시 차단 가능) ○ default route를 상대방으로 설정하지 않음 ○ 모든 접속점에서 동일한 AS번호를 제공 |

| | | |
|--|-----------------|--|
| | 계약적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evel 3은 시장 및 트래픽 상황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peering policy를 변경할 것임 o peering policy는 언제든지 Level 3의 재량에 의해 수정, 대체 및 중단 가능 o 이 policy는 guideline이며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 |
|--|-----------------|--|

자료: 김희수 외, 2009

3. Worldcom

<표 4-5> Worldcom의 인터넷 접속조건

| | 구분 | 내용 |
|--------------|----------------------|---|
| | 상호 접속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지리적인 범위: Worldcom의 지리적인 설비 커버리지의 50% 수준(현재 미국의 25개주, 유럽 9개 국가, 아시아-태평양 3개 국가), 미국 내에서 최소 9개 지역의 노드를 보유하는 설비 분산이 필요 o 트래픽 교환비율은 1.5: 1을 초과할 수 없음 o 백본망 수용력: 미국의 Worldcom과 OC-48(2.5G) 전용회선 운용, 유럽의 Worldcom과 OC-3(155Mbps) 전용회선 운용, ASPAC Worldcom과 45Mbps 전용 회선 운용 o 트래픽 총량: 미국의 Worldcom과 600Mbps 이상, 유럽의 Worldcom과 45Mbps 이상, ASPAC Worldcom과 29Mbps 이상 |
| World com | 운영 상의 요구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상호간의 접속링크를 경유하는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위하여 충분한 robustness, 수용력, 지리적인 분산을 유지해야 함 o 24x7 Network operation center 운영 o 각 인터넷망은 전송라우터로 next hop을 설정해야 함 o 상호간에 별도의 협약이 없다면, 최단경로 라우팅(shortest routing) 실행 o 각 인터넷망은 상호접속 해당지역 내의 non-transit 트래픽이나, 또는 해당지역 외의 트래픽은 전송하지 않음 o 단일회선의 정지가 트래픽 교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충분한 보완망(fully redundant network) 운영 o 각 인터넷망은 무정산 상호접속 협정에 우선하여 라우팅과 관련된 테스트 및 감사목적의 free Shell 또는 PPP 계정을 교환해야 함 o 각 인터넷망은 요청시 2시간 내에 기술진을 교환하여, 라우팅 및 보안 이슈뿐만 아니라 비요청 메일 및 망오용 제소 등에 응답함 o 트래픽 교환비율과 트래픽 총량의 산정을 위하여 상호접속 |

| | | |
|--|-------------------------|---|
| | | <p>링크의 모든 트래픽을 산정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단기적인 시험링크를 설립하고, 이것도 어려우면 대표표본에 근거하여 peak utilization을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래픽 교환비율과 트래픽 총량의 산정에서, 해당 트래픽은 무정산 기반의 상호접속이 요구되는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양사의 인터넷 망과 그들의 고객에 한정되어야 함 |
| | <p>기타 고지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사는 인터넷 상호협정 및 비밀노출 금지의 협정을 개시 ○ Part1의 요구사항은 무정산 협정의 요청시에 충족되어야 함 ○ 모든 policy의 요구사항은 무정산 협정의 지속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며, 해당 policy의 충족여부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함 ○ Worldcom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해당 Policy의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고 어느 시점에라도 재설정할 권한을 지님 ○ 무정산 상호접속의 요청은 E-mail에 의함 |

자료: 김희수 외, 2009

제5장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

제1절 개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필수설비보유 사업자나 역무별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상호접속협정을 한 후에, 종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것에 그치던 것에서 나아가,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¹⁰⁵⁾ 이에 따라 국내 역무별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필수설비보유자는 자신이 체결하는 상호접속 협정 등을 공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각 회원국은) 주요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IA)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RIO)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¹⁰⁶⁾ 규정함으로써 양자택일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통신협정 참조문서 2.4보다 더욱 엄격하여, 선택의

105)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6) Transparency of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 It is ensured that a major supplier will make publicly available either its interconnection agreements or a 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여지없이 상호접속협정(IA)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는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주요사업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상호접속협정을 반드시 마련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새로이 편입된 협정서 공개 의무에 있어서, 공개 정도의 수준, 즉 협정서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지의 여부, 공개의 방법 및 공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추후 논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¹⁰⁷⁾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필수설비보유자 및 일정 사업규모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KT의 시내전화와 SKT의 이동전화(2G, 3G)가 해당된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동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체결하는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해야 한다. 반면 국제협정 양허내용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상호접속협정 및 그 공개 대상에 인터넷접속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제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국내 ISP 보호 및 국내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의 작성·공개가 효과적일 수인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접속 내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기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규제당국에서 작성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시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은 앞서의 분석결과들을 기초로 초고속인터넷분야 관련 사업자들의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작성을 위한 규제당국의 지침 격에 해당하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상호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제2절 국내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현황

1. 총칙

107)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국내 사업자들도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있어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RIO)¹⁰⁸⁾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조사됐다.¹⁰⁹⁾ 이러한 RIO는 사업자간 인터넷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망 접속 RIO는 제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크게 총칙,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접속료 산정, 접속료 정산, 책임 및 업무의 한계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접속망 구성도와 접속점 상세위치도를 별표로 첨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¹⁰⁾

우선, 총칙 중 적용범위에서는 인터넷망접속 RIO가 접속사용자와 접속이용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전기통신설비의 접속과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함을 밝히고 있다. 정의(Definition) 조항에서는 상호접속 고시 및 관련 고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정의를 차용하고 있는 동시에, 그 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호접속 관련 법령, 고시 및 RIO 간의 용어를 통일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해석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RIO 적용 및 해석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RIO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관련 고시가 무엇인지 모호하다. RIO는 주로 사업자들이 작성하는 것이 때문에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본원칙은 RIO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근거가 되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속망 구성 및 운영의 원칙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점까지 각 통신망은 양사가 상호구축·운영하며,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구간의 접속회선을 상대사업자의 선로설비 등을 이용하여 구축할 경우 양사 간 전기통신 설비제공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

108) 이하에서는 편의상 간략히 “RIO(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라고 지칭함.

109) 2010년 10월 1일 KT, SK브로드밴드 및 LGU+의 인터넷망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진술을 토대로 했다.

110) 이하에서는 KT의 인터넷망간 상호접속 및 정보제공에 관한 RIO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다. RIO를 통해 제공하는 현 시점의 접속망 구성도는 별도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단일한 RIO에서 상호접속 및 설비제공 등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내 RIO에서 상호접속에 관한 것과 설비제공에 관한 것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은 상호접속기준 제7조(접속료 산정 및 정산의 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1항에서는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내, 시외, 공중전화, 이동전화(셀룰러,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망 및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접속료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사업자 간 상호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¹⁾

한편 양당사자는 RIO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준 제5조(정보유통의 금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제공기준 제5조 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¹²⁾

2. 접속망 구성 및 운영

먼저 접속망의 구성에 있어서,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접속망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관련설비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1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11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설치, 기종 변경 및 개조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상대사업자의 접속호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망간 접속 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은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으며,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의 접속회선을 제공받은 경우 접속회선의 사용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2개월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접속사업자 간 상호접속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접속망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망간 접속 시 접속호는 직접 접속호와 중계 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상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당사자 간 상호 제공하도록 했다. 접속경로의 설정에 있어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접속제공자는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할 인터넷접속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자사의 인터넷망 운영현황을 RIO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 이 인터넷 조건에는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율 및 연동점이나 라우팅 원칙 등 기타의 요건들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접속조건 적용에 필요한 자사의 현황을 제출하고, 적용범위 및 계위산정 등은 접속제공자의 인터넷접속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기로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의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트래픽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인터넷접속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별, 회선별로 우회하여 호를 소통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며,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인터넷망 접속에 있어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정보제공도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자신의 밝히고 싶지 않은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할 우려도 발생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기업정보를 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평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정보제공의 수준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필요한 정보는 ①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제원, IP주소, AS번호 등 접속에 관한 정보, ②자체 AS번호를 갖는 가입자 및 자사의 인터넷접속 재판매 사업자 정보(AS번호, 상호 등) 등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③트래픽 조절 및 우회, 로드밸런스, 경로설정 정보 등과 같은 라우팅정보 및 ④실무 운용부서간 전화번호, FAX, 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밖에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의 제공 방법 역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정한 정보의 비공개 보장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①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이거나, ②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사업자는 당해 정보의 제공을 제한(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이러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한다.

또한 정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양 당사자는 상대사업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RIO에서 명시하고 있다. 만일 상대사업자가 이를 위반

하여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상대사업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접속료 산정

접속통신료 및 접속회선비용은 RIO에서 미리 정한다. 이 경우 접속료 중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는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직접접속료와 중계접속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희망하는 접속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가 희망하는 중계접속용량을 기준으로 중계접속비용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계접속료를 산정한다.

접속제공사업자는 중계접속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트래픽 측정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접속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트래픽 측정을 위한 측정구간 및 방법 등은 양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만일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또한 상대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5. 접속료 등의 정산

정산대상의 비용을 정산의 편의상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했다. 정기비용에는 접속회선비용,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이 포함되며, 수시비용에는 1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이 포함된다.

접속회선비용에 대한 정산은 동일 계위 간에는 접속사업자들이 각각 1/2씩 부담하고, 다른 계위 간에는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접속이용사업자의 일방

적 사유로 사용기간 내에 접속회선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접속회선비용을 일시불로 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한편 접속통신료의 정산에 있어서는 인터넷 직접 접속 시 동일 계위 간에는 정산하지 않으며, 다른 계위 간에는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인터넷 중계접속 시 접속통신료는 산정된 대가를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또한 접속료 산정 및 정산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사 각 3인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비용 청구에 있어서, 수시비용은 상호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하되 상대사업자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불하여야 하며, 정기비용은 사용월 익월 25일까지 청구(부가가치세 별도)하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사업자에게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상대사업자에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송부하고 상대사업자는 청구서에 의해 지불 후 그 사실을 청구한 사업자 정산부서로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비용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연체 총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연체이자율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RIO에 명시한다. 만일 상대사업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상대사업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각 항목별 청구금액의 1% 미만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며, 차액발생 최소화를 위해 양사 협조한다. 단, 기술적인 결함에 의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기서 1% 미만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거래상의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차액기준은 양당사자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상대사업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 금액에 대한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상대사업자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상대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구성한 협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사업자는 청구된 금액을 지정

된 납기일내에 우선 지불한 다음, 차이발생 조정분에 대하여는 익월 청구서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추후에 발생 가능한 분쟁의 여지를 예방하기 위해 양당사자는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내역 등 관련 자료를 6개월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책임 및 업무의 한계

이 부분에서는 RIO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 중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외한 기타 문제들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양당사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RIO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계약의 해석과 이행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은 계약의 기본 원칙임과 동시에 RIO 전반에 걸쳐 지켜져야 할 원칙이므로, 이 규정을 RIO의 첫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당사자는 상대사업자가 이 RIO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RIO를 위반한 것은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접속조건의 적용에 필요한 현황을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부당사용기간 동안 정상요금의 2배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접속이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사업자가 비용, 기타 금전채무 등에 대한 지불기일이 경과하여 2차까지 납입 촉구하여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 접속 및 정보제공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일시 제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일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사업자가 서면으로 이의가 있음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속이나 정보제한을 한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만, RIO의 전체 취지로 보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과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우세한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분쟁해결방법을 사전에 RIO에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양사는 천재, 지변, 전사,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등 사회통념상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 RIO 상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사업자에 대해 RIO 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한 손실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조항 역시 양사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외견상 공평한 조항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주체는 주로 접속제공사업자일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RIO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상호접속기준 제71조(유권해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¹¹³⁾ 동 고시 제72조에서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맡기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첫째, 상호접속고시의 상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에서 이에 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한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다. 둘째, 약관의

113) 개정 고시에 의하면 제72조이다.

심사에 대해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주무관청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면 두 기관 사이의 유권해석 결과가 다른 경우 어느 기관의 해석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일방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RIO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RIO 및 상호접속기준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느 부서 또는 누가 이를 담당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전체 법체계를 고려하는 한편 유권해석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제3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 제정을 위한 고려사안

1. 상호접속협정의 일반적 내용

인터넷 상호접속협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각국의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상호접속협정에 대해 매우 충분한 규제가 존재한다면, 그 협정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을 것이다.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이나 기술기준, 절차 등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 공개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접속협정이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다음 표의 내용들이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전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⁴⁾ 개략적으로, 정의, 접속의 범위와 목적, 접속점과

114) World Bank, *supra.*, 3-10.

관련설비, 접속신호, 트래픽 특정 및 라우팅, 설비의 공동사용, 과금 및 과금절차, 과금에 관한 분쟁의 해결절차, 서비스의 질, 테스트 및 유지, 정보의 교환 및 처리, 협정의 종료, 권한의 분담 및 제한, 적용법률, 벌칙, 해석, 분쟁해결절차 및 재협상 절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5-1>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되는 전형적 구성항목

| Contents | Details |
|---|--|
| Interpretation | |
| Recit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Whereas” clauses add historical and legal context to assist understanding by future readers of agreements |
| Definition of Key Term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erminology varies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countries and operators o It is important to ensure compatibility of terminology to the local environment when adapting interconnection agreements from other countries o Definitions in other documents may be referenced, e.g. definitions in laws or regulations, regulatory guidelines, ITU definitions |
| Scope of Interconnection | |
| Description of Scope and Purpose of Inter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Different types of interconnection agreements have different purposes (e.g. two local networks, local to long distance/international, fixed-to-mobile, mobile-to-mobile, local ISP to ISP backbone) o The purpose of some interconnection agreements is to provide termination services or transit services; others involve provision of unbundled facilities, etc. o Interconnection architecture (annotated diagrams) |
| Points of Interconnection and Interconnection Facilities | |
| Points of Interconnection (POI) and Related Facility Specifica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OI locations (e.g. exchanges, meet points) usually listed in an appendix; may be modified from time to time. Typically includes exchange types and street addresses o Specific POI facility locations (e.g. digital distribution frame; manhole splice box) o Description of network facilities to be interconnected (e.g. OC-3 fibre optic terminals with interconnecting single-mode optical fibres) o Specify capacity and/or traffic volume requirement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ndicate which party is to provide which facilities (include diagram of POIs and interconnected facilities) o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ling Line Identification (CLI) specs - Other advanced digital feature specs, e.g. call forwarding, caller name ID, etc. - Basic and ISDN call control interface specs o Local Number Portability (LNP) query-response network specs |
| Signaling Interconne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pecify type of signaling networks/standards (e.g. CCS7) o Signaling POIs locations to be specified (i.e. Signal Transfer Points or STPs) o Point Codes to be specified o Technical interface specifications (e.g. signaling links to be dedicated E-1 or DS-1 transmission facilities; operating at 56 kbps) o Diagram of signaling interconnection architecture |
| Network and Facility Changes | |
| Planning and Forecas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equirement for mutual notification of network changes and capacity forecast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ffic forecasts for each POI - local number and portability requirements - area code saturation and changes to increased digit phone numbers - default and redundant routing arrangements o Periodic network planning reports may be specified |
| Facility Ordering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pecify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party with respect to ordering and provisioning of interconnection facilities (including unbundled network elements - see below). o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ensure same o Ensure no anti-competitive use of order information (e.g. no contacts with end users; competitive service divisions of operator receiving orders) o Specify points of contact (e.g. Interconnection Service Groups; E-mail addresses, etc.) o Specify order format and procedures (e.g. standard order forms may be utilized in paper or electronic (EDI) format) o Procedures to expedite specific orders o Co-ordination process for migration of customers between operators (e.g. coordination of cut-overs to prevent or minimize service interruptions to end users) o Procedures for ordering operator to arrange for all equipment installations and changes at end-user premise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Order confirmation and order rejection procedures, timely notification, notification of additional charges, etc. o Order completion notif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
| Traffic Measurement and Routing | |
| Traffic Measurement Responsibilities and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Describe party responsible; measurement and reporting Procedures (see billing procedures below): o Rules for routing of different types of traffic, if any (e.g. Bill and Keep local traffic that is to be terminated reciprocally without charge may be carried on “Bill and Keep” trunks; traffic to which termination charges apply may be carried on other trunks, e.g. transit trunks, national traffic trunks, etc.) |
| Infrastructure Sharing and Collocation | |
| Sharing of Infrastructure, Procedures and Cos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vailability of poles, conduits, towers, rights of way, etc. o Procedures, if any, for determining available capacity; procedures for allocating capacity among requesting operators (e.g. first come/first served) o Prices and/or costing method o Provision and pricing of supplementary services (electrical power, security systems, maintenance and repairs, etc.) o Sub-licences on property of third parties (e.g. right of way owners, municipal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property owners, where infrastructure is located), insurance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
| Colloc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vailability of actual or virtual collocation (e.g. for transmission facilities on exchange premises); list of addresses where collocation is available; procedures for determining available space; reservation of expansion space o Prices and/or costing method for collocated space o Provision and pricing of supplementary services (e.g. electrical power and emergency backup power, lighting,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ecurity and alarm systems, maintenance and janitorial services, etc.) o Procedures for ensuring access to and security of collocated facilities (notification; supervised repair and provisioning work and/or separated premises, etc.) o Negotiation of other lease and/or licence arrangements, including issues of sub-licences on property of third parties (e.g. building owners, right of way owners, municipal and other public property owners), insurance and indemnification for damages |

| | |
|--|--|
| | |
| Billing | |
| Scope of Billing Arrangements and Responsibilit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May include different arrangements,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erators billing each other for interconnection services (e.g. termination) and facilities (e.g. unbundled loops and other network elements) o Performance of billing functions by some operators for others (e.g. local operators billing end-users for long distance or international operators, ISPs, etc.) |
| Billing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Interconnection billing media - discs, tapes, paper and/or electronic (EDI) transfers; format and software specifications o Guidelines for production of interconnection billing outputs, inclu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licable industry standards (e.g. CABS, BOS, SECABS, used with or without modifications) - Billing data format and data elements - Standardized codes and phrases - Billing schedule o Customer Service Record (CSR) provision, inclu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tails to be supplied by provisioning local operator (e.g. record of interconnection elements used, including circuit and other (e.g. DSLAM) equipment identification numbers) - media (e.g. tape, paper, etc.) and schedule for delivery - other requirements to facilitate efficient verification and billing of end-user by non-provisioning operator o Retention periods for billing data |
|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Billing fees and related charges. o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late payment penalties; service disruption credits, etc. |
| Billing Disputes and Reconciliation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Contact details for reconciliation and billing queries o Responsibilities to provide back-up records o Notification of billing disputes o Initial resolution procedures (e.g. escalation to more senior management) o Final resolution (referral to arbitration, regulator or courts) |
| Quality of Service/Performance and Trouble Reports | |
| Quality of Servi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ervice performance standards may be specified in appendix,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verage time for provisioning interconnection circuits - Percentage of interconnection cut-overs made on |

| | |
|---|--|
| | <p>scheduled dat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arative provisioning performance for competitors and self (or affiliates) - Switching and transmission quality measures on interconnected circuits (e.g. probability of blockage at peak hours, transmission delay and loss ? consider referencing ITU-T recommendations) |
| Testing and Maintenance | |
| Testing and Maintenance | o Right to make reasonable tests, and to schedule service interruptions; procedures to minimize disruption |
| Trouble Repor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ocedure for trouble reports; notice periods; response time standards o Duty to investigate own network before reporting faults to interconnecting operator o Responsibility for costs incurred to second operator in investigating faults subsequently found to exist in first operator's network. Calculation of charges (labour, etc.) for investigating trouble reports |
| System Protection and Safety Measures | o Responsibilities of parties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to prevent interference with, or interruptions of, other parties' networks or customers |
| Interchange and Treatment Information | |
| Data Interchange Format | o Method and format of data interchange between carriers, including data interfaces, software, forms, etc. |
| Data to be Exchang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pecify all data types and systems for which data is to be interchanged,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facilities and service orders, network changes and forecasts, billing, etc. (see above) - Number allocations and other data required for call routing and local number portability (where applicable, e.g. where LNP system is operated by incumbent operator rather than an independent party) - Customer listings in directories and databases - Access to network databases, for provision of advanced services |
| Access to and use of Customer Inform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Confidentiality procedures for customer information, inclu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ment of separate interconnection services group with secure data (password protection for electronic files; locks for data rooms and filing cabinets, etc.)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identiality forms to be completed by all relevant employees (penalties and bonding optional) - Procedures to ensure protection of customer privacy |
| Equal Access and Customer Transfer | |
| Equal Access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ocedures depend on equal access approach, e.g. carrier pre-selection; casual selection. Detailed procedures normally incumbent for carrier pre-selection, inclu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er authorization requirements (signature on prescribed form, clear choice requirements) o Authentication and measures to prevent unauthorized customer transfers (slamming) o Penalties for unauthorized customer transfers o Methods of reporting customer transfers (contact points and data to be provided) o Order confirmation procedure (format, medium, etc.) o Schedule to implement transfers o Procedures to implement transfers o Dispute resolution process (e.g. escalation through senior management, arbitrator and regulator);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dispute resolution process o Procedures for dealing with disputed customers (which operator may contact customer,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and/or obtained from disputed customers) |
| Ancillary Services | |
| Operator Assist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ypes of operator assistance services to be provided, including directory assistance, translation services, fault report routing, etc. o Call handling and operations procedures o Fees and billing procedures |
| Other Ancillary 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ubscriber listings in telephone directories o Information and billing inserts o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o Other services provided by one or other operators to increase mutual operating efficiencies |
| Termination | |
| Grounds for Termination and Restrictio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Termination may only be permitted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e.g. regulatory approval for termination of interconnection by incumbent operator) o Grounds for termination by incumbent may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ory or court orders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ruptcy, insolvency, receivership, etc. - Cessation of business o Fewer, if any, termination restrictions in competitive markets, and by non-dominant operators |
| Termination Procedur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dvanced notice requirements o Payment of non-recoverable interconnection costs incurred by disconnected operator o Computation and payment schedule for disconnection costs o Dealings with end-users, communications restrictions, etc. o Disconnection cutover procedures. |
| Other Provisions | |
| Force Majeur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List of conditions for which non-performance of interconnection agreement obligations will be excused |
| Assign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ights of assignment and restrictions on same (e.g. consent or regulatory approval requirements) |
| Applicable Law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greement to be governed by, and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elevant jurisdiction |
| Regulatory Approval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pecify regulatory approvals required for effectiveness and/or renewal, amendment, termination, etc. of agreement |
| Breach of Agre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emedies and penalties o Liabilities, indemnif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ies |
| Legal Interpret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Standard provision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greement (e.g. entire agreement clause, effect of unenforceable terms, cumulative rights and remedies, etc.) |
| Dispute Resolu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rocedures for resolution of disputes under agreement that are not specifically dealt with elsewhere. For exam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od faith negotiations, time schedule for same, escalation through management levels - Referral to regulator, arbitrator or court (e.g. of different types of issues) - Selection of, and procedures for, arbitration |
| Ter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Duration of term o Renewal rights and procedures |
| Amend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Review and re-negotiation procedures o Impact of regulatory changes |

출처: World Bank(2000), 3-10면~3-17면.

2.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 작성의 근거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은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협정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일종의 약관이기 때문에,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접속제공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약관의 일종인 RIO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¹¹⁵⁾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RIO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RIO의 내용 중 ① 접속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접속이용사업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및 ③ 협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협정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¹¹⁶⁾

또한 약관규제법상 고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의 정신에 따라 사업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가입자선로의 공동 활용 기준 및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등¹¹⁷⁾ 기존의 관계 법규상 규정이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표준협정가이드라인(안)의 작성에 있어서, 이미 살펴본 상호접속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항들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공표하는 각 거래 분야의 표준약관들도 참조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접속시장에서 실무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RIO의 체계와 내용도 고려함으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용되는 표준협정 가이드라인(안)이 현실 시장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협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거

115) 약관규제법 제17조.

116) 약관규제법 제6조

117)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래 현실을 반영했다.

3. 가이드라인의 구성 방식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협정서 작성 방식을 조사해 보면, 법령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각종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흔히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이 있으며,¹¹⁸⁾ 당사자 성명만 기재하면 완성된 형태의 계약서가 되어 버린다.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지는 표준협정 가이드라인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사업자들 간에 작성하는 협정서는 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표준협정 가이드라인(안)은 사업자들 간의 협정체결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는 점 및 사업자들 간의 계약 체결시 준용의 대상이나 표준협정을 보완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일반 고시들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표준협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들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 간의 협약 체결에 있어서 일종의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계약체결 당사자인 사업자들의 자율성, 특히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판단기준이 모호해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안)은 관련 고시 규정들을 바탕으로 상호접속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 및 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들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본 표준협정 가이드라인이 목표로 하는 사업자 간의 차별적 취

118) 교과부 고시 제2009-37호.

급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규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핵심 내용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관점에서 작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 과도하게 상세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협약 체결 시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대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해 현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이드라인상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들 간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내용을 수정하여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이드라인 자체는 일반 법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부에 의한 행정적 제재는 불가능하고, 협정 내용을 위반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 및 고시상의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동시에 전기통신사업 법령이나 관련 고시도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이드라인 위반이 곧 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가이드라인 위반 때문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의한 행정제재는 가능할 것이다.

제4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의 내용

1. 전문(前文)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표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 가이드라인 내용과 일치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협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틀 및 전체적인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달리 약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약관규제법에서 무효로 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들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들에 기반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들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특히 개정 법규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상의 관련 규정도 강행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은 상호접속을 함에 있어서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 간에 공정한 조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협정조건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협정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려는 협정당사자는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가이드라인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협정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협정당사자는 이들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 법규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2. 총칙

총칙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목적, 정의 조항, 적용범위 및 상호접속협정의 해석원칙 등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첫째, 목적조항에서는 인터넷망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을 위해 사업자간에 필요한 상호접속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망의 상호접속 및 관련 사항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하나의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가이드의 목적임을

규정했다.

둘째, 정의 조항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했다. 관련 법규와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의 정의들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의 인적적용범위와 관련해서, 기존 법규상 정의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의를 약간 수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 제36조(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9조(상호접속), 제41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및 제42조(정보의 제공)에서는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 기준,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 기준을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들은 독자적으로 적용대상사업자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이 고시들을 통합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대상사업자를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표 5-2> 관련 고시별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

| 고시명 |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 |
|------------------------|--|
|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 이 기준은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간을 접속하는데 적용한다. |
|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 |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 하는데 적용한다. |
|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에 적용한다. |
|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 기준 |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출입 또는 공동사용 하는데 적용한다. |
|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 기준 |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용한다. |

가이드라인(안)은 인터넷접속시장에서의 사업자간 협약에 있어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사업자를 “접속사업자”로 정의했다. 이 용어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 기준,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 기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용례에 따라 이용한 것이므로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3> 초고속인터넷 가입 현황

(2010년 5월말 기준)

| 구 분 | xDSL | LAN | HFC | FTTH | 계 | 비율 (%) |
|--------------|-----------|-----------|-----------|-----------|------------|--------|
| KT | 2,769,474 | 2,392,224 | 0 | 2,003,242 | 7,165,737 | 42.9 |
| SK 브로드밴드 | 134,489 | 1,301,232 | 1,550,424 | 839,853 | 3,825,998 | 22.9 |
| SKT (재판매) | 457 | 21,096 | 24,387 | 15,178 | 61,118 | 0.4 |
| 드림 라인 | 0 | 36 | 1 | 0 | 37 | 0.0 |
| LG 텔레콤 | 33 | 1,625,662 | 986,259 | 0 | 2,611,954 | 15.6 |
| 종합 유선방송 | 35,252 | 251,053 | 2,552,235 | 0 | 2,838,540 | 17.0 |
| 기타 | 6,543 | 140,258 | 67,444 | 321 | 214,566 | 1.3 |
| 계 | 2,946,248 | 5,731,561 | 5,180,750 | 2,858,594 | 16,717,950 | 100.0 |
| 비율(%) | 17.6 | 34.3 | 31.0 | 17.1 | 100.0 | |

주: 1) 기타=(중계유선, 전송망, 별정통신), 2) 가입자 합계에는 KT의 위성방식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797명 포함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이 접속사업자에는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가 포함된다. 그런데 접속제공사업자를 이와 같이 제한 없이 정의할 경우, KT, SK브로드밴드, LGU+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인터넷접속시장에서 RIO 운용의 초기 단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크지 않은 사업자들에게까지 표준협정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에서 인터넷접속망 제공사업자를 규정한 예를 따라서, 접속제공사업자의 정의에 있어서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¹¹⁹⁾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라는 조건을 추가했다.¹²⁰⁾

셋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접속사업자 간의 인터넷망 접속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접속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RIO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이 없는 영업정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접속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RIO가 적용되지 않아서 정보요청에 대해 거절을 하더라도 RIO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접속사업자 간에 제공할 정보의 범위를 기술적 정보로 사전에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역시 기술적 정보의 구체적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기술적 정보와 비기술적 정보를 판단하기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는 존재한다.

넷째, RIO 해석상 기본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문제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해석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한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했다.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파생원칙으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이 있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가 권리남용인데, 이러한 권리남용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

119) 여기서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라 함은 가입자가 인터넷상의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단말기와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접속시켜주는 통신망으로서 디지털가입자망과 광동축혼합망 등을 말한다(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 7호).

120)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 제16조 제1항.

어, 법률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은 어떤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 후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원칙이다. 그리고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외에, 부당한 차별금지와 정보유용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도 두었다. 전자는 접속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을 포함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이므로, 이러한 제정 취지를 재차 명확히 하는 동시에 RIO 해석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다. 후자는 접속과 관련되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나 비밀을 영업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부당한 차별금지와 정보유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 모두 넓은 의미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통신시장 또는 접속 업무의 특성상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이 둘을 규정했다.

다섯째, RIO의 효력발생 개시일 및 효력발생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효일과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상의 고려사항들을 종합하여, 총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안)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 간에 상호접속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망의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및 관련 사항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3. “계위(Tier)”라 함은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을 말한다.
 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호접속” 또는 “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말한다.
 7. “인터넷중계접속”이라 함은 인터넷직접접속을 제외한 국내 다른 사업자의 트래픽이 상호 소통되는 접속을 말한다.
 8. “인터넷직접접속”이라 함은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트래픽(단, 인터넷접속 재판매 트래픽은 제외)이 상호 소통되는 접속을 말한다.
 9.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회선비용,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11. “접속통신료”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상대사업자의 인터넷망 이용대사를 말한다.
 12.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포트와 같은 인터넷망 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13. “AS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구분하는 망 식별번호체계를 말한다.
 14.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접속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5. “정보제공”이라 함은 일방 접속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방 접속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과의 접속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통신망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망으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차별의 금지)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과 관련된 설비의 제공 또는 공동사용 등에 있어서 접속이용사업자를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정보유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접속사업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협정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협정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3. 인터넷망 접속

가. 접속망 구성 및 운영

인터넷망 접속에 관한 규정들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망 접속에 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접속망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과 접속료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접속망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들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접속사업자는 인터넷망간 접속 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접속망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접속망 이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규정을 두었다. 실무상 각사가 담당하는 구간의 접속회선을 상대사업자의 선로 설비 등을 이용하여 구축할 경우 양사 간 전기통신 설비제공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접속사업자들의 망이 동일계위이지만 회선요금이 다를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요금표([별첨1])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RIO에서 제공하는 현 시점의 접속망 구성도([별첨2])에 관한 규정을 들 수도 있다.

둘째, 인터넷망간 접속 시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접속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설치·개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속교환기의 설치·개조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관련설비 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설치, 기종 변경 및 개조 등을 추진할 경우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상대사업자의 접속호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방사업자가 교환기를 임의로 개조할 경우, 상호 호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발생을 막기 위해 상호 개조, 설치 시 사업자간 협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터넷망 접속이나 접속변경 절차에 있어서,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신청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도록 했다.

만일 접속이용사업자가 제시한 날짜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접속사업자들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망간 접속 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은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넷째, 접속호의 처리에 있어서,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 접속호와 중계 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가이드라인상의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에 따라 제공하는 타당하다. 한편 출력호에 대한 트래픽 조절을 어느 사업자에게 맡길 것인지와 관련

해서, 이를 출력측 사업자에게 맡기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섯째,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인터넷접속조건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조건에 따른 자신의 초고속인터넷망 운영현황도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터넷접속조건에는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트래픽 교환비용 및 연동점이나 라우팅 원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접속제공사업자는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계위 조정 사항은 접속료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실무에서는 인터넷접속조건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두어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접속이용사업자는 인터넷접속조건 적용에 필요한 현황을 제출하고, 적용범위 및 계위산정 등은 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접속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의 기술발전 및 시장변화, 트래픽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인터넷접속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로부터 1개월 전에 상대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인터넷접속조건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으며, 접속제공사업자가 이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 결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한 익월부터 변경된 계위를 적용하도록 한다.

여섯째, 접속망의 비상대책에 대해서는, 접속사업자들이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즉 접속회선 장애 시나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장애 발생 시에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별, 회선별로 우회하여 호를 소통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안)

제9조(접속의 기본원칙) 접속사업자는 인터넷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관련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 또는 접속변경 시기는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 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접속방식 및 용량 등)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접속경로)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접속호의 처리)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이 가이드라인 제3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에 따라 제공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접속조건의 공개) ①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초고속인터넷접속조건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조건에 따른 자신의 초고속인터넷 망 운영현황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초고속인터넷접속조건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통신망 규모
2. 가입자 수
3. 트래픽 교환비율
4. 기타(연동점, 라우팅 원칙 등)

③ 접속제공사업자는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접속사업자는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 게이트웨이 라우터별, 회선

별로 우회하여 호를 소통한다.

1. 접속회선 장애시

2.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장애 발생시

② 제1항의 우회경로 설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술기준) ① 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국가표준

3.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국제표준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통신품질조사) 접속사업자는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접속료

첫째, 접속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터넷망 접속료 역시 원가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초고속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상호접속기준 제7조와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했다. 한편 직접 접속료와 중계접속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희망하는 접속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접속제공사업자가 중계접속용량을 기준으로 중계접속비율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중계접속료를 산정하고 있다.

둘째,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했다. 정기비용은 접속회선비용,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하며, 수시비용은 1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정기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

문에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발생시 정산하는 것이 정산에 있어서 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하도록 했다.

셋째, 접속회선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인터넷망 접속 시 접속회선비용은 동일계위 간에는 접속사업자 간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다른 계위간에는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그리고 접속과 관련된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넷째, 인터넷 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에 있어서는 동일계위 간에는 정산하지 않고, 다른계위 간에는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했다. 한편 인터넷 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다섯째, 접속사업자는 제18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하여 상대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해야 하며,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여기서 직접비란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직접적 비용을 말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노력을 감안하여 유사서비스의 요금 등이 존재하고 접속사업자 간에 그 요금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유사서비스 제공대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접속이용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접속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신료에 포함되어 산정할 수 있다. 이는 상호접속기준상 부대서비스비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여 사업자간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망 접속 분야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여섯째, 요금 및 비용의 정산과 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속사업자는 정산담당자를 각각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산을 위해 접속사업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일방당사자가 상대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지연이율에 대해서는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들은 관련 고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접속료 정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이를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

가이드라인(안)

제19조(접속료 산정원칙 등)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초고속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비용의 분류) ①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한다.

② 정기비용은 접속회선비용,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수시비용은 1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21조(정산주기) ① 정기비용은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발생시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접속회선비용의 정산) 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동일계위간 : 접속사업자간 각각 1/2씩 부담
2. 다른계위간 :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

제23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4조(접속통신료 정산) ① 인터넷 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동일계위간 : 정산하지 않음
2. 다른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 ② 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25조(부대서비스비) ① 접속사업자는 제18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 상대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

은 직접비로 본다.

② 접속이용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양사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신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 및 비용의 지불방법 등) ① 요금 및 비용의 정산과 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속사업자는 정산담당자를 각각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해 접속사업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지연이자) 일방당사자가 본 협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인터넷망 접속에 있어서 관련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정보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접속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자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보 요청 및 제공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접속사업자가 다른 접속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경우 접속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범위를 한정하되, 그 밖의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제공요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접속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정보를 제공시기에 따라 정기정보, 즉시정보 및 상시정보로 분류했다. 정기정보란 접속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며, 즉시정보란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상시정보란 AS번호의 사용자정보, 라우팅정보 등 상대사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수시정보에¹²¹⁾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접속사업자는 제15조(인터넷접속조건의 공개)의 인터넷접속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인터넷망 운용현황을 매년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실상 제15조에 의해 인터넷접속조건은 공개되기 때문에 굳이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접근의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 기준」의 예에 따라 정기 정보를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셋째, 정보제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했다. 정기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 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시정보는 Looking-glass 등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정보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이거나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설비제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접속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이후 제공사업자와 접속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21) 설비제공, 공동사용관련 정보등과 같이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안)

제28조(정보제공의 대상) ① 접속사업자가 다른 접속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접속 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제원, IP주소, AS번호 등 접속에 관한 정보
 2. 자체 AS번호를 갖는 가입자 및 자사의 인터넷접속 재판매 사업자 정보(AS번호, 상호 등) 등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3. 트래픽 조절 및 우회, 로드밸런싱, 경로설정 정보 등과 같은 라우팅정보
 4. 실무 운용부서간 전화번호, FAX, 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
- ②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접속 등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정보제공요청)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접속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정보제공 시기) ① 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 : 접속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즉시정보 :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3. 상시정보 : AS번호의 사용자정보, 라우팅정보 등 상대사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② 접속사업자는 제15조(인터넷접속조건의 공개)의 인터넷접속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인터넷망 운용현황을 매년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의 제공방법) ① 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정기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 ③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상시정보는 Looking-glass 등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⑤ 정보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제공제한) ① 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속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과 관련이 없는 경우
- ② 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③ 제공사업자와 접속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5. 분쟁의 해결 등

당사자 간에 합의한 RIO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해결 방안에 대해 사전에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들이다. 먼저 협정당사자는 협정의 해석 또는 협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IO 해석 및 준수상의 기본원칙인 신의 성실 원칙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단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정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관할법원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함께 접속사업자 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 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협정의 해지와 갱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정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로 될 수 있다.

둘째, 협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정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협정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손해를 받은 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자 규정했다.

셋째, 협정 당사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각 자신의 접속망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넷째, 협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속요금표, 접속망 구성도 및 접속점 상세 위치도를 첨부하도록 했다. 비록 별첨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RIO 내용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별첨 자료들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안)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협정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협정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5조(손해배상) 이 협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정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협정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유지보수책임) 협정 당사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각 자신의 접속망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7조(협정의 해지와 갱신 등) 협정의 해지와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별첨1] 접속요금표

[별첨2] 접속망 구성도

[별첨3] 접속점 상세 위치도

제6장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방안

제1절 국제규범 및 해외사례

1. 다자규범

기본통신협상은 참조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에 대한 공개의무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주요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① 네트워크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점에서 상호접속의 제공,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 ③ 품질, 가격 등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상호접속 조건적용, ④ 불필요한 요소에 대한 지불이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된 요소에 대해 접속을 허용, ⑤ 접속요청 사업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존과는 다른 접속점에서의 접속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상호접속 협상 과정에서 주요 사업자로 하여금 접속제공 절차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과 관련해 주요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면, 참조문서 2.4조(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는 “주요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상호접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요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서비스 사업자는 언제나 또는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규제기관에 요금을 포함한 적절한 접속조건에 관한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U, APEC, EU 등에서 제시한 상호접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견, 지침 등의 전체적인 내용은 상호접속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접속료가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접속의 투명성을 위하여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

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은 ITU, APEC, EU 등에서 제시한 상호접속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1> 상호접속 관련 ITU, APEC, EU 규범 비교

| | ITU 가이드라인 | APEC 보고서 | EU 지침 |
|-----------------------------|---|--|---|
| 목적 |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용편익 확대 | 공정·효율적 경쟁 및 소비자 이익 제고를 위한 상호 접속의 법적 보장 | 공정경쟁을 통한 회원국 소비자 이용편익 확대 |
| 상호접속 제공조건의 내용 및 공개 기준 관련 조항 | ITU-InfoDev(2000), “Telecom Regulation Handbook” |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 Reference paper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Access Directive) |
| 상호접속 제공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성 비차별 비용지향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 접속 관련사업자와 비관련 사업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 제공조건의 시의 적절성, 투명성, 합리성, 세분화 및 원가지향적인 효율 상호접속을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표준 POI 이외 다른 지점에서의 상호접속을 원할 경우 이러한 요구를 수용 절차는 모든 당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차별적 상호접속 개방과 투명한 상호 운용 보장 정보공개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만 거절 정보의 공고(공보) |

| | | | |
|------------------|--|---|---|
| | | 자가 권리 및 의무를 알 수 있도록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회원국은 사본 형태이든 혹은 표준협정 형태이든 정보 공개(일정한 간격으로 보완) | |
| 상호접속 공개 기준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접속 범위 네트워크·설비 변경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인프라 분배 및 설비병설 요금 서비스 품질·성능 및 분쟁 보고 데이터 교환 및 취급 정보 동등접속 및 소비자 트랜스퍼 부가서비스 종료 기타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책정 일정 요청 및 제공과정 세분화된 망요소 전화번호 안내, 수선 및 회선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등 지원 기능 작업절차, 서비스 요청 및 제공, 유지, 시용자의 이용량 자료 제공, 서비스/작동 준비상황 시험, 서비스 계산서 등 서비스 기능 서비스의 특징, 기능 등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변동 사항 사전 통지 및 특정 서비스 및 고객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접속 범위와 정의 상호접속 일반조건 사업자 의무 및 시장리뷰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의무 ✓ 비차별 의무 ✓ 회계분리 의무 ✓ 접속, 사용, 특수 시설 의무 ✓ 가격 및 비용회계 의무 ✓ 절차 조건 ✓ 정보 제공 ✓ 고지 |

또한 국제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쟁점사항, 즉 관련조항, 공개의무적용사업자, 공개의무적용 의무, 공개주체 및 방식, 공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6-2>와 같다.

먼저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ITU 및 APEC은 WTO 논의에 기반을 두고 상호접속을 접근하고 있으며, EU는 회원국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간 공중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개의무적용 사업자에 대하여는 ITU 및 EU 지침에서는 지배적사업자가 공개의무적용 대

상자이며, 회원국 이를 보장하며, APEC은 주요사업자가 공개를 보장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공개주체에 대하여는 ITU 및 EU에서는 공개는 당사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APEC은 주요사업자가 공개의 주체로 논의되고 있다. 공개방식에 대하여는 EU는 공개방법에 대하여 공보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ITU 및 APEC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은 없다. 마지막으로 공개내용에 대하여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상호접속 제공 보장, 제공조건 공개 권고, 상호접속 범위와 정의, 상호접속 시설 및 포인트, 가격 및 비용, 서비스 품질·성능 및 분쟁보고, 동등법속, 서비스의 특징, 기능 등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사업자의무, 정보제공 및 고지, 부가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2> ITU, APEC, EU에서의 공개 주체, 방식 및 내용

| 쟁점 | ITU 가이드라인 | APEC 보고서 | EU 지침 |
|-------------|--|--|--|
| 관련 근거 | ITU -InfoDev(2000), "Telecom Regulation Handbook" |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the WTO Telecom Reference paper |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Access Directive) |
| 공개 의무 적용사업자 | 지배적 사업자 | 주요사업자 | 지배적 사업자 |
| 공개 의무 적용역무 | 통신망과 서비스 | 통신망과 서비스 | 통신망과 서비스 |
| 공개주체 | 회원국 | 주요사업자 | 회원국 |
| 공개방식 | - | - | 공보(권고) |
| 공개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접속 범위 상호접속 시설 및 포인트 네트워크 및 설비 변경 트래픽 측정 및 라우팅 인프라 분배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책정 일정 요청 및 제공 과정 세분화된 망요소 전화번호 안내, 수신 및 회선관련 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접근 등 지원기능 작업절차, 서비스 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접속 범위와 정의 상호접속 일반 조건 사업자 의무 및 시장리뷰 절차 ✓ 투명성 의무 ✓ 비차별 의무 ✓ 회계분리 의무 ✓ 접속, 사용, 특수시설 |

| | | | |
|--|--|--|--|
| | 설비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징수 • 서비스 품질 및 성능 및 분쟁 보고 • 데이터 교환 및 취급 정보 • 동등접속 및 소비자 트랜스퍼 • 부가서비스 • 종료 • 기타 조건 | 청 및 제공, 유지, 사용자의 이용량 자료 제공, 서비스/작동 준비상황 시험, 서비스 계산서 등 서비스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특징, 기능 등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 변동사항 사전 통지 및 특정 서비스 및 고객 특징 |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및 비용회계 의무 • 절차 조건 ✓ 정보 제공 ✓ 고지 |
|--|--|--|--|

2. 양자·지역규범

우리나라가 체결해 온 FTA도 기본통신협정 참조문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신망 접속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및 한·EFTA FTA 등에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미 FTA에서는 상호접속협정 및 표준협정서의 공개에 관하여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와 자국영역의 다른 공중 통신 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이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접속과 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및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등을 포함하여 공중 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지배적사업자의 행위와 관련한 상호접속 규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할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인도 CEPA도 한·싱가포르 FTA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있어서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즉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한·EFTA FTA에서도 각 당사국이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및/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6-3> 국제협정상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공개에 관한 규정

| 국제협정 | 내 용 |
|---------|--|
| 한·미 FTA | <p>제14.8조(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선택권 2.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그의 설비 및 장비를 지배적사업자의 그것과 상호접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가. 새로운 상호접속협정의 협상, 및 나. 다음 선택권 중 하나 1) 지배적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공중통신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한하는 요율 및 조건을 포함하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 또는 2)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의 조건</p> <p>상호접속표준협정서 및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3. 당사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5. (생략) 6.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와 자국영역의 다른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자간에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을 공개한다.</p> |

| | |
|----------------------|---|
| <p>한·칠레 FTA</p> | <p>제12.7조 투명성 (제17.3조에 부가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접속 및 사용에 관한 조치를 공개한다. 가.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조건, 나.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다. 이와 같은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시 적용되는 조건, 및 마.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p> |
| <p>한·싱가폴 FTA</p> | <p>제11.4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 8. 상호접속 가. 일반조건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상호접속협정의 투명성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협상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라.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 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p> |
| <p>한·인도 CEPA</p> | <p>제7.7조 상호접속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1. 각 당사국은 자국영역 내의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의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든 규제기관의 규정에 따른 상호약정에 따라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 2.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 표준협정서를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상호접속 협상절차의 공개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4.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당사자인 모든 상호접속협정을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와 그 밖의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간에 유효한 상호접속협정에 포함된 상업적 비밀</p> |

| | |
|---------------|---|
| |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의 적용을 받는 조건으로,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이러한 상호접속협정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 한·EFTA FTA | 제6조 상호접속 2.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든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3.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및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

이상에서 현재까지 발효되거나 체결된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FTA에서 나타나 상호접속 관련 내용은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와 각국 간에 체결된 FTA 목적을 살펴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호접속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요금설정이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호접속의 투명성을 위하여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이러한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음 <표 6-4>와 <표 6-5>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FTA에서 나타난 상호접속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4>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 상호접속 관련 내용(I)

|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
| FTA 목적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 무역확대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 무역확대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 무역확대 |

| 상호접속 제공조건 내용 및 공개기준 관련조항 | 부속서 제12장 | 제11장 | 부속서 X |
|--------------------------|---|---|--|
| 상호접속 제공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적 활동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제공 보장 - 요금설정은 직접 관련된 경제적 비용 반영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비차별적·시의적절·투명한 조건 하에서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 비차별적 요금 및 품질 - 원가 지향적 요금 -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도 상호접속 제공하도록 보장 - 비차별적 조건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 - 원가지향적 요금 - 요청 시,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된 망 종단점에 추가되는 지점들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과를 조건으로 제공 |
| 상호접속 공개기준 (투명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채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 -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 -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 -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면허 요건 -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 수정,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 -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를 공개 |

<표 6-5>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나타나 상호접속 관련 내용(II)

| | 한-ASEAN | 한-인도 | 한-미 |
|--------------------------|--------------------------------|--|--|
| FTA 목적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무역 확대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 무역확대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통한 상호 무역확대 |
| 상호접속 제공조건 내용 및 공개기준 관련조항 | 부속서 합의사항 없음 | 부속서 제7장 | 부속서 제14장 |
| 상호접속 제공조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차별적인 조건 및 효율, 품질로 제공 - 투명·합리적·경제적 실현가능성 고려하는 기간·기술표준·규격을 포함한 조건 및 원가지향적 효율로 시의 적절하게 제공 - 요청 시, 필요한 추가적 설비구축비용을 반영하는 효율, 기술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 -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중 하나를 공개 보장 - 사업자와 상호접속협상 위한 적용가능 절차 공개 -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협정 공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접속을 합리적인 효율로 제공 -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 - 비차별적 조건·효율 - 불리하지 않은 품질 - 시의적절·투명·합리적·경제적 실현가능성 고려 - 원가지향적인 효율 - 필요한 추가설비구축 비용 반영하는 효율 조건 - 일반적으로 공중통신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제의하는 효율·조건을 포함하는 상호접속 표준협정서·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 |
| 상호접속 공개기준 (투명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효율 및 기타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 규격 - 단말장치, 기타장비를 공중통신전송망·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통보·허가·등록 면허요건 -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수정·채택 담당기관 정보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효율 및 기타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 규격 - 단말장치, 기타장비를 공중통신망에 부착하기 위한 조건 - 통보·허가·등록 면허요건 |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사항, 즉 관련조항, 공개의 무적용사업자, 공개의무적용 역무, 공개주체 및 방식, 공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조항에 관련하여 기 체결된 FTA에서는 대부분 부속서를 통해 공중전기통신망과 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을 규율하고 있다. 공개의무적용 사업자에 대하여 대부분 FTA에서는 지배적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사국 정부가 상호접속 관련 내용을 공개를 보장하고 있다. 공개주체와 관련하여 공개는 당사국 정부가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공개주체는 지배적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개방식에 대하여는 FTA에서는 투명성확보를 위한 조치는 언급하고 있으나, 공개방식에 대하여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개원칙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토록 보장하고 있으며, 첫째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및 요금,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품질로 제공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시의 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하지 아니한 망 구성요소 혹은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인 요금과 조건들(기술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을 충족 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중단점 외의 지점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한편 공개내용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통신 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공개 내용은 서비스의 효율 및 그 밖의 조건, 표준 관련 조치의 준비·수정 및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공중 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에 부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조건, 통보·허가·등록 또는 면허요건이 있을 경우, 그러한 요건 등으로 되어 있다.

<표 6-6> 기 체결된 FTA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관련 내용(I)

| 쟁점 |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
| 관련조항 | | 부속서 제12장 (제12.3조) | 제11장 (제11.3조) | 부속서 X (제6조) |
| 공개 의무 적용사업자 | | - | 지배적사업자 (제11.4조) | 지배적사업자 (제6조) |
| 공개 의무 적용역무 | | 공중전기통신망 공중전기통신서비스 | 공중전기통신망 공중전기통신서비스 | 기본전기통신망 기본통신서비스 |
| 공개 | 공개 주체 | 지배적사업자 (정부 보장) | 지배적사업자 (정부 보장) | 지배적사업자 (정부 보장) |
| | 공개 방식 | - | - | - |
| 공개 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 망·서비스와 기술적 접속관련 세부사항 - 동 접속·사용에 영향을 주는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채택업무 책임기관 정보 - 단말기나 기타장비의 망 연결시 적용조건 - 통보·허가·등록·면허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 기술적 상호연결 세부사항 - 단말기·기타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시 적용조건 - 통보·허가·등록·면허 요건 - 표준 관련 조치 준비·수정·채택 담당 기관 정보 등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적사업자 자신의 상호접속협정·표준협정서 - 제2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상호접속조건 결정 |

<표 6-7> 기 체결된 FTA에서 나타난 쟁점사항 관련 내용(II)

| 쟁점 | 한-ASEAN FTA | 한-인도 FTA | 한-미 FTA |
|-------------|-------------|--|---|
| 관련조항 | - | 부속서 제7장 (제7.7조) | 부속서 14장 (제14.3조) |
| 공개 의무 적용사업자 | - | 지배적 사업자 | 지배적사업자 (부속서 제14.8조) |
| 공개 의무 적용역무 | - |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서비스 | 공중통신망 공중통신서비스 |
| 공개 | - | 지배적사업자 (정부 보장)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 | 지배적사업자 (정부 보장)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 |
| | | 이해당사자 | 이해관계인 |
| 공개 내용 | - | - 서비스요율·기타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 규격 - 단말기·기타장비의 공 중통신전송망·서비스 부착 시 적용조건 - 통보·허가·등록·면허 요건 - 표준 관련 조치 준 비·수정·채택 담당기관 정보 등 포함 | - 서비스요율·기타조건 - 기술적 인터페이스 규격 - 단말기·기타장비의 공 중통신전송망 부착 시 적 용조건 - 통보·허가·등록·면 허 요건 |

3. 해외사업자 동향

유선망과 무선망에 대한 상호접속은 국제규범에 비교적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한 시장인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해외 주요통신사업자

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를 검토한 바 있다.

인터넷 상호접속은 ISP가 최종이용자에게 보편적 인터넷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ISP¹²²⁾ 간 동등접속(peering) 또는 중계접속(transit)을 통해 상호 연동하여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이다. ISP간 인터넷 상호접속에는 크게 동등접속과 중계접속이 있으며, 동등접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신된 트래픽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상호간 전송해주는 접속 계약으로 무정산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paid peering이 존재하여 대가를 지불하기도 한다. 중계접속은 소규모 ISP와 대규모 ISP간 대체적 협정 방식으로 고객들 간의 트래픽 전송대가로 상대 ISP에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표 6-8> 해외 주요통신사업자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공개 현황

| 국가 및 사업자 | 자발적 공개 | 규제에 의한 공개 |
|-----------------------------|--------|-----------|
| 일본 NTT 동서 | 0 | |
| 영국 BT | 0 | |
| 폴란드 TP | - | - |
| 오만, 오만 텔레콤 | | 0 |
| 바레인 BATELCO | | 0 |
| 포르투갈 ANACOM | | 0 |
| 스페인 Telefonica | | 0 |
| 마케도니아 Makedonski Telekom | | 0 |
| 사우디 SAUDI TELECOM | | 0 |
| 아일랜드 BARO 텔레콤 | | 0 |
| 헝가리 Magyar Telekom | | 0 |

122) IBP(Internet Backbone Provider) 포함.

외국의 경우 인터넷 상호접속을 제도화한 사례는 많지 않다.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 가입자 접속시장 및 인터넷 접속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도매 규제 또는 경쟁 평가에 기반을 둔 SMP(지배적 사업자)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은 상업적 협상 기반으로 사업자 간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규제기관인 UKE가 Telekomunikacja Polska 상호접속을 공정하게 보장키 위하여 규제부과를 시도하였으나 EC의 판단에 입각하여 비차별 의무만 부과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표 6-8>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세계 여러 국가에서 주요 사업자 또는 SMP에 대하여 표준협정서 작성을 의무화가 증가되고 있다. 통신규제기관은 주요 사업자가 각 ISP와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위한 표준협정서 작성하고 이를 규제기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증가되고 있다.

표준협정서의 승인 조치의 이유는 주요 사업자와 ISP 간의 접속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터넷 상호접속의 보편적 인터넷 연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사업자 간 상업적 협의에 의하여 표준협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이 이를 승인하는 제도를 둬으로써 ISP가 받을 부당한 대우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규제기관은 주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접속료가 투입비용에 입각하여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시된 접속료를 리뷰 하는 규제기관도 있다. 그리고 협정서의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표준협정서에 세부적 제공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국의 표준협정서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사업자마다 제시된 표준협정서는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각국 및 각사업자의 환경에 기반을 두어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표준협정서에서 나타나는 공동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의/해석, 접속설명, 요금/결제/지불, 장비, 책임, 종료, 분쟁, 준거법 등이다.

<표 6-9> 외국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주요내용(I)

| | 영국 | 오만 | 바레인 |
|------|--|--|--|
| 협정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석 2. 시작 3. 서비스 제공 4. 종료 5. 요금 6. BT 장비 7. 서비스를 위한 장비에 연결 8. 접속 및 접속사이트 규제 9. 서비스의 사용 10. 마스터 서비스 계약 수정 11. 분쟁 12. 부채 13. 배상 14. 데이터 보호 15. 기밀성 16. IP 권한 17. 불가항력 18.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출시 19. 검토 20. 결정 21. 3자 22. 갱신 23. 합의 24. 고지 25. 계약 분리 26. 독립계약자 및 대행기관 27. 포기 및 구제 28. 법률 및 관할권 <p>부속서1: 정의 부속서2: 주문 및 서비스 제공 부속서3: 운영 및 유지보수 부속서4: 청구 및 지불 부속서5: BT의 세부정보 부속서6: CP의 세부정보</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2. 접속서비스 정의 3. 접속 설명 4. 연결구성요소 5. 라우팅 구성요소 6. 상품 구성요소 7. 청구 구성요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 2. 정의 3. 서비스 약관 4. 최종사용자 접근 5. 서비스 자격 6. 장비 7. 연결 8. 예보 9. DSL 양도 10. 결제기간 11. 유지보수 <p>부속서1. DSL 전송 프로세스 부속서2. DSL 전송 목록</p> |

<표 6-10> 외국의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주요내용(II)

| | 마케도니아 | 사우디아라비아 | 아일랜드 |
|------|--|--|--|
| 협정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찰 제목 2.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모델 3. 요청에 의한 도메인인터넷 4. 도메인인터넷서비스 제공 5. 부가 서비스 6. 수수료, 청구 및 지불 7. 은행보증 8. 인보이스 9. 연락처 정보 10. 품질서비스 11. 장애서비스 12. 기술적 매개변수 변경 사항 13. 접속 및 인터넷에 대한 합의 14. 접속 및 인터넷에 대한 일반계약 해지 15. 인터넷에 관한 일반계약 개정 16. 일반계약 변경에 대한 보상 17. 처벌조항 <p>부속서1: 정의 부속서2-1: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2단계 부속서2-2: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3단계 부속서2-3: 인터넷 서비스 접속 설명 - 제4단계 부속서3: 요청/제출 부속서4: 도메인인터넷(ADSL) 서비스 사용신청 부속서5: 인터넷 접속할 링크에 대한 요구사항 부속서6: 연락처 부속서7: 인터넷 transfer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속서8: 애플리케이션과 장애제거·신고 부속서9: 도메인인터넷(ADSL) 서비스패키지</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레임 워크 2. 정의 및 해석 3. 데이터접속서비스 4. 데이터접속서비스 Charging 5. 기술적인 측면 6. 운영측면 7. 서비스 품질 측정 8. 새로운 서비스 9. 데이터접속서비스 관리 10. 결제 및 지불 11. 은행 보증 12. 직원의 안정과 네트워크 보호 13. 기밀유지 및 공시 14. 분쟁 해결 15. 위반, 중지 및 종료 16. 지적 재산권 17. 검토 18. Force Majeure 19. 책임의 제한 20. 권리와 의무 21. 공지 22. Waiver 23. Severability 24. 개정 25. 준거법 <p>부속서A: 정의 및 용어 부속서B: 결제프로세스 및 절차 부속서C: 기술정보 부속서D: 데이터접속 서비스 관리 부속서E: 예측 부속서F: 가격표 부속서G: 서비스일정 부속서H: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부속서I: 서비스품질 측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의 2. 서비스의 약관 3. 장비 4. 청구금액 결제·지불 5. 개시 및 기간 6. 종료 7. 책임과 제한 8. 재검토(Review) 9. 분쟁해결 10. 분리 11. 주의 사항 12. 완전한 계약 13. 면제(Waiver) 14. 기밀유지 15. 지적재산권 16. Force Majeure 17. 양도 18. 관계당사자 19. 신용평가, 신용위험 관리 20. 변화 21. 준거법 |

제2절 국내의 제도적 현황

1. 국내 규정 및 유사사례

상호접속협정 등과 관련된 규정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지배적 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만 받으면 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방통위의 인가 이외에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표 6-11> 상호접속협정 공개에 관한 국내 규정 변경

| 개정 전 | 개정 후 |
|---|--|
| <p>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제33조의5제1항·제2항, 제33조의7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4조의3제1항 또는 제3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7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 <p>제44조(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등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이나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제35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당사자로 하는 협정은 그 협정의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을 요청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p> |

이상에 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공개 주체, 공개 방식 및 공개의 내용 및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제 규범에서도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협정서를 공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활동 및 영업비밀 등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이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협정서의 공개에 있어서 공개 주체, 공개 방식 및 공개의 수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 주체·방식 및 수준 여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공개 주체·방식 및 수준에 대한 국제 규범 및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내 유사 사례 및 국내 규정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6-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공개 방식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에서는 그동안 상호접속협정 또는 상호접속표준협정서의 공개 주체 및 공개 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표준계약 또는 표준약관을 공개하는 사례를 조사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공개하는 유사 사례를 발견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가지 표준약관들을 공개하고 있었다.¹²³⁾

즉,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에 대해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은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협정서와 같이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문서라고 하기 보다는, 규제기관이 작성하여 해당 통신사업자들이 협정 체결에 있어서 일종의 샘플로서 기능을 하는 상호접속표준협정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 공개 방식도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협정서의 공개 주체 및 공개 방식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 개정되어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명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주체와 공개 방식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즉 “……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0조 3항). 이로써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주체이고, 상호접속협정은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상호접속협정의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동법 시행령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해당 협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44조 2항), 시행령에서는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내용을 …… 게시”하도록 하고 있

123) <그림 6-1> 참조.

을 뿐이다(시행령 제40조 3항).

그러므로 공개 주체인 통신사업자는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일부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리고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공개하고 어느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는 정보공개라는 공익과 기업비밀보호라는 사익 간에 있어서 이익 형량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협정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당연히 협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기업비밀보호라는 사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정보자유법과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정보공개와 기업비밀보호

가. 개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오늘날 다양한 행정규제를 이유로 정부가 요구하는 기업 정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개인 정보에 못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기업정보의 무분별한 공개 역시 기업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와 기업비밀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의 해석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¹²⁴⁾

정보자유법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가 공개의 원칙, 대상, 절차, 그리고 공개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이고, 둘째가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Exemption)들

124) 정보자유법은 그 후 1996년 전자정보자유법(EFOIA of 1996)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며, 셋째가 이 법률이 연방의회에 대한 정보 비역의 근거가 아님을 규정한 것이다.¹²⁵⁾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자유법 예외조항4는 정보자유법의 공개 원칙에 대한 9개의¹²⁶⁾ 예외 조항 가운데 하나로서, ‘기업 비밀과 일정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비밀 등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예외조항4에서는 “기업 비밀 및 개인으로부터 입수된 특별히 면제되거나 비밀성을 지닌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trade secrets and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obtained from a person and privileged or confidential)”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 대상을 “기업비밀(trade secrets)”과 “정보(information)”로 나눈 다음, 이 중 정보를 다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와 “개인으로부터 입수된 정보”, 그리고 “특별히 면제된 또는 비밀성을 지닌 정보”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⁷⁾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면제되는데, 그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업비밀의 개념

정보자유법에서는 기업비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연방의회가 예외조항4는 “사업상 판매 통계, 재고품 조사명세서, 고객명단, 그리고 과학적이거나 제조의 과정 또는 기술개발”과 같은 자료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는 있다.¹²⁸⁾ 그러나 이것도 어떤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보통법상 “기업비밀”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s)에서는 기업비밀을 “개인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공식, 모형, 고안 또는 정보의 편집,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쟁자들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회

125) 김배원,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 공법학연구 제5권 2호, 2004, 182면.

126) 현재는 Exemption 1, 2, 3, 4, 5, 6, 7(A), 7(B), 7(C), 7(D), 7(E), 7(F), 8 및 9까지 있다.

127) Allan R. Adler, *Litigation under the Federal Open Government Laws*,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Foundation, 1997, 80-91; DoJ, *Freedom of Information Act Guide*(2009 Edition) (http://www.justice.gov/oip/foia_guide09.htm).

128) H.R. Rep. No. 1497, 89th Cong., 2d Sess. 10, reprinted in 1966 U.S. Code Cong. & Ad. News 2418, 2427.

를 제공하는 모든 공식, 모형, 고안 또는 정보의 편집”으로 광범하게 정의하고 있다.¹²⁹⁾

정보자유법상 기업비밀의 개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판례는 Public Citizen Health Research Group 사건이다.¹³⁰⁾ 이 사건에서 원고인 Public Citizen Health Research Group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영리법인인데, 미국 연방식품의약국(FDA)에 제출된 안구부착형 콘택트렌즈에 대한 임상 실험 자료가 개발자의 기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안구부착형 렌즈는 백내장수술 환자의 시력 보호를 위해 널리 이용된 의료수단인데, 렌즈 제작자는 그 안전도에 관한 임상 실험 자료를 FDA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FDA가 렌즈 안전에 관한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토한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공개를 요구했다. D.C지구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업비밀을 민사상 널리 인정되던 넓은 개념, 즉 정보보유자에게 경쟁상 이득을 제공하는 모든 정보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보자유법상 기업비밀에 관한 예외조항을 해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넓은 의미의 개념을 엄하게 적용할 경우, 안전에 관하여 기업이 보유한 비공개 임상 실험 자료는 어느 것이나 기업비밀에 해당되어서 비공개될 것인데 이는 정보자유법상의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비밀을 좁게 해석하여 “상업상 가치가 있는 계획, 생산방식, 생산과정이나 장치 등 거래물의 생산이나 준비 등에 사용되는 기술혁신이나 상당한 정도의 노력이 담긴 최종결과물”이라고 정의하면서, 기업비밀과 생산과정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좁은 의미로 기업비밀을 해석할 경우, 임상 실험 자료는 기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했다.¹³¹⁾ 제10연방항소법원도 D.C. 순회법원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¹³²⁾ D.C.순회법원과 제10연방항소법원은 만일 기업 비밀을 넓게 해석하게 되면 예외조항4의 두 번째 범주의 정보의 개념을 의미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업비밀에 대한 일반적 기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몇 가지 고려요소

129) 김배원, 앞의 논문, 187면에서 재인용.

130) Public Citizen Health Research Group v. FDA, 704 F.2d 1280 (D.C. Cir. 1983).

131) 이종구,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의 보호, 한국행정학보 제27권 4호, 1993 겨울, 1288면.

132) Anderson v. HHS, 907 F.2d 936, 944 (10th Cir. 1990).

를 제시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 즉, ① 정보가 기업 외부에 알려진 정도, ② 고용인 및 기업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도, ③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정도, ④ 정보의 소유자와 그 경쟁자들에 대한 정보의 가치, ⑤ 그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치른 노력과 비용의 정도, 그리고 ⑥ 다른 사람들이나 조직이 그 정보를 얼마나 쉽게 획득 또는 복제할 수 있는지(난이도)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³³⁾

다. 정보의 개념

정보자유법 하에서 가장 많이 소송이 제기된 문제는 어떤 정보가 비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 법원이 기업비밀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므로 인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기준인 해당 정보를 비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미국법원은 초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기업정보를 비밀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하나는 정부가 정보제공자에게 기업의 비밀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된 정보가 정보제공자가 통상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도의 정보인지 여부이다. 이 당시에는 정부의 약속이나 기업의 관행에 의해 정보보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공개되는 정보가 많았다.

그 후 1974년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ociation 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기준은 바뀌게 된다.¹³⁴⁾ 이 사건에서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ociation은 연방국무부에 대해 국립공원 관리 업무 허가를 받은 민간기업에 관한 정부 보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급심에서 그 정보 공개가 거부됐었다. D.C. 연방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번복하면서 비밀의 인정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동안의 기준이었던 정부가 정보제공자에게 기업의 비밀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와 제출된 정보가 정보제공자의 공개 관행은 비밀 인정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133) Speiser, Krause & Gans, *The American Law of Torts*, § 34.25, 95-96(1993).

134)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ociation v. Morton*, 498 F.2d 765, 766 (D.C. Cir. 1974), appeal after remand 547 F.2d673 (D.C. Cir. 1976).

그 대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부의 정보획득능력이 손상을 입을 것인지 여부(impairment test)와 정보 공개로 정보제공자가 경쟁상 손실을 입을 것인지 여부(competitive injury test)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국정 수행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부문의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 공개의 우려 때문에 기업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공개를 면제함으로써 기업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 공개가 제공자인 기업에게 경쟁상의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정보자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⁵⁾ 이 중에서도 정보제공자에게 경쟁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보 공개를 면제하는 경우가 상호접속협정서의 공개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라. 경쟁상의 손실 기준

기업비밀 관련 소송의 대부분은 경쟁상 손실 기준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미국 법원은 정보 공개로 인해 정보제공자가 경쟁상 손해를 입을 것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비교衡量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경우에는 공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비공개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정보제공자는 현재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쟁상대가 있으며 정보 공개로 인해 경쟁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¹³⁶⁾

둘째, 공개 이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당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

135) 이종구, 앞의 논문, 1290면.

136) CNA Fin. Corp. v. Donovan, 830 F. 2d 1132 (D.C. Cir. 1987).

는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경쟁상 손실을 이미 입었을 것이므로, 정보 공개를 통해 추가적인 손실을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¹³⁷⁾

셋째, 정보제공자나 경쟁자가 해당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이 크지 않다면 공개로 인한 경쟁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해당 정보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경쟁자가 용이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³⁸⁾

넷째, 정보를 청구하는 자가 경쟁자인 여부 및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획득된 정보를 제3자에 공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경쟁상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보가 정부로부터 떠날 경우 경쟁상 손실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경쟁자인지 또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¹³⁹⁾

137) Anderson v. HHS, 907 F. 2d 936 (10th Cir. 1990).

138) Zotos International v. Young, 830 F. 2d 350 (D.C. Cir. 1987).

139) Burke Energy Corp. v. Department of Energy, 583 F. Supp. 507 (D. Kan. 1984).

제7장 결론

UR 후속협상인 기본통신협상은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상호접속 제공조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국제규범을 제정한 계기가 되었다. 동 협상과정에서 마련된 참조문서(reference paper) 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경쟁사업자 간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일반 규제원칙이 포함되었다. 추후 주요 국제기구와 FTA협상은 그러한 일반 규제원칙이 갖는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그 의미의 해석, 조문의 구체화 또는 보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의 의미에서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국제규범은 법적 구속력을 수반하는 국제협정에 국한된다. 하지만, 주요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나 개별 국가·사업자 사례도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고는 상호접속 제공조건에 관한 국내 제도의 방향 설정이라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 제도의 현황과 함께 광의의 의미에서 다자협정, 양자·지역협정, 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개별 국가·사업자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러한 연구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자 국제규범과 우리나라 체결한 양자·지역 국제규범(FTA),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i) 어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어떠한 역무가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 공개의 대상인가? (ii) 상호접속협정 또는 표준협정서를 선택적으로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모두 공개해야 할까?, (iii) 공개 방식 및 내용과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나?, (iv)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제정을 전제로, 동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등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개 주체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이 이를 주요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기본통신협정 발효 이후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3항을 통해 상호접속협정 등의 인가사업자(주요사업자)에게 공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협정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현황이 FTA 규정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희박하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¹⁴⁰⁾가 적시한 ‘KT의 시내전화’와 ‘SKT의 이동전화’

14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1호.

를 공개 주체와 공개 의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접속서비스)도 공개의무 적용 의무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WTO 차원의 다자규범 상으로 인터넷망·서비스를 공개의무 부담 대상에 포함한다는 우리나라의 양허나 다자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자발적 조치의 형식이 아닌 이상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공개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양허방식을 네가티브 열거에 의하도록 했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도 사전적으로는 공개의무 부담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으나,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 국내제도에 의해 주요사업자가 지정되지 않는 한 국제법적에 의한 공개의무에서 자유롭다. 다만, 국제 인터넷접속시장에서 국내 ISP들의 보호 및 국내 인터넷접속사업자들 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정책적 차원에서 공개의무 적용 필요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미 FTA를 제외하면 동일의무에 대해서는 국제법적으로 상호접속협정 및 상호접속표준협정서를 동시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부재하고, 국내적으로도 시내·이동전화에 대해 상호접속협정 인가 규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에서 시내전화 및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상호접속협정만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호접속협정 의무공개와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조건부공개를 기조로 하는 한미 FTA 발효를 전제로 보더라도 그러한 상호접속협정 공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상호접속표준협정서 조건부공개의 조건은 “공개주체가 주요사업자일 것과 동시에 상호접속표준협정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므로 주요사업자이더라도 표준협정서 부재 상황이라면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자발적 공개의무 부담의 경우에는, 경쟁상황에 따른 규제정책 및 협정의무 가변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국제협정이 구체화 방식을 각국 규제당국에게 위임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부(규제기관)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식과 통신사업자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본 보의 해당부분들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정된 전기통신법 시행령을 통해 이를 입법적으로 해

결했다. 즉, 협정체결의 인가·변경인가·폐지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다.

넷째, 공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협정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또는 기업비밀 등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국제협정 및 해외 사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상호접속 범위 및 해석, 네트워크와 시설 요구 절차, 요금, 결제, 지불 및 그 밖의 서비스 사용 조건, 망 또는 서비스와의 기술적 접속 관련 세부사항, 접속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관련 기관 정보, 단말기나 그 밖의 장비를 망에 연결 시 적용되는 조건·면허요건, 통보, 허가, 등록, 면허 또는 양허 요건, 적용법률 및 관할권, 그리고 분쟁, 갱신, 종료, 유지보수 등 기타 요건 등은 공개되어야 할 내용으로 분류된다.

기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업기밀 정보라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상호접속을 제공하는 관련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 기업기밀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를 경우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보자유법상 기업비밀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그 기준을 설명했다. 미국 판례를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하여 정부의 정보획득능력이 손상을 입을 것인지 여부와 정보 공개로 정보제공자가 경쟁상 손실을 입을 것인지 여부가 비공개 인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쟁상의 손실이 상호접속협정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초고속인터넷 역무에 대해 상호접속표준협정서 공개를 시행할 경우에는 제도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당국이 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관련 사업자들이 하여금 참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첨부] 자료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강인규, 폴란드의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 방송통신정책 22(6), 2010.4.1.

김문수, 국제 인터넷 상호접속 수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 2005.

김방룡,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시장 및 규제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2005.

김배원,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 공법학연구 제5권 2호, 2004.

김희수 외, 방송통신망 고도화에 따른 상호접속의 쟁점과 정책과제, 정책연구 09-42, 2009.11.

김희수 외,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09-29, 2009.11.

김희수, 인터넷 상호접속 공정경쟁 이슈와 정책대안, KISDI 이슈리포트, 2003. 8.

안재홍·이은경, 통신 규제제도 일반원칙에 대한 APEC 논의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 17(9), 2005.5.

외교통상부,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2007.5. p. 190.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와 기체결된 FTA, www.fta.go.kr/

이상무 외, 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전자통신동향분석 18(6), 2003.12

이종구, 정보공개제도와 기업비밀의 보호, 한국행정학보 제27권 4호, 1993 겨울.

이종화 외, 인터넷망 상호접속 협정 및 대가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12.

이종화 외, 음성전화망 및 데이터망 표준상호접속 모형개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정보통신부, EU 규제치침, 방송조사자료, 2006-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간통신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9.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통신정책연구실, 2009. 12.

정충영, 인터넷망 및 인터넷전화의 상호접속형태 분석 및 접속료 책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부, 2005.4.

통신개발연구원, WTO 기본통신협상 종합보고서, 참고자료 97-01, 1997.

2. 국내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

자(고시 제41호)

약관규제법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 기준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

전기통신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전기통신설비 공동사용 기준

전기통신설비 정보제공 기준

3. 외국 문헌

ANACOM, <http://www.anacom.pt/render.jsp?contentId=13420>

Analysys, Negotiating Interconnect Agreements Analysis, June 1998.

BARO, <http://www.eircomwholesale.ie/Reference-Offers/>

BT Wholesale Broadband Connect, <http://www.btwholesale.com/>

Batelco, <http://www.batelco.com.bh>

César Mattos, Unbundling Policy in Telecommunications: A Survey, August 2006, SEAE/MF Documento de Trabalho nº 34.

Cullen International, http://www.apek.si/sl/datoteke/File/2007/sporocila%20za%20javnost/cetrletno_porocilo.pdf

David Molony, "Us poised to take German interconnect row to WTO", Communications Week International, March 15, 1999.

EU, Directive 2002/19/EC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Access Directive), 2002. 3. 7.

EU,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02:108:0033:0050:EN:PDF>

Laura B. Sherman, "Wildly Enthusiastic About the First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Vol. 51, 1999.

GATT Secretariat (1999),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 Legal 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TS,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Review of Outstanding Issues, Note by Secretariat, TS/NGBT/W/2, July 8, 1994.

Magyar Telekom, http://www.telekom.hu/services/wholesale/national_fixed_line_solutions/broadband/local_loop_unbundling

Macedonia, http://www.telekom.mk/domestic_en/?z=1216

OMANTEL, <http://www.omantel.net.om/>

SAUDI TELCOM,

<http://www.citc.gov.sa/NR/rdonlyres/B80F9AC3-4DB7-4A31-A34A-C4437A12AB3E/0/RODAAnnexBBilling26807Ver10.pdf>

Telefonica, http://www.telegeography.com/cu/article.php?article_id=31155

Willie Grieve and Stanford L. Levin, "Local Telecommunications Competition: What Is It and Will We Get It?", The 15th Annual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recasting Conference, San Francisco, June 25, 1997.

WTO,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Pro-competitive Regulatory and Other Measures for Effective Market Access in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NGBT/W/5, February 9, 1995.

WTO,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Draft Offer on Basic Telecommunications, S/NGBT/W/12/Add.3, July 31, 1995.

4. 외국 판례

Anderson v. HHS, 907 F.2d 936, 944 (10th Cir. 1990).

Burke Energy Corp. v. Department of Energy, 583 F. Supp. 507 (D. Kan. 1984).

CNA Fin. Corp. v. Donovan, 830 F. 2d 1132 (D.C. Cir. 1987).

National Parks and Conservation Association v. Morton, 498 F.2d 765, 766 (D.C. Cir. 1974).

Public Citizen Health Research Group v. FDA, 704 F.2d 1280 (D.C. Cir. 1983).

Speiser, Krause & Gans, The American Law of Torts, § 34.25, 95-96(1993).

Zotos International v. Young, 830 F. 2d 350 (D.C. Cir. 1987).

[첨부]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안)

인터넷접속 표준협정서 가이드라인은 상호접속을 함에 있어서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 간에 공정한 조건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협정조건을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협정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려는 협정당사자는 이 가이드라인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가이드라인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표준협정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고시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협정당사자는 이들 법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 법규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전기통신설비의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 간에 상호접속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망의 상호접속(이하 “접속”이라 한다) 및 관련 사항들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속사업자”라 함은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초고속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가 5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접속제공사업자”라 한다)와 다른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자(이하 “접속이용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3. “계위(Tier)”라 함은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된 사업자군을 말한다.

4. “공동사용”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상호접속” 또는 “접속”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인터넷접속조건”이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시 사업자 계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신망 규모, 가입자 수 및 트래픽 교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접속제공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을 말한다.

7. “인터넷중계접속”이라 함은 인터넷직접접속을 제외한 국내 다른 사업자의 트래픽이 상호 소통되는 접속을 말한다.

8. “인터넷직접접속”이라 함은 접속사업자의 인터넷망간 트래픽(단, 인터넷접속 재판매 트래픽은 제외)이 상호 소통되는 접속을 말한다.

9.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0. “접속료”라 함은 사업자의 인터넷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대가로서 접속회선비용,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접속통신료 및 부대서비스비를 말한다.

11. “접속통신료”라 함은 인터넷망간 접속에 따른 상대사업자의 인터넷망 이용대사를 말한다.

12. “접속점”이라 함은 각 접속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접속포트와 같은 인터넷망 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13. “AS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국제표준

방식에 의하여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구분하는 망 식별번호체계를 말한다.

14. “정보”라 함은 문서 등 각종매체에 기록된 사항으로 접속사업자가 생산·가공·취합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15. “정보제공”이라 함은 일방 접속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방 접속사업자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기타 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접속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과의 접속 및 이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통신망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속되는 통신망의 범위는 정보통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이 된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망으로 한다.

제5조(신의성실)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6조(부당한 차별의 금지)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과 관련된 설비의 제공 또는 공동사용 등에 있어서 접속이용사업자를 자신의 사업 또는 타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정보유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 접속사업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정보로의 유용 등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협정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협정은 20 년 월 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9조(접속의 기본원칙) 접속사업자는 인터넷망간 접속시 동등·투명·적시 및 합리적인 접속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 및 통신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 하여야 한다.

제10조(접속제공교환기)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제공교환기는 접속제공사업자의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원칙으로 하되, 접속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접속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접속사업자는 상대사업자의 접속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관련설치, 개조 및 기종변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상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접속 또는 변경절차) ① 접속 또는 접속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접속희망일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접속 또는 접속변경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접속제공교환기명, 접속용량, 접속방식, 접속시기
2. 접속이용교환기 특성(기종, 신호방식, 과금방식 등)
3. 접속망 구성방법, 접속경로, 접속호 처리방법, 비상대책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접속 또는 접속변경 시기는 접속이용사업자의 접속희망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접속희망일에 접속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접속을 요청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가능 시기는 접속제공교환기의 신규설치 등의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접속방식 및 용량 등) 인터넷망간 접속시의 접속방식 및 용량 등은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접속경로) 접속경로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단거리 접속경로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접속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접속호의 처리) ① 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호는 직접접속호와 중계접속호로 구분하여 소통시키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은 이 가이드라인 제3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에 따라 제공한다.

② 접속사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라우팅정보,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등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상호 합의되지 않는 접속호는 접속사업자간 상호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접속조건의 공개) ① 접속제공사업자는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초고속인터넷접속조건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조건에 따른 자신의 초고속인터넷망 운영현황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초고속인터넷접속조건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통신망 규모
2. 가입자 수
3. 트래픽 교환비율
4. 기타(연동점, 라우팅 원칙 등)

③ 접속제공사업자는 인터넷접속조건에 따라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접속망의 비상대책) ① 접속사업자는 상호접속구간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상대사업자에게 호를 인도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경우 게이트웨이 라우터별, 회선별로 우회하여 호를 소통한다.

1. 접속회선 장애시
2.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장애 발생시

② 제1항의 우회경로 설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경로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선을 지정하여 운용하되, 규모, 방법, 비용 등은 접속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기술기준) ① 사업자간 접속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 국가표준
3.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기준
4. 국제표준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기준이 없는 경우,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시된 접속에 필요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통신품질조사) 접속사업자는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의 품질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접속료 산정원칙 등) ① 접속료는 원가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리적인 계산방식으로 산정될 때까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② 초고속인터넷망간 접속시 접속료는 접속회선비용과 접속통신료를 일괄 또는 분리 산정하여 접속이용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비용의 분류) ① 정산대상의 비용은 정산의 편의를 위해 정기비용과 수시비용으로 분류한다.

② 정기비용은 접속회선비용,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월별로 정산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수시비용은 1회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정기비용 이외의 비용을 말한다.

제21조(정산주기) ① 정기비용은 매월단위로 정산하며 수시비용은 비용발생시 정산한다.

② 정기비용 정산은 매월 1일 00시부터 당월 말일 24시 사이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접속회선비용의 정산) 인터넷망 접속시 접속회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동일계위간 : 접속사업자간 각각 1/2씩 부담
2. 다른계위간 : 계위가 낮은 사업자가 부담

제23조(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 ①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를 요청하는 사업자는 설비개조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속관련 설비개조비용은 기존 통신망의 설비개조(S/W 포함)에 소요된 투자비, 인건비, 설계비 등의 직접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사업자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4조(접속통신료 정산) ① 인터넷 직접접속시 접속통신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동일계위간 : 정산하지 않음
2. 다른계위간 : 낮은 계위의 사업자가 높은 계위의 사업자에게 지불

② 인터넷중계접속시 접속통신료는 접속이용사업자가 접속제공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제25조(부대서비스비) ① 접속사업자는 제18조(통신품질조사)에 의거 상대사업자의 요청으로 품질조사 등을 하는 경우 직접비를 기준으로 통신품질조사비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요청사업자는 이를 부담한다. 관리비 등을 제외한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직접비로 본다.

② 접속이용사업자만 이용하는 서비스는 양사간 계약에 의하여 산정하며, 모든 접속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접속통신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 및 비용의 지불방법 등) ① 요금 및 비용의 정산과 지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속사업자는 정산담당자를 각각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정산을 위해 접속사업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불방법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지연이자) 일방당사자가 본 협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8조(정보제공의 대상) ① 접속사업자가 다른 접속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접속 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제원, IP주소, AS번호 등 접속에 관한 정보
 2. 자체 AS번호를 갖는 가입자 및 자사의 인터넷접속 재판매 사업자 정보(AS번호, 상호 등) 등 AS번호의 사용자 정보
 3. 트래픽 조절 및 우회, 로드밸런스, 경로설정 정보 등과 같은 라우팅정보
 4. 실무 운용부서간 전화번호, FAX, 메일 등의 연락처 정보
- ②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접속 등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이외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정보제공요청)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접속요청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정보의 범위 및 대상, 사용목적 및 용도, 제공방법, 제공시기 및 제공조건 등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정보제공 시기) ① 정보는 제공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정기정보 : 접속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2. 즉시정보 : 상대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로서 상대사업자의 요청절차 없이 즉시 통보를 요하는 정보
3. 상시정보 : AS번호의 사용자정보, 라우팅정보 등 상대사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② 접속사업자는 제15조(인터넷접속조건의 공개)의 인터넷접속조건과 그 조건에 따른 인터넷망 운용현황을 매년 정기정보로 상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의 제공방법) ① 정보의 제공방법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내용 및 분량등에 따라 온라인(ON-LINE) 전송, 마그네틱 테이프(M/T), 책자에 의한 방법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③ 즉시정보는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전화, 팩스(FAX), 문서등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며, 관련 사업자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상시정보는 Looking-glass 등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⑤ 정보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제공제한) ① 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속요청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정보가 이미 제공되었거나 공개된 정보일 경우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이나 설비제공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제공사업자는 요청받은 정보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제공 제한사유를 접속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공사업자와 접속요청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의 해결) ① 협정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 협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협정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접속제공사업자와 접속이용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협의회 구성·운영) 사업자는 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5조(손해배상) 이 협정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정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협정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유지보수책임) 협정 당사자는 접속점을 기준으로 각각 자신의 접속망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7조(협정의 해지와 갱신 등) 협정의 해지와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협정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별첨1] 접속요금표

[별첨2] 접속망 구성도

[별첨3] 접속점 상세 위치도

1. 본 연구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한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